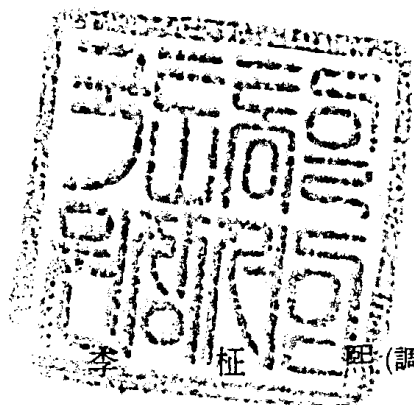


3012
349-9

● 이 冊字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에 必要한 基礎資料로서 主로 軍事와 關聯된 各種 条約文 및 共同聲明書를 蒐集하여 編輯한 것임.

軍事關係資料集



刊行責任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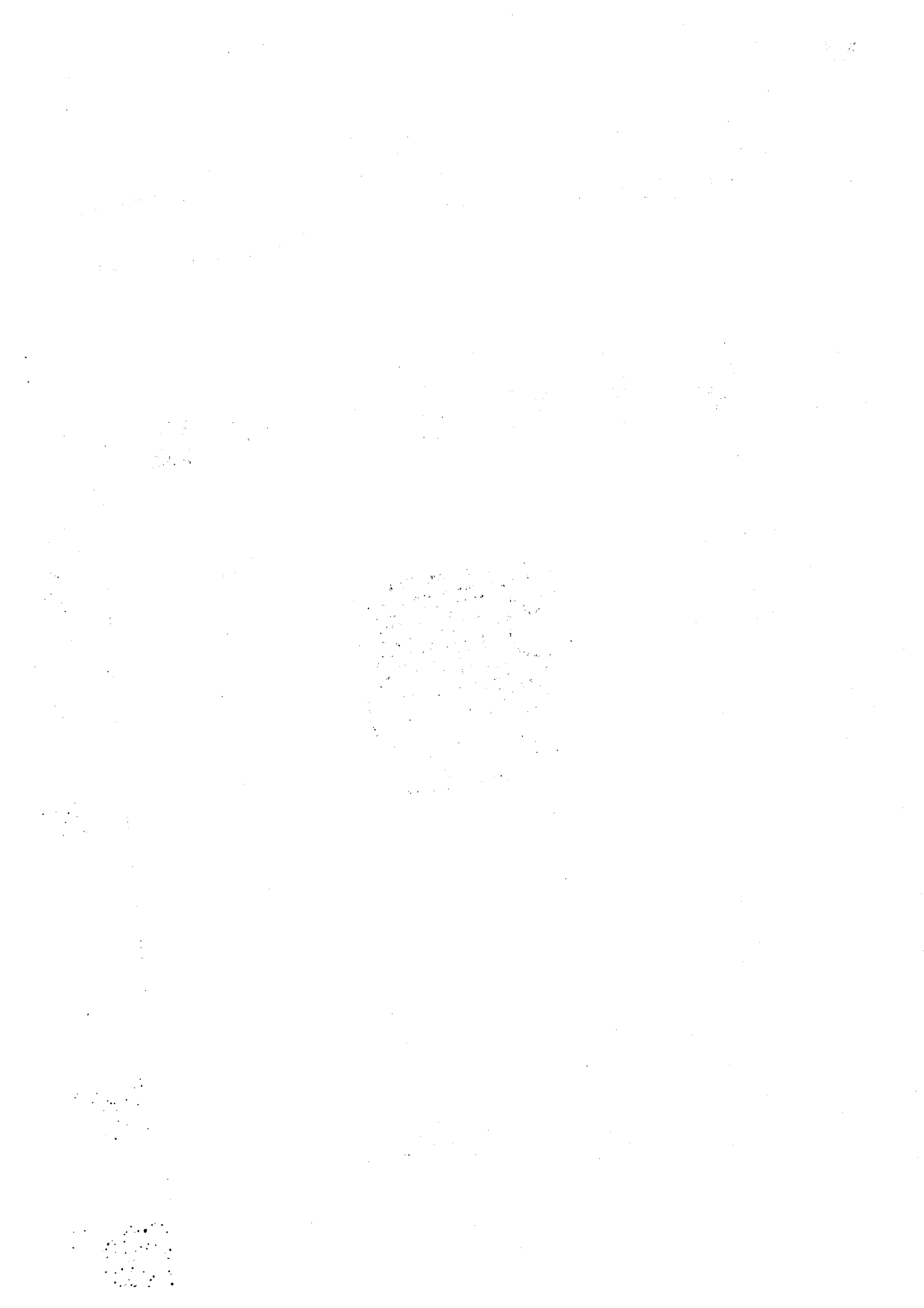
柱

熙 (調査研究室 補佐官)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 군사 관계
한반도 군사 관계
"안보"
관계의 이해와 발전이다.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1. 韓半島와 關聯된 防衛條約	3
가. 韓美 相互 防衛條約	3
나. 北韓·蘇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5
다. 北韓·中共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8
라. 美·日 安保條約	10
마. 日·蘇 共同宣言	13
바. 美·蘇 相互 防衛條約	16
사. 蘇·中共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19
2. 休戰協定規定	21
가. 韓國 休戰協定	21
나. 板門店 分割警備 合意書	53
3. 周邇 四強 과의 關聯聲明	57
가. 戰略 攻擊 武器 制限 暫定協定 議定書	57
나. 美·蘇 關係의 諸基本 原則에 關한 聲明	59
다. 닉슨, 佐藤 共同 聲明	67
라. 美·蘇 共同 聲明	69
마. 닉슨·佐藤 共同 聲明	82
바. 닉슨·田中 共同 聲明	85
사. 美·日 共同 聲明	89
아. 美·日 共同 新聞發表	91

자. 닉슨·周 共同声明	98
차. 田中·周 共同声明	105
카. 日·蘇 共同声明	108
타 日·蘇 共同声明	111
4. 美國의 對亞政策 關聯 聲明	113
가. 닉슨 獨트린	113
나. 新 太平洋 獨트린	133
5. 韓美年例 安保協議 會議 共同 聲明書	143
가. 1次 共同 聲明	143
나. 2次 共同 聲明	145
다. 3次 共同 聲明	148
라. 4次 共同 聲明	151
마. 5次 共同 聲明	154
바. 6次 共同 聲明	158
사. 7次 共同 聲明	162
아. 8次 共同 聲明	166
자. 9次 共同 聲明	170
차. 10次 共同 聲明	174

1. 韓半島와 關聯된 防衛條約

가. 韓·美 相互防衛條約

1953年 10月 1日 調印

1954年 11月 18日 發効[워싱턴]

本條約의 当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当事國中 어느 1國이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擧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防衛하고자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자 集團的防衛를 위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第1條 当事國은 關聯될지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의 手段에 의하여 解決하고, 또한 그들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当事國이 國際聯合에 대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에 의한 威脅이나 武力의 行使를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第2條 当事國의 어느 1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擧에 의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는 어느 当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当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当事國은 单独

的으로나 共同的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撃을 防止하기 위한 適切な 手段을 持續하며 強化시킬 것이며 本條約을 實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措置를 協議와 合意下에 取할 것이다.

第3條 各当事国은 各自의 行政管理下에 있는 領土 또는 今後 当事国이 他当事国의 行政管理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領土에 있어서 他当事国에 대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撃을 自国の 平和와 安全을 殆殆롭게 하는 것이라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対処하기 위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第4條 相互合意에 의하여 決定된 바에 따라 美合衆국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内와 그 周邉에 配置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与하고 美合衆국은 이를 受諾한다.

第5條 本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국에 의하여 各其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効力を 發生한다.

第6條 本條約은 無期限으로 有効하다. 어느 当事国이든지 他当事国에 通告한後 1年後에 本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の 証拠로써 下記 全權委員들이 本條約에 署名하였다. 本條約은 1953年10月1日 「워싱턴」에서 韓國文과 英文의 2通으로 作成되었다.

大韓民國을 위하여

卞 榮 泰

美合衆국을 위하여

「존·포스터·덜레스」

美合衆국의

어떤 締約국도 이 條約의 第3條下에서는 他方국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撃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를 援助할 義務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條約의 어떤 規定도 大韓民國의 行政的 管理아래 合法的으로 存置하기로 된 것과 美合衆국에 의해 決定된 領域에 대한 武力攻撃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美合衆국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援助를 供與할 義務를 지우는 것으로 解釈되어서는 안된다.

나. 北韓·蘇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 條約

1961年7月6日 調印

1961年9月10日 發効 「모스크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와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소비에트」常任委員會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基礎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와 「소비에트」聯邦간의 親善關係를 強化 發展시킬 것을 지향 하면서,

「유엔」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하여 極東과 全世界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 鞏固化를 促進시킬 것을 希望하면서,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 締約一方에 대한 武力 侵攻이 敢行되는 경우에 援助와 支持를 相互 提供할 決意에 充滿되면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와 「소비에트」聯邦간의 親善, 善隣, 協助의 強化가 兩國 人民들의 死活的 利益에 부합되며 그들의 經濟, 文化

의 금후 發展을 가장 훌륭하게 促進시키리라는 것을 確信하면서,

한 目的으로 本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首相 金日成을,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소비에트」常任委員會는 蘇聯 內閣 首相「니키타 세르게예비치 흐루시초프」를 各各 自己의 全權 代表로 任命하였다.

兩 全權代表는 所定の 形式과 完全한 節次를 갖춘 자기의 全權 委任狀을 交換한 後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締約 雙方은 그들이 앞으로 極東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的 活動에 參加할 것이며, 이 高貴한 課業의 遂行에 寄與할 것을 聲明한다.

締約 一方이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 武力 侵攻을 當함으로써 戰爭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에 締約 相對方은 即時 자기가 保有하고 있는 온갖 手段으로써 軍事的 및 기타 援助를 提供한다.

第2條 締約 雙方은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면 締約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聯合이나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는데 對한 義務를 진다.

第3條 締約 雙方은 平和와 全般的인 安全의 鞏固化를 促進시킬 것을 念願하면서 兩國의 利害關係와 관련되는 모든 重要한 國際問題들에 對하여 相互協議한다.

第 4 條 締約 雙方은 平等과 國家 主權 및 領土保全의 相互 尊重, 相互 內政 不干渉의 原則들에 立脚하여 友好 및 協力の 精神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的 經濟的 및 文化的 連結을 強化 發展시키며, 經濟 및 文化 分野에서 可能한 모든 援助를 相互 提供하며, 必要한 協力を 實現하는 데 對한 義務를 진다.

第 5 條 締約 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인 基礎위에서 實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解決이 朝鮮 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 維持에 符合된다고 認定한다.

第 6 條 條約은 平壤市에서 批准書를 交換한 날부터 効力を 發生한다. 條約은 10年間 効力を 가진다. 締約一方이 期限 滿了 1年前에 條約을 廢棄하는 데 對한 希望을 表示하지 않는다면 條約은 다음 5年間 繼續하여 効力を 가지며 이와 같은 節次에 依하여 앞으로 有効 期間이 延長된다.

本條約은 1961年 7月6日 「모스크바」市에서 朝鮮語와 露語로 各各 2部씩 作成되었으며 이 두 原文은 同等한 効力を 가진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委任에 依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首相 金日成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소비에트」常任委員會의 委員

에 依하여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內閣首相 「N.S. 호

루시 초프」

㉔. 北韓・中共友好 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1961年7月11日 調印

1961年9月10日 發効「北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와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은 「맑스 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또한 國家主權과 領土保全에 對한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內政에 對한 相互不干涉, 平等과 互惠, 相互援助 및 支持의 基礎위에 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兄弟的 友好, 協力 및 相互援助關係를 加一層 強化 發展시키며 兩國人民의 安全을 共同으로 保障하며 「아시아」와 世界平和를 維持 鞏固化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을 決意하고,

또한 兩國間의 友好, 協力 및 相互關係의 強化發展은 兩國 人民의 根本 利益에 符合될 뿐 아니라 또한 世界各國 人民의 利益에 符合된다고 確信하고, 이 目的을 위하여 本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首相 金日成을,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委員 總理 周恩來를 各各 自己의 全權代表로 任命하였다.

雙方 全權代表는 全權委任狀이 正確하다는 것을 相互 確認하고 다음과 같은 條項들에 對하여 合意하였다.

第1條 締約 雙方은 「아시아」및 世界平和와 各國 人民의 安全을 守護하기 위하여 繼續 모든 努力을 다한다.

第2條 締約 雙方中 어느 一方에 對한 어떠한 國家로부터의 侵

略이라도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모든 措置를 共同으로 取할 義務를 지닌다. 締約一方이 어떠한 1個의 國家 또는 몇個의 國家들로부터 武力侵攻을 當함으로써 戰爭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에 締約相對方은 모든 힘을 다하여 即時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共한다.

第3條 締約 雙方은 締約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며 締約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블럭」, 어떠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는다.

第4條 締約 雙方은 兩國의 共同利益과 關聯되는 一切 重要한 國際問題들에 對하여 繼續 協議한다.

第5條 締約 雙方은 主權에 對한 相互 尊重, 內政에 對한 相互 不干涉, 平等과 互惠의 原則 및 友好的 協力の 精神에 繼續 立脚하여 兩國의 社會主義 建設事業에서 相互 可能한 모든 經濟的 및 技術的 援助를 提供하여 兩國의 經濟, 文化 및 科學, 技術的 協力を 繼續 鞏固히 하며 發展시킨다.

第6條 締約 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반드시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인 基礎위에서 實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解決이 곧 朝鮮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符合된다고 認定한다.

第7條 本條約은 批准書를 交換한 날로부터 効力を 發生한다. 批准書는 平壤에서 交換한다. 本條約은 修正 또는 廢棄하는데 對한 雙方間의 合意가 없는 以上 繼續 効力を 가진다. 本條約은 1961年7月11日 北京에서 調印되었으며 朝鮮文과 中國文으로 各各 2通씩 作成된 이 두原文은 同等한 効力を 가진다.

라. 美日 安保條約

1960年1月19日 調印

1960年6月23日 發効「워싱턴」

美合衆國과 日本國은 兩國間에 傳統的으로 存在하는 平和와 友好關係를 強化하고 民主主義 諸原則, 個人的 自由 및 法の 支配를 擁護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兩國間의 一層 緊密한 經濟的 協力을 促進하고 兩國에 있어서의 經濟的 安全 및 福祉의 條件을 助長할 것을 希望하고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對한 信念 및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와 더불어 平和롭게 살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고 兩國이 「유엔」憲章에서 定한 個別的, 自衛의 固有의 權利를 가지고 있음을 認定하고 兩國이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共通의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考慮하여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 條約을 締結할 것을 決意하고 이로써 다음과 같이 協定한다.

第1條 締約國은 「유엔」憲章이 定하는 바에 따라 제각기 關係하는 國際紛爭을 平和의 手段에 의하여 國際的 平和와 安全 및 正義를 沮害하지 않도록 解決하며, 또한 제각기 國際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武力行使를 여하한 國家의 領土保全이나 政治的 獨立에 對하여서나 또한 「유엔」의 目的과 兩立하지 않는 다른 어떤 方法에 依한 것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締約國은 다른 平和愛好國과 協議하여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國際聯合의 任務가 一層 効果的으로 遂行되도록 「유엔」을 強化할 것에 努力한다.

第2條 締約국은 그 자유로운 諸制度를 強化함에 따라, 이들 制度의 基礎를 이루는 原則의 理解를 促進함에 따라, 또 安定과 福祉의 條件을 助長함에 따라서 平和的이며 友好的인 國際關係의 一層의 發展에 貢獻한다. 締約국은 그 國際 經濟政策에 있어서 兩國間의 經濟的協力을 促進한다.

第3條 締約국은 個別的으로 또는 相互協力하여 繼續的이며 效果的인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撃에 抵抗하는 각기의 能力을 憲法上의 規定에 따르는 條件으로서 維持發展시킨다.

第4條 締約국은 이 條約의 實施에 관하여 隨時 協議하며 또 日本國의 安全 또는 極東에 있어서 國際平和와 安全에 對한 威脅이 發生했을 때는 언제든지 어느 一方 締約國의 要請에 의하여 協議한다.

第5條 各締約국은 日本國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에 있어서 어느 一方에 對한 武力攻撃이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으로 認定하여 自國憲法上의 規定이나 節次에 따라서 共通의 威脅에 對處하도록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前記한 武力攻撃과 그 結果로서 취해진 모든 措置는 「유엔」憲章 第51條의 規定에 따라 즉시 「유엔」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의 平和 및 安全을 回復하고 또 維持하기 위한 必要한 措置를 끝냈을 때는 中止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6條 日本國의 安全에 寄與하고 또한 極東에 있어서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寄與하기 위하여 美合衆國은 그 陸軍, 空軍 및

海軍이 日本國에 있어서의 施設과 區域을 使用하는 것이 許可된다.
前記 施設과 區域의 使用이나 日本國에 있어서 美合衆國 軍隊의 地位는 1952年 2月 28日 東京에서 署名한 日本國과 美合衆國간의 安全保障 條約 第3條에 基礎하는 行政協定(改正을 包含)에 代置하는 別個의 協定 및 合意되는 다른 決定에 意하여 規制된다.

第7條 이 條約은 「유엔」憲章에 基礎하는 締約國의 權利와 義務 또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유엔」의 責任에 대하여는 어떠한 影響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미치는 것으로 解釋해서도 안된다.

第8條 이 條約은 日本國 및 美合衆國에 의하여 各者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서 批准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條約은 兩國이 東京에서 批准書를 交換한 날에 効力を 發生한다.

第9條 1951年 9月 8日 「샌프란시스코」에서 署名된 日本國과 美合衆國간의 安全保障 條約은 이 條約의 効力發生時 그 効力を 喪失한다.

第10條 이 條約은 日本區域에 있어서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해서 充分한 役割을 하는 「유엔」措置가 効力を 發生했다고 日本國 政府나 美合衆國 政府가 認定할 때까지 効力を 갖는다. 그러나 이 條約은 10年間은 効力を 存続한 後는 어느 締約國이든지 他方締約國에 대하여 이 條約을 終了시키는 意思를 通告할 수가 있으며 이 境遇 이 條約은 그와 같은 通告가 있는 1年後 終了된다. 以上の 証拠로써 下記의 全權委員은 이 條約에 署名하였다. 1960年 1月 19日 「워싱턴」에서 多같이 正文인 日本語와 英文으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마. 日蘇 共同宣言

1956年10月19日 調印

1956年12月12日 發効「모스크바」

相互理解와 協力の 零囲氣속에서 行하여진 交渉을 通하여 日本国과 「소비에트」 社会主義共和国聯邦과의 相互關係에 關하여 隔意없는 広範한 意見의 交換이 行하여졌다. 日本国 및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은 兩國間의 外交關係의 回復이 極東에 있어서 平和 및 安全의 利益에 合致하는 兩國間의 理解와 協力과 發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對하여 完全히 意見이 一致하였다.

日本国 및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의 全權團間에서 行하여진 이 交渉의 結果 다음의 合意가 成立하였다.

(1) 日本과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間의 戰爭狀態는 이宣言의 効力이 發生하는 날에 終了하고 兩國間에 平和 및 友好善隣關係가 回復된다.

(2) 日本国과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間의 外交 및 領事關係가 回復된다. 兩國은 大使의 資格을 갖는 外交使節을 지체없이 交換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兩國은 外交機關을 通하여 兩國內에 있어서 各各의 領事館의 開設問題를 處理하는 것으로 한다.

(3) 日本国 및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은 相互의 關係에 있어서 UN憲章의 諸原則, 그 가운데 特히 同憲章 第2條에 揭記될 다음 原則을 指針으로 한다는 것을 確認한다.

(a) 그 國際紛爭을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國際의 平和 및 安全 그리고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도록 解決할 것.

(b) 그 國際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의한 威脅 혹은 武力을 行使하는 여하한 國家의 領土保全 또는 政治的 獨立에 대한 것도 그리고 「유엔」의 目的과 兩立하지 않는 다른 여하한 方法에 의하는 것도 삼가할 것.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各各 他方의 國家가 「유엔」憲章 第 51 條에 揭記하는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의 固有의 權利를 갖는 것을 確認한다.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經濟的, 政治的 또는 思想的인 여하한 理由를 不問하고 直接間接으로 一方의 國家가 他方의 國家의 國內事項에 干涉하지 않을 것을 相互約束한다.

(4)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유엔」의 加入에 關한 日本國의 申請을 支持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에 있어서 有罪를 받은 모든 日本人은 本 共同宣言의 効力發生과 同時에 釈放되고 日本國으로 送還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의 要請에 立脚하여 消息不明의 日本人에 關하여 繼續 調査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에 對하여 一切의 賠償請求權을 拋棄한다.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1945年 8月 9日 以來의 戰爭의 結果로서 생긴 各各의 國家, 그 團體 및 그 國民에 대한 모든 請求權을 相互 拋棄한다.

(7)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그 貿易, 海運, 其他의 通商關係를 安定되고 그리고 友好的인 基礎위에 놓기 위하여 條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交渉을 될 수 있는대로 早速히 開始할 것에 同意한다.

(8) 1956年5月14日에 「모스크바」에서 署名된 北西太平洋의 公海에 있어서 漁業에 關한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的 條約 및 海上에 있어서 遭難한 人命의 救助를 위한 協力에 關한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協定은 本宣言의 効力發生과 同時에 効力を 發生한다.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魚類 其他의 海洋植物資源의 保存 및 合理的 利用에 關하여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이 갖는 利害關係를 考慮하고 協力の 精神으로서 漁業資源의 保存 및 發展 그리고 公海에 있어서 어렵의 規制 및 制限을 위한 措置를 取하는 것으로 한다.

(9) 日本國 및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兩國間에 正常的인 外交關係가 回復된 後 平和條約의 締結에 關한 交渉을 繼續할 것에 同意한다.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日本國의 要望에 應하고 또한 日本國의 利益을 考慮하여 「하보마이」(齒舞)群島 및 「시코땅」(色丹)島를 日本國에 引渡할 것에 同意한다. 但 이들 諸島는 日本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的 平和條約이 締結된 後에 引渡되는 것으로 한다.

(10) 本共同宣言은 批准되어야 한다. 本共同宣言은 批准書交換以後 効力を 發生한다. 批准書交換은 될 수 있는 限 早速히 東京에서 行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署名者單省略)

미·美·華 相互防衛條約

1954年 12月 2日 調印

1955年 3月 3日 發効「워싱턴」

本條約의 当事國은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대한 信念과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와 함께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西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強化할 것을 希望하며, 兩國 國民이 최근의 戰爭 期間중 同情과 相互 理想의 共通의 유대에서 帝國主義 侵略에 對抗해서 함께 싸우기 위하여 결속하게 된 關係를 相互 자랑으로 想起하며,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어느 잠재적 侵略者도 어느 当事國이 고립되어 있다는 錯覺을 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撃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자 하는 共通의 決意와 統一意識을 公公然히 그리고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며 또한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地域的 安全保障 조직이 發展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한 現在의 集團防衛의 努力을 強化할 것을 希望하여 아래와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締約國은 「유엔」憲章이 定하는 바에 따라 自國이 말려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國際紛爭이라도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國際平和와 安全 및 正義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解決할 것과 그 國際關係에 있어서 武力의 行使를 「유엔」의 目的과 양립하지 않는 方法으로 하지 않을 것을 約束한다.

第2條 締約國은 本條約을 일층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締

約國의 領土保全 및 政治的 安全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이
나 共產主義者의 破壞活動에 對抗하는 個別的 또는 集團의 能力을
自助와 相互 援助에 依하여 단독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維持하고
더욱 發展시킨다.

第 3 條 締約國은 그 自由스러운 制度를 強化함과 아울러 經濟的
進歩 및 社會的 福祉를 促進시키기 위해서 相互 協力하며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個別的이며 集團的인 努力을 增進할 것을 約束한다.

第 4 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이행에 관하여 自國의 外務部長官
또는 그 代理를 通하여 隨時 協議한다.

第 5 條 各 締約國은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 어느 締約國의 領域
에 對하여 加해지는 武力攻擊이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認定하고 自國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共通의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하여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前記 武力攻擊 乃至
그 結果로써 取해진 모든 措置는 즉시 「유엔」安全保障理事會에
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記의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 및 安全을 回復하고
또한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였을 때는 종료한다.

第 6 條 第 2 條 및 第 5 條의 目的을 위하여 “領土”나 “領域”이
라 함은 中華民國에 있어서는 台灣과 澎湖列島를 말한다. 美合衆
國에 있어서는 그 管轄權下에 있는 西太平洋의 島嶼, 領土를 意味
한다. 第 2 條 및 第 5 條의 規定은 相互合意에 따라 決定되는 其
他 領域에 對하여도 適用된다.

第7條 台灣 및 澎湖列島나 그 주변에 있어서 그 防衛를 위해
서 必要한 美合衆國의 陸軍, 空軍 및 海軍을 配備하는 權利를 相
互 合意에 의한 결정에 基하여 中華民國 政府는 許容하고 美合衆
國 政府는 受諾한다.

第8條 本條約은 「유엔」憲章 또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유엔」의 責任에 의한 當事國의 權利와 義務에 對하여 如
何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않는다.

第9條 本條約은 中華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本條約의 批准書가 台灣에 交換되었
을때 効力を 發生한다.

第10條 本條約은 無期限으로 有効하다. 어느 締約國도 他方
締約國에 1年前에 廢棄를 通告함으로써 本條約을 廢棄할 수 있다.

以上の 証拠로써 下記名者는 本條約에 署名하였다.

(署名者名單省略)

1954年 12月 2日 (中華民國 43年 12月 2日) 「워싱턴」에서 中國語
와 英文으로 2通을 作成하였다.

사. 蘇·中共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1950年2月14日 調印

1950年4月11日 發効「모스크바」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소비에트」幹部會議와 中華人民共和國 中央人民政府는 日本帝國主義復活, 日本의 侵略 또는 侵略行爲에 있어서 어떠한 形式이든지 日本과 聯合하는 其他國家의 侵略의 反復을 共同으로 防衛하고자 하는 決意로써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따라 極東 및 全世界의 恒久的인 平和 및 一般的 安全을 增進할 것을 希望하고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善隣 및 友好關係를 強化하는 것이 「소비에트」聯邦과 中國人民의 根本的인 利害와 合致함을 굳게 確信하고 이 目的을 위하여 本條約을 締約할 것을 決定하고 아래와 같이 그 全權委員을 任命하였다. (全權委員 名單省略) 兩全權委員은 그 全權委任狀을 交換하고 良好 妥當함을 認定하고 아래와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兩締約國은 日本國 또는 間接 혹은 直接으로 日本國과 侵略行爲에 대하여 聯合하는 他國의 侵略의 再開 및 平和의 侵害를 沮止하기 위하여 兩國이 할 수 있는 모든 必要한 措置를 共同으로 취할 것을 約束한다. 만약 一方締約國이 日本國 또는 이와 同盟하고 있는 他國으로부터의 攻擧를 받고 戰爭狀態에 들어간 때에는 他締約國은 즉시로 할 수 있는 모든 手段으로 軍事的 및 其他의 援助를 提供한다.

또 兩締約國은 全世界를 통하여 平和 및 安全을 確保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的 行動에 誠實한 協力の 精神을 가지고 參加하는 意思가 있음을 宣言으로 또한 이러한 目的의 實現을 위하여 가장 빨리 全力을 다한다.

第2條 兩締約국은 第2次 大戰中 同盟하고 있던 他國과 共同하여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을 可能한 最短期間中 締約하기 위하여 相互合意下에 努力할 것을 約束한다.

第3條 兩締約국은 相對國에 反對하는 여하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며 또한 相對方에 反對하는 여하한 聯合이나 行動 또는 措置에 參加하지 않는다.

第4條 締約국은 平和나 一般的 安全의 強化에 대한 關心에 誘導되어 蘇聯邦과 中國과의 相互利害에 관한 모든 重要한 國際問題에 대하여 相互協議한다.

第5條 兩締約국은 (友好와 努力의 精神을 가지고 平等 互惠의 原則 그리고 國家主權 및 領土保全에 대한 相互尊重의 原則과 相對方의 國內事情에 대한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서 蘇聯邦과 中國間의 經濟的 및 文化的 紐帶를 發展시켜 相互 모두 可能한 經濟的 援助를 提供하고 또 必要한 經濟的 協力を 遂行할 것을 約束한다.

第6條 本條約은 즉시 効力を 發生한다. 批准書 交換은 北京에서 한다. 이 條約은 30年間 繼續하여 努力을 가진다. 締約國의 一方이 條約을 廢棄하려는 希望을 前記의 期間滿了 1年前에 通告하지 않으면 條約은 다시 5年間 繼續하여 効力を 가지며 그 후 이 規定에 따라 繼續 効力を 가진다.

(本文 및 署名者 名單省略)

2. 休戰協定規定

가. 韓國休戰協定

1953年7月27日 調印

1953年7月27日 發効 (板門店)

前 文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은 一方으로 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韓國衝突을 停止시키기 위하여 서로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 까지 韓國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武力行爲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個別的으로나 共同으로나 또는 相互間에 同意한다. 이條件과 規定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한 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 交戰雙方에게만 適用한다.

第1條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개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2「킬로미터」씩 後退함으로서 敵對軍隊間에 한개의 非武裝地帶를 認定한다. 한개의 非武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付한 地圖에 表示한 바와 같다 (地圖省略)

3. 非武裝地帶는 添付한 地圖에 表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 이 를 確定한다. (地圖省略)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立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 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을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써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間船舶의 航行에 이 를 開放한다. 添付한 地圖(省略)에 表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 를 規定한다.

雙方民間船舶이 航行함에 있어 自己側의 軍事統治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아니한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強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 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거나 民間人이거나 그가 들어가 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 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들어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거나 民間人이거나 非武裝地帶에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内の 軍事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總司令官이 責任을 진다. 非武裝地帶内の 軍事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事總司令官과 中國人民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을 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위하여 非武裝地帶에 들어갈 것을 許可받은 軍人 또는 民間人の 人員數는 雙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든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그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視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들어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内の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内の 두 地點이 同地帶内に 全部들어 있는 通路로서 連結되지 않는 境遇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이 두 地點間

의 通路를 往來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A. 總 則

12.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陸海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 軍事力이 韓國에 있어서의 一切의 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項의 敵對行爲의 完全停止는 本停戰協定이 調印된 지 12時間後부터 効力を 發生한다. (本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効力を 發生하는 날짜와 時間에 대하여서는 本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 級 높은 政治會談을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위하여 敵對雙方의 司令官들은

(a) 本 停戰協定中에 따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 本停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한後 72 時間內에 그들의 一切의 軍事力,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力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 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져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鉄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清掃 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72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을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또는 그 監視下에 非武地帶로 부터 이를 除去한다. 72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視下에서 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装部帶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別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司令官들이 同意한 督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든지 非武装地帶에 들어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b) 本 協定이 効力を 發生한 後 10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岸諸島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的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만일 雙方이 同意하였고 또 撤去를 延期할 合당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위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措施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諸島라는 用語는 本停戰協定の 効力이 發生할 때에 비록 一方의 占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의 北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 大靑島, 小靑島, 延坪島 및 牛島(省略: 以上 各島嶼의 北緯, 東經)의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두는 島嶼群들은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總司令

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둔다. (地圖省略)

(c) 韓國國境外로부터 增員하는 軍事人員을 들어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에서 部隊와 兵力의 交替, 臨時任務를 担当한 人員의 韓國에의 到着 및 韓國國境外에서 短期休暇를 하였거나 或은 臨時任務를 担当하였던 兵力의 韓國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上記 交替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兵力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交替人員은 오직 本 停戰協定の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 들어오며 또 韓國으로부터 내려갈 수 있다. 交替은 1人 對 1人의 交換基礎위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든지 어느 歷月內에 交替政策下에서 韓國國境外로부터 3萬5千名 以上の 軍事兵力은 들어오지 못한다. 만일 一方의 軍事兵力을 들어오는 것의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効力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 들어온 軍事兵力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 부터 韓國을 떠난 該當側의 軍事兵力의 累計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兵力도 들어올 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視委員團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國과 出國의 地点 및 每個地点에서 入國하는 人員과 出國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視委員團은 그의 中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交替를 監視하며 視察한다.

(d) 韓國國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搬入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的의 物件을 1對1로 交換하는 基礎위에서 交替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 搬入될 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 搬入할 必要를 確証하기 위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視委員團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에 關한 說明을 包含하여야 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 搬出되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協定의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搬出될 수 있다. 中立國監視委員團은 該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列挙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視하며 視察한다.

(e) 本 停戰協定中の 어떠한 規定이든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切히 処罰할 것을 保障한다.

(f) 埋藏地点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한 後 一定한 期間內에 該의 軍事的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 相對方의 墳墓登錄人員이 들어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所在地에 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

고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적인 方法과 期限을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藏地點에 關係되는 一切의 可能한 情報을 相對方에게 提供한다.

(g)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視委員會團과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와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視委員會團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交通線을 經由하여 (地圖省略) 中立國監視委員會團本부와 本停戰協定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視委員會團本부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는 充分한 通行上의 便宜를 준다. 不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위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든지 通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通路와 모든 交通手段을 利用할 것을 許可한다.

(h)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視委員會團과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의 便宜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i) 軍事停戰委員會本부 附近 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地域에 각각 1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j) 中立國監視委員會團과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 人員이 自己의 職責을 適切히 執行함에 必要

한 自由와 便宜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中의 一切 地上軍事力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軍事力은 非武装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 海上軍事力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은 非武装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 陸地의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여 韓國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 空中軍事力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은 非武装地帶와 相對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 및 이 兩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고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각각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規定을 철저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互積極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視委員團과 積極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視委員團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費用은 敵對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B. 軍事停戰委員會

1. <構成>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10名의 高級將校로 構成하되 그中の 5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이를 任命하며 그 外의 5名은 朝鮮人民軍總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한다. 委員 10名中에서 雙方 3名은 將校에 屬하여야 하며 雙方의 나머지 2名은 少將, 准將, 大領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 수 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參謀 補助委員을 使用할 수 있다.

22. (省略: 軍事停戰委員會에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한 秘書 處의 運營)

23. (a)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 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力을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쳐 減少할 수 있다.

(b)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4名 乃至 6名의 領官級將校로 構成하되 그中の 半數는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이를 任命하며 나머지 半數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2. <職責과 權限>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任務는 本 停戰協定の 實施를 監視하며 本 停戰協定の 어떠한 違反事件이든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는

(a) 本部를 板門店(北緯37度57分29秒, 東經126度40分00秒) 附近에 設置한다. 軍事停戰委員會는 同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을 거쳐 그 本部를 非武装地帶内の 다른 한 地点에 移設할 수 있다.

(b) 共同機構로서 事業을 進行하며 議長을 두지 않는다.

(c) 同機構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節次規定을 採択한다.

(d) 本 停戰協定中 非武装地帶와 漢江河口에 관한 各規定의 執行을 監視한다.

(e) 共同監視小組의 事業을 指導한다.

(f) 本停戰協定の 어떠한 違反事件이든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g) 中立国監視委員團으로부터 받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에 관한 一切 調査報告 및 一切 其他 報告와 會議記錄은 即時로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h) 下記한 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捕虜送還委員會와 失鄉私民 歸鄉協助 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視 指導한다.

(i) 敵對雙方司令官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役割을 担当한다. 但. 上記의 規定은 雙方司令官들이 使用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相互通信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j) 그의 実務職員과 그의 共同監視小組의 證明文書 및 徽章 또 그 任務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標識을 發給한다.

26. 共同監視小組의 任務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中の 非武装地帶 및 漢江河口에 관한 各規定의 執行을 監視함을 協助하는 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の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装地帶나 漢江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停戰協定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든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 수 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の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中立國監視委員團에 要請하여 本停戰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装地帶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할 때에는 即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の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 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 <總 則>

31. 軍事停戰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雙方の 首席委員은 合意하여 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든지 24時間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32. (省略: 軍事停戰委員會의 會議記錄)

33. (省略: 共同監視小組가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는 報告)

34. (省略: 報告 및 會議記錄등의 保管)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本 停戰協定の 修正 또는 增補에 대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C. 中立国 監視委員團

1. <構 成>

36. 中立国監視委員團을 設立한다.

37. 中立国監視委員團은 4名의 高級將校로 構成하되 그 中の 2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国 즉 瑞典 및 瑞西가 이를 任命하며 나머지 2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国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国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 敵對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軍隊로 부터 派遣될 수 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1名을 指定하여 그 正委員이 어떤 理由로 出席할 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 된다. 이러한 候補委員은 그 正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監視委員團은 곧 行動을 取할 수 있다.

38. 中立國監視委員團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각기 該當 中立國家가 提出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委員會의 候補人員으로 任命될 수 있다.

39. (省略: 中立國監視委員團에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한 秘密 處의 運營)

40. (a) 中立國監視委員團은 처음에는 20個의 中立國監視小組를 設켜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쳐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監視小組는 오직 中立國監視委員團에 대하여서만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號를 받는다.

(1) 每個 中立國監視小組는 最大限 4名의 將校로 構成하되 이 將校는 領官級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며 그 中の 半數는 國際聯合 總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の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

다. 中立国監視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軍隊에서 이를 낼 수 있다. 各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위하여 狀況의 要求에 따라 最少 2 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할 수 있다. 그 두 組員中의 1 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国에서 내며 1 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国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訳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小組의 任務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雙方司令官이 非武装地帶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地域內의 需要에 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国監視委員團은 同委員團自体와 中立国視察小組들에게 그가 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제공할 수 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国監視委員團을 構成한 그 中立国の 人員이어야 한다.

2. <職責과 權限>

41. 中立国監視委員團의 任務는 本 休戰協定 第 13 項(c)目, 第 13 項(d)目 및 第 28 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여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 것이다.

42. 中立国監視委員團은

- (a) 本부를 軍事停戰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 (b)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規定을 採択한다.
- (c) 그 委員 및 그 中立国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 43 項에 列挙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 13 項(c)目, 第 13 項(d)目に

規定한 監視와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 고 報告된 地点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대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 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 搬入하지 않을 것을 確實히 保障할 수 있게 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秘密設計 또는 特徵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d)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示하며 監視한다.

(e)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地域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에 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總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統制地域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列挙한 出入港에 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個의 中立國變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備하되 中立國監視委員團本部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會議를 거친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移動 視察小組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 수 없다.

(f) 報告된 本 停戰協定違反事件을 前規定의 範圍內에서 遲滯없이 調查한다. 이에 是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委員會中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違反事件에 대한 調查를 包含한다.

(g) 그의 実務要員과 그의 中立国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는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標識을 發給한다.

43. 中立国視察小組는 下記한 各出入港에 駐在한다.

國際聯合軍의 軍事統制地域 △仁川, △大邱, △釜山, △江陵, △群山,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의 軍事統制地域 △新義州, △清津, △興南, △滿浦, △新安州

이 中立国視察小組들은 添付한 地圖에 表示한 地域内의 交通線에서 通行上 充分한 便宜를 받는다. (地圖省略)

3. <總 則>

44. 中立国監視委員團은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国監視委員團은 合意하여 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委員이든지 24時間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45. (省略: 中立国監視委員團의 會議記錄)

46. 中立国監視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国監視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들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書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 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国監視委員團은 中立国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授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翻譯 또는 審議決定 때문에 遲滯시킬 수 없다. 中立国監視委員團은 實際 可能한 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優先적으로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国監視委員團이 該當審議 決定을 授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대해서도 最後的 措施를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国監視委員團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出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대하여 서든지 說明한다.

48. (省略: 報告文 및 會議記錄 등의 保管)

49. 中立国監視委員團은 軍事停戰委員會의 本停戰協定の 修正 또는 增補에 대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効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国監視委員團 또는 同委員團의 每個 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連絡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第3条 戰爭捕虜에 関한 措置

51. 本 停戰協定の 効力を 發生하는 當時의 雙方에서 收容하고 있는 戰爭捕虜의 釈放과 送還을 本 停戰協定調印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a) 本 停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한 後, 60日 以內에 雙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主張하는 全戰爭捕虜를 捕虜當時의 그들이 屬

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送還引渡하며 沮害도 加하지 못한다. (下略)

(b) 雙方은 直接送還하지 않은 나머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으로 부터 釈放하여 모두 中立国送還委員會에 넘겨 本停戰協定 附錄 " 中立国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 의 各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케 한다.

(c) (上略) 一方의 戰爭捕虜를 相對方에게 引渡하는 行動을 (中略) 英文中에는 Repatriation 韓國文에서는 " 송환 " 이라고 規定한다.

52 . 雙方은 本停戰協定の 効力發生에 의하여 釈放하며 送還되는 어떠한 捕虜든지 韓國戰爭中の 戰爭行動에 使用하지 않을 것을 保障한다.

53 . 送還하는 全傷病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下略)

54 . 本 停戰協定 第51項(a)目에 規定한 全戰爭捕虜의 送還은 本停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한 後

55 .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捕虜引渡 및 引受地點으로 定한다. (下略) 60日의 期限內에 完了한다. (下略)

56 . (a)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設立한다. 同委員會는 領官級將校 6名으로 構成하되 其中 3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이를 任命하며 其中 3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한다. (中略)

同委員會의 任務는 戰爭捕虜들이 雙方 戰爭捕虜收容所로부터 戰爭捕虜引渡, 引受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여 必要할 때에는 傷

病戰爭捕虜의 輸送 및 厚生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여 本 停戰協定 第 57 項에서 設定된 共同赤十字小組의 戰爭捕虜送還 協調 事業을 調節하여 本 停戰協定 第 53 項과 第 54 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實際送還措置의 實施를 監督하여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捕虜 引渡, 引受地点(들)을 選定하여 戰爭捕虜의 引渡, 引受地点(들)의 安全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送還에 必要한 其他關係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b)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대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即時로 軍事停戰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c)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送還計劃를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即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57. (a) 本 停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한 後 即時로 國際聯合軍의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赤十字社 代表를 一方으로 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 代表를 다른 一方으로 하여 組織하는 共同赤十字小組를 設立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 服務으로써 雙方이 本 停戰協定 第 51 項(a)目에 規定한 送還을 主張하는 全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下略)

(b) (省略: 共同赤十字小組의 組織)

(c) (省略: 共同赤十字小組에 대한 安全保障과 便宜提供)

(a) 共同赤十字小組는 本停戰協定 第51項(a)目에 規定한 送還을 主張하는 全戰爭捕虜의 送還計劃이 完遂되었을 때에는 即時로 解散한다.

58.(a) 雙方 司令官은 可能한 範圍內에서 速히 그러나 本 停戰協定이 効力을 發生한 後 10日以內에 相對方 司令官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捕虜에 關한 資料를 提供한다.

(1) (省略: 脱營한 戰爭 에 關한 資料)

(2) (省略: 死亡한 戰爭捕虜에 關한 資料)

(b) (省略: 上記 補充資料의 마감한 日字 以後에 脱營 또는 死亡한 戰爭捕虜의 資料 交換)

(c) (省略: 戰爭捕虜 引渡, 引受後에 다시 돌아온 戰爭捕虜의 處理)

59.(a) 本 停戰協定의 効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民間人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願한다면 國際聯合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들어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하여야 한다.

本 停戰協定이 効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体 民間人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總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에 들어가는 것

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雙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a)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広節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當局을 시켜 귀향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民間人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 한다.

(b) (省略：外國籍民間人의 歸鄉)

(c) 雙方的 本條 第59項(b)目에 規定한 民間人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의 効力을 發生한 後 될 수 있는 한 速히 開始 한다.

(d) (1) 失鄉私民歸鄉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委員會는 領官級將校 4名으로 構成하되 其中 2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한다. (中略) 同委員會의 任務는 運送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民間人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民間人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民間人의 귀향을 完遂하기 위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鄉私民歸鄉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實이든지 合意에 到達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 한다. 失鄉私民歸鄉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3) 失鄉私民歸鄉協助委員會가 그의 任務를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即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第4条 雙方 關係政府들의 建議

60.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司令官은 雙方의 關係各國政府에 停戰協定이 調印되고 効力을 發生한 後 3個月 內에 各其 代表를 파견하여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談을 召集하고 韓國으로부터의 모든 外國軍隊의 撤収 및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等 의 問題들을 協議할 것을 이에 建議한다.

第5条 附 則

61. 本 停戰協定에 대한 修正과 增補는 반드시 敵對雙方司令官들 의 相互合意를 거쳐야 한다.

62. 本 停戰協定의 各 條項은 雙方이 共同으로 接受하는 修正 및 增補 또는 雙方의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適切 한 協定中의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交替될 때까지는 繼續 効力을 가진다.

63. 第12項을 除外한 本 停戰協定의 一切 規定은 1953年 7月 27日 22時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1953年 7月 27日 10時 韓國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 으로서 作成한다.

이 세가지 글의 各 協定本文은 同等한 効力을 가진다.

國際聯合軍總司令官 美國 陸軍大將

[마크. W. 클라크]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元帥

金 日 成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 彭 德 懷

參席者

國際聯合軍代表團

首席代表 美國 陸軍中將

「윌리엄 . K . 해리슨」 2世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代表團

首席代表 朝鮮人民軍 大將 南 日

※ 附 錄

— 中立国 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

(제 51 항 2 목을 보라)

제 1 조 총 칙

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진, 서서 파란, 「체코슬라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부근에 두며 중립국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구를 동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간의 사업을 참관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협약 제 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표는 공증인이 되며 동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50명을 넘지 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 각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

때에는 동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 한다. 본항에 규정한 일체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3. 상기 제 12 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식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 7 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여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것을 보장한다.

제 2 조 전쟁포로의 판타

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속히 최대한 60 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때에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적 무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 한다.

6. 상기 제 5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지구 주변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측 관리 지역내의 어

한 무장역량이던지 (비규정무장역량도 포함) 전쟁포로 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7. 상기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임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3 조 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 된 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위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돌아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 1,000 명에 대하여 7 명을 넘지 못하도록 허락될 총수는 5 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 53 조에 의거한다.

ㄷ) 일체의 해설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각성원국가의

대표 1명씩과 역류측 대표 1명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ㄹ) 해설사업에 관한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 3항과 본항에 열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ㅁ)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때에 필요할 무전통신설비를 휴대하며 무전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 만 2조를 허락한다.

각조는 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이든지 알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 4 조 전쟁포로의 처리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각 상원국가 대표 1명씩으로써 구성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 附 錄

— 中立国 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

(제 51 항 2 목을 보라)

제 1 조 총 칙

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전, 서서 과란, 「체코슬라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부근에 두며 중립국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구를 동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간의 사업을 참관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협약 제 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표는 공증인이 되며 동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50명을 넘지 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것을 허락한다. 각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

때에는 동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 한다. 본항에 규정한 일체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3. 상기 제 12 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식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 7 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여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것을 보장한다.

제 2 조 전쟁포로의 관리

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속히 최대한 60 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때에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적 무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 한다.

6. 상기 제 5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지구 주변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측 관리 지역내의 어

한 무장역량이던지 (비규정무장역량도 포함) 전쟁포로 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7. 상기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임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 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3 조 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 된 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돌아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요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 1,000 명에 대하여 7 명을 넘지 못하도록 허락될 총수는 5 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 53 조에 의거한다.

ㄷ) 일체의 해설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작성원국가의

대표 1명씩과 억류측 대표 1명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ㄴ) 해설사업에 관한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 3항과 본항에 열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ㄹ)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때에 필요할 무전통신설비를 휴대하며 무전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만 2조를 허락한다.

각조는 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이던지 알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 4 조 전쟁포로의 처리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각 상원국가 대표 1명씩으로써 구성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 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즉시로 동 전쟁포로를 송환 준비가 된 전쟁포로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에 보내어 거주시키며 그다음에 동 전쟁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단체로 즉시 관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송환 한다.

11. 전쟁포로의 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90일이 만기된 후 제 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의 처리문제는 정전협정초안 제 60항에서 소집할것을 제의한 정치회의에 넘겨 30일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며 이 기간중에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러한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후 120일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 않았고 또 정치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시민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것을 선택한자가 있으면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가 이를 협조한다. 이사업은 30일이내에 완수한후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한후 어느때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시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

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제 5 조 적십자사의 방문

1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무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제 6 조 신문보도

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계 및 기타 보도기관이 본 협정의 열거한 전체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갖도록 보장한다.

제 7 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14. 각방은 자기 군사통제 지역내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보급을 제공하되 각 전쟁포로 수용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필요한 공급물자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15. 「제네바」협약 제 118 조에 의하여 판문점교환 지점까지 송환하는 경비는 억류측이 부담하며 교환지점으로 부터의 경비는 전쟁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16.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인원은 인도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17.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기간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후 전쟁포로는 상기계 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수용시설로 돌려 보낸다.

1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 부위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제 8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19. 각방은 자기측 군사 통제지역내에 주재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인원에게 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세밀한 조치는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억류측이 매년 결정한다.

20. 각 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하여 제 23항에서 규정한 자기측 지역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각 전쟁포로 관리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부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의 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전쟁포로 관리지구의 실제 계선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책임진다.

21. 각 억류측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통제 지역내에 있을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제9조 발 표

22. 본 협정 각 조항을 정전협정 효력발생후 억류측 관리하에서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에게 주지시킨다.

제10조 이 동

23.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송환될 전쟁포로는 상대방의 사령부 (또는 사령부들) 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 항에 지정한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원의 이동을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송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저해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제11조 절차에 관한 사항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된 종속기관은 다수결의 기초위에서 운영한다.

2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매주에 1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 매주말에 송환된자 및 남아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26. 본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이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6월 8일 14: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어의 세 가지 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대표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수석대표
미국육군중장	조선인민군 대장
윌리엄 . 케이 . 헤리슨	남 일

나. 板門店分割警備合意書

1976年 9月 6日

1953年 7月 27日에 締結된 協定은 第2条 25項에 軍事停戰委員會 本部의 位置와 活動에 관한 規定이 들어 있음에 비추어,
또한 軍事停戰委員會에서 1953年 10月 19日에 採択된 "軍事停戰委員會 本部区域, 本部区域의 安全 및 本部区域 修築에 관한 合意" 第2条 ㄱ項에 共同警備区域의 警備에 관한 規定이 들어있음에 비추어,

또한 위의 協定들은 施行한 以後 共同警備안에서 人命의 安全保障 특히 兩쪽 軍人들 간의 衝突을 防止하기 위하여 어떤 追加的인 措置가 必要한 것이 明白해 졌으므로,

軍事停戰委員會 秘書長들은 "軍事停戰委員會 本部区域의 安全 및 本部区域 修築에 관한 合意" 를 軍事停戰委員會에서 아래의 補充을

追加하여 修正할 것을 建議한다.

◇ 本"軍事停戰委員會 本部区域,本部区域의 安全 및 本部区域 修築에 관한 合意" 補充의 履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 本補充은 雙方の 首席委員에 의하여 批准된 10日後부터 効力이 發生된다.

— 共同測量 및 軍事分界線의 標識를 위하여 各方の 同數로 된 專門的인 資格을 갖춘 人員으로 共同測量小組를 構成하며 이들의 安全 및 保護에 대하여서는 共同監視小組의 監視下에 雙方이 保障해야 한다.

— 本 補充이 批准된 날부터 發効日까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履行되어야 한다.

● 雙方の 合意에 따라 이루어지는 軍事分界線表識들의 設置를 完了한다.

● 相對側 管轄下의 区域에 있는 自己 警備哨所와 警備人員들 그리고 其他施設들을 撤収한다. 但 各方の 共同일직관실에 設置되어 있는 電話機와 그 施設은 除外된다.

● 聯合國 軍측 部分에 있는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支援軍側 警備哨所를 撤収한다.

— 雙方은 各其 本補充이 雙方首席委員에 의해 批准된 날로부터 効力을 發生하는 날까지의 期間中 相對側 人員의 安全을 沮害하는 接觸 또는 本 補充의 履行과 關聯한 作業을 妨害하지 말게 하는

데 대한 命令을 下達하고 또 實施함으로써 相對側 人員의 安全을 保障해야 한다.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支援軍側 秘書長

聯合軍團軍側 秘書長

軍事停戰委員會 1976年9月 日 批准

◇ "軍事停戰委員會 本部區域·本部區域의 安全 및 本部區域修築에 관한 合意" 補充

(1976年 月 日 第 次 秘書長會議에서 合意, 1976年 月 日 雙方首席委 批准)

1. 第2條 ㄷ項의 補充

共同測量에 基礎하여 共同警備區域안의 軍事分界線은 會議 建物區域에서는 너비 50 cm·높이 5 cm의 「시멘트」포장만을 하고 그 외의 部分은 10 cm乘 10 cm, 높이 1 m의 「시멘트」기둥만을 10 cm 간격으로 박아 標識한다.

會議場 建物區域이란 軍事分界線上에 놓인 7개의 建物과 그를 둘러싼 마당 즉 7개의 建物과 西쪽끝의 建物로부터 10 cm, 東쪽끝의 建物로 부터 10 cm까지 包含한다. 標識을 위한 作業은 軍事分界線標識를 第0099号로부터 西쪽 建物로부터 限界線까지는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支援軍側이 東쪽限界線까지는 聯合軍側이 責任지며, 다만 共同警備區域 西南쪽 모퉁이에서 軍事分界線이 강바다으로 지나가는 部分은 該當 各方이 自己側이 責任진다.

標識物에 대한 維持管理은 이 標識를 한 側이 責任진다.

2. 第2条 2項 補充

共同警備区域의 警備人員을 包含한 모든 軍事人員은 共同警備区域안의 軍事分界線을 넘어 相對側地域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停戰協定 第11項의 規定에 따라 軍事停戰委員會와 共同監視小組 中立國監督委員會 成員들은 이에서 除外된다.

그러되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들은 各方에서 相對側에 들어가 있는 人員이 한번에 15名을 넘지 못한다.

共同警備区域안의 軍事分界線上에 놓여 있는 共同으로 利用하는 建物 안에서는, 雙方이 自由로 共同으로 移動하며 一方이 利用하는 建物안에서는 그 建物을 利用하는 側만이 自由로 利用한다.

共同警備区域안의 通信施設을 管理維持하기 위하여, 또는 非武裝軍事人員에 의한 其他 許可된 活動을 위하여 軍事分界線을 넘어 相對側 地域에 넘어 가려는 軍事人員은 相對側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雙方이 모든 非軍事人員은 共同警備區域안에서 軍事分界線을 넘어 自由로 이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適切한 識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共同警備區域안의 會議場建物區域에서만 軍事分界線을 넘어갈 수 있다. 車輛들은 相對方の 事前同意가 있어야만 共同警備區域안에서 軍事分界線을 넘어갈 수 있다.

共同警備區域안에서 雙方의 軍事人員 및 非軍事人員들은 서로 安全을 侵害하는 接觸을 할 수 없다.

各方은 共同警備區域 自己側部分에 合法的으로 들어온 相對側人員들의 安全을 責任的으로 保障한다.

3. 第3条 1項의 補充

共同警備區域안에서 自己側이 必要로 하는 警備哨所는 自己側區域에서만 設置한다. 第2条 2項의 安全保障의 遵守를 保障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도 그 相對方の 視界를 妨害하는 視覺的이거나 其他障礙物들을 設置하지 못한다.

3. 周边四强과의 關聯声明

가. 戰略攻擊武器制限 暫定協定 議定書

1972年 5月 27日

美合衆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以下는 當事國이라 稱함)은 暫定協定으로 潛水艦發射用 誘導彈 發射裝置와 現代式 誘導彈潛水艦 및 代替節次에 關係되는 몇가지 制限措置를 合意했으며,

다음과 같이 合意했다.

當事國은 暫定協定 第3條의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協定の 有效期間中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理解한다.

美國은 潛水艦發射用 誘導彈發射機(SLBM)를 710基, 現代式 誘導彈潛水艦을 44雙 以上 保有할 수 없다. 蘇聯은 潛水艦發射用 誘導彈發射機를 950基, 現代式 誘導彈潛水艦을 62雙 以上 保有할 수 없다.

上記한 線까지의 潛水艦發射用 誘導彈發射機 - 現在 實戰配置되었거나 建造中인 美國의 核潛水艦發射用 誘導彈發射機는 656基 以上, 蘇聯의 核潛水艦發射用 誘導彈發射機는 70基 以上은 1964年 以前에 配置된 旧型 誘導彈發射裝置나 旧型潛水艦의 誘導彈發射裝置를 同數로 代替하여 實戰配置될 수 있다.

여하한 型의 潛水艦에 現代式 SLBM를 配置하는 경우에는 그

型에 關係없이 이를 美·蘇 兩國에 許用된 SLBM의 總數에 算入한다.

本議定書는 暫定協定の 必須不可欠한 部分으로 看做한다.

美合衆國側 美合衆國 大統領

「소비에트」社會主義 共和國聯邦側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
書記長

나. 美蘇關係의 諸基本原則에 關한 聲明

1972年 5月 29日

美合衆國(以下 美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以下 蘇聯)은, 「유엔」憲章下에서의 그들의 責務와, 相互間的 平和로운 關係를 강화하고 그 關係를 日수록 가장 견고한 土臺위에 올려 놓으려는 所望에 따라, 戰爭의 威脅을 제거하고 世界的 緊張 減少와 國家安保 및 國際協力을 촉진시킬 條件造成을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해야 할 필요를 認識하고, 美·蘇 關係改善과 經濟, 科學 及 文化 等 分野들에서의 兩國의 互惠的 事態發展이 이들 目標에 부응하고 그리고 어떤 形態로든 第3國들의 손상함이 없 이 相互 理解와 實務的 協力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 고, 이러한 目標들이 兩國 國民의 利益을 反映함을 意識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했다.

첫째, 兩國은 核時代에 있어서 平和共存을 바탕으로 相互關係를 처리하는 외에 다른 代案이 없다는 共通된 決意로부터 출발해 나아갈 것이다. 美·蘇간의 理念上 및 社会體制上의 差異는 主權, 平等, 內政不干渉 및 互惠의 原則에 立脚한 正常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둘째, 美國과 蘇聯은 兩國關係의 危險스러운 惡化를 초래시킬 수 있는 사태발전의 防止에 큰 重要性을 부여한다. 때문에 兩國은 軍事對決을 피하고 核戰爭을 防止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兩國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항상 自制할 것이며, 平和的 手段으로 見解差를 協商하고 解決할 用意을 갖출 것이다. 未決問題들에 관한 討議와 協商은 互惠와 相互適應과 相互利益의 精神으로 遂行할 것이다.

兩側은 直接이건 他方の 희생으로 하여 一方的인 利得을 얻으려는 노력이 이러한 目標들과 兩立하지 않음을 認定한다. 美國과 蘇聯의 平和關係를 維持強化하는 데 있어서의 前提要件은 平等原則과 武力使用이나 威脅의 拋棄에 바탕한 当事國들의 利益을 認定하는 것이다.

셋째, 美國과 蘇聯은 다른 「유엔」安保理事會 常任理事國들과 마찬가지로 國際緊張을 增大시킬 紛爭이나 狀況이 일어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할 特別한 責任이 있다. 이에 따라 兩國은 모든 나라들이 平和와 安全 속에서 살고 國內問題에 대해 外部干渉을

받지 않을 狀況을 增進시키도록 追求할 것이다.

네째, 美国과 蘇聯은 相互關係의 法的土台를 넓히고 兩國이 締結한 雙務協定과 兩國이 共同当事側이 되어 있는 多邊條約 및 協定을 성실하게 履行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다섯째, 美国과 蘇聯은 相互利益이 되는 問題들에 관해 意見을 交換하는 慣例를 繼續할 것과 필요할 때에는 兩國 指導者間의 會談을 포함하여 最高位水準에서의 그러한 意見交換을 행할 用意를 再闡明한다.

兩國政府는 兩國議會 代表間의 生産的인 接觸의 增加를 환영하며 推進시킬 것이다.

여섯째, 兩國은 多邊的인 水準에서는 물론 雙務的인 水準에서도 軍備制限努力을 繼續할 것이다. 兩國은 戰略武器制限을 위해 특별히 努力을 繼續할 것이다.

가능하면 언제라도 兩國은 그러한 目的들을 成就하기 위해 具體的인 協定을 맺을 것이다.

美国과 蘇聯은 全面完全軍縮의 達成과 「유엔」의 目的 및 原則에 따른 效果的인 國際安保體制의 確立을 兩國의 努力의 最終的인 目標로 看做한다.

일곱째, 美国과 蘇聯은 雙務關係의 強化에 있어서 商業的 및 經濟的 紐帶가 重要하고 必要한 要素가 됨을 認定하며, 따라서

그러한 紐帶의 成長을 積極 推進 할 것이다. 兩國은 兩國의 關聯된 機構들과 企業들 사이의 協調를 促進할 것이며, 적절한 協定과 長期的인 것을 포함한 契約의 締結을 促進할 것이다.

兩國은 兩國間의 海洋 및 空中通信의 改善에 기여할 것이다.

여덟째, 兩側은 科學 및 技術分野에서 相互 接觸과 協調를 발전시키는 것이 時期에 맞고 有益하다고 看做한다. 적절하다고 看做될 때 美國과 蘇聯은 그러한 分野들에서 具體적인 協力を 다루는 적합한 協定을 맺을 것이다.

아홉째, 兩側은 서로간의 文化的 紐帶를 深化하고 서로의 文化的 價值에 대한 보다 充分한 親熟을 勸奨하려는 意圖를 再闡明한다. 兩國은 文化交流와 觀光을 위해 向上된 條件을 增進시킬 것이다.

열째, 美國과 蘇聯은 上述한 全分野들과 기타 兩國의 相互利益이 되는 分野들에서 兩國의 紐帶와 協調가 確固하고 長期的인 土臺 위에 건설되도록 하는 保障策을 追求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에 恒久的인 性格을 부여하기 위해 兩國은 妥當性있는 모든 分野에서 合同委員會를 혹은 기타 合同機構를 설치할 것이다.

열한째, 美國과 蘇聯은 世界問題들에 있어서 自身들을 위해 權利를 主張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구가 特別한 權利와 利點을 主張하는 것도 認定하지 않을 것이다.

兩國은 모두 國家의 主權을 認定한다.

美·蘇關係의 발전은 第3國들과 그들의 利益에 反하여 設定되지 않는다.

열두째, 이 文書에 밝힌 基本原則들은 美國과 蘇聯이 이보다 앞서 말은 他國들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닉슨」·佐藤(사토) 共同聲明

1969年 11月 21日 「워싱턴」

1. 「닉슨」大統領과 「사토」總理大臣은 1969年 11月 19日, 20日 그리고 21日 「워싱턴」에서 會晤하고 現 國際情勢와 美·日 兩國의 기타 共同關心事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였다.

2.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各種分野에 있어서의 兩國間의 緊密한 協力關係가 美·日兩國에 가져온 利益이 큼을 인정하고, 兩國 公히 民主主義와 自由의 原則을 指針으로 하여 世界의 平和와 繁榮의 不斷한 探究를 위하여, 특히 國際緊張의 緩和를 위하여 兩國의 成果있는 協力を 維持強化하여 갈 것을 宣言하였다.

大統領은 亞細亞에 대한 大統領自身 및 美國政府의 깊은 關心을 披瀝하고, 이 地域의 平和와 繁榮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美·日兩國이 相互協力하여야 한다는 信念을 披瀝하였다. 總理大臣은 日本은 亞細亞의 平和와 繁榮을 위하여 可一層의 積極的인 貢獻

을 할 것임을 말하였다.

3.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極東에 있어서의 事態發展에 各별히 留意하여, 現 國際情勢에 관한 隔意없는 意見을 交換하였다. 大統領은 이 地域의 安定을 위하여 地域内 諸國에 대하여 그 自主的 努力을 期待함을 強調하는 同時에 美國은 地域内에 있어서의 防衛 條約上의 義務를 遵守함으로써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繼續 貢獻할 것이라는 것을 保障하였다. 總理大臣은 美國의 決意에 贊同하고 大統領이 言及한 義務를 美國이 充分히 遂行할 수 있는 態勢에 있는 것이 極東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重要함을 強調하였다. 總理大臣은 또한 現在의 情勢下에서의 存在가 地域의 安定에 큰 支柱로 되고 있다는 認識을 披瀝하였다.

4.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韓半島에 緊張狀態가 繼續되고 있음에 특히 留意하였다. 總理大臣은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한 國際聯合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大韓民國의 安全은 日本自身の 安全을 위하여 絶對必要하다고 말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中共이 그 對外關係에 있어 보다 協調的이며 建設的인 態度를 取하도록 期待하는 点에서 雙方이 一致하고 있음을 認定하였다.

大統領은 美國의 中華民國에 대한 條約上의 義務에 言及하고 美國은 이를 遵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總理大臣은 台灣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도 日本의 安全을 위해 매우 重要한 要素라고 말하였다. 大統領은 越南問題

의 平和的이고도 正當한 解決을 위한 美國의 誠意있는 努力을 說明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越南戰爭이 「오끼나와」의 施政權이 日本에 返還될 때까지에는 終結되어 있을 것을 強力히 希望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關聯하여 兩者는 만일 越南에서의 平和가 「오끼나와」返還豫定時까지 實現되지 않을 경우에는 兩國政府는 越南國民으로 하여금 外部로부터의 干渉을 받음이 없이 그들의 政治的 장래를 決定하는 機會를 確保케 하기 위한 美國의 努力에 影響을 미치는 일이 없이 「오끼나와」의 返還이 實現되도록 그때의 情勢에 비추어 充分히 協議한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總理大臣은 日本으로서는 印度支那地域의 安定을 이룩하기 위하여 遂行할 수 있는 役割을 探究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5.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極東情勢의 現狀 및 展望에 비추어 美日安保條約이 日本을 포함한 極東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遂行하고 있는 役割을 共히 높이 評價하고, 相互信賴와 國際情勢에 대한 共通된 認識의 基盤 위에 安保條約을 견지한다는 兩國政府의 意圖를 確認하였다. 兩者는 또한 兩國政府가 日本을 포함한 極東의 平和와 安全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 및 安保條約의 施行에 關하여 緊密한 相互接觸을 維持하여야 한다는 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6. 總理大臣은 美·日 關係의 基礎 위에서 「오끼나와」의 施政權을 日本에 返還하고, 「오끼나와」를 正常的인 地位로 還元시

시켜야 한다는 本土 및 「오끼나와」의 日本国民의 強한 부응하는 時期가 到來하였다는 見解를 強調하였다. 大統領은 總理大臣의 見解에 대한 理解를 表示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또한 現 極東情勢下에서 「오끼나와」에 있는 美軍이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음을 認定하였다. 討議의 結果, 兩者는 美·日·兩國共通의 安全保障上의 利益은 「오끼나와」의 施政權을 日本에 返還하기 위한 協定으로 充足시킬 수 있다는 데에 意見이 一致하였다. 따라서 兩者는 日本을 포함하는 極東의 安全을 沮害함이 없이 「오끼나와」의 早期返還을 達成하기 위한 具體적인 協定에 관하여 兩國政府가 즉시 協議에 들어갈 것을 合意하였다. 또한 兩者는 立法府의 必要한 支持를 얻어 前記한 具體的 協定이 締結될 것을 條件으로 1972年中에 「오끼나와」返還을 達成토록 이 協議를 促進할 것에 合意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總理大臣은 返換後에는 「오끼나와」의 局地防衛의 責任은 日本의 自體領土防衛를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서 점차로 이를 擔當한다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명백히 하였다.

또한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美國이 「오끼나와」에 있어서 兩國共通의 安全保障上 필요한 軍事上의 施設 및 區域을 美日 安保條約에 基하여 繼續 保持한다는 데에 意見이 一致하였다.

7.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施政權 返還에 있어 美日 安保條約 및 이에 관련하는 諸協定은 修正없이 「오끼나와」에 適用된다는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總理大臣은 日本의

安全은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없이는 充分히 維持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極東諸國의 安全은 日本의 重大한 關心事라는 日本政府의 認識을 명백히 하였다. 總理大臣은 日本政府의 이러한 認識에 비추어 볼 때 前記와 같은 樣態에 의한 「오끼나와」의 施政權 返還은 日本을 포함하는 極東諸國의 防衛를 위하여 美國이 擔當하고 있는 國際義務의 效果的 遂行에 대한 沮害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見解를 表明하였다. 大統領은 總理大臣의 見解와 같은 意見임을 말하였다.

8. 總理大臣은 核武器에 대한 日本國民의 特殊한 感情 및 이러한 感情을 反映하는 日本政府의 政策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大統領은 이에 처한 깊은 理解를 表示하고, 美日安保條約의 事前 協議制度에 관한 美國政府의 立場을 害침이 없이 總理大臣이 說明한 日本政府의 政策에 背馳되지 않도록 「오끼나와」의 返還을 實施할 것을 總理大臣에게 確約하였다.

9.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오끼나와」施政權의 日本에의 移轉에 관하여 「오끼나와」에 있어서 美國의 企業의 利益에 관한 問題를 포함한 兩國間에서 解決되어야 할 諸般 財政 및 經濟上의 問題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留意하고 그 解決에 관한 具體的인 協議를 早速히 開始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0.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오끼나와」의 返還에 隨伴하는 諸問題의 複雜性을 認定하고 兩國政府에 의하여 合意될 返還約定에

따라서 施政權이 圓滑히 日本政府에 移轉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諸措置에 대하여 緊密히 協議하고 協力한다는 데 合意하였다.

兩者는 「도오쿄오」에 있는 美·日協議委員會가 이 準備作業에 대한 全般的인 責任을 질 것이라는 데에 合意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류우큐우」政府에 대한 必要한 援助를 포함하는 施政權 移轉準備에 관한 諸措置에 대한 現地에서의 協議 및 調整을 위하여 現存의 「류우큐우」列島 高等辦務官에 대한 諮問委員會에 代身하여 「오끼나와」에 準備委員會를 設置하기로 하였다.

準備委員會는 大使級の 日本政府代表 및 「류우큐우」列島 高等辦務官으로 構成되고 「류우큐우」政府行政主席이 委員會의 顧問이 될 것이다. 同委員會는 美·日協議委員會를 通하여 兩國政府에 대한 報告 및 勸告를 行한다.

11.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第2次大戰으로 發生한 美·日間の 主要懸案의 最後의 것인 「오끼나와」施政權의 日本에의 返還에 關한 雙方의 만족한 解決은 友好와 相互信賴에 기한 美·日關係를 일층 強化하는 原因이 되며 極東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貢獻하는 바 큼을 確信한다는 것을 披瀝하였다.

12.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經濟問題를 討議함에 있어 兩國間的 經濟關係가 현저하게 增大하였음에 注目하였다. 兩者는 또한 두 國家가 世界經濟에서 指導的 地位를 占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특히 貿易 및 國際収支에 있어서의 現在의 커다란 不均衡狀態에 비추어 國際貿易 및 國際通貨制度의 維持強化를 위하여 重要한

責任을 각각 지고 있음을 認定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大統領은 美国内 「인플레이」를 抑制하겠다는 그의 決意를 強調하였다. 그는 또한 더 自由로운 貿易을 促進한다는 原則에 대하여 美国의 公約을 再確認하였다. 總理大臣은 貿易 및 資本에 대한 日本의 制限措置를 迅速히 減縮시키고자 하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表明하였다. 그는 특히 1971年末까지 広範圍한 生産品에 대한 日本의 殘餘 輸入 「쿼타」制限을 除去하고 또한 殘餘品目에 대한 自由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最大限의 努力을 경주하겠다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披瀝하였다. 그는 日本政府는 現在까지 보다 더 빠른 速度로 貿易의 自由化를 實施하기 위하여 自由化計劃에 대한 定期的인 再檢討를 行하고자 함을 附言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兩國政府의 措置가 全般的인 美·日關係의 基調를 더욱 鞏固히 할 것이라는 데 合意하였다.

13.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的 必要에 대한 配慮가 國際平和와 安定을 增進하는 데 緊要하다는 데에 合意하였다.

總理大臣은 日本의 經濟成長에 附合하도록 對亞細亞援助計劃을 擴大 및 改善시키겠다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表明하였다. 大統領은 이와같은 發言을 환영하고 美国이 亞細亞의 經濟的 發展에 繼續 寄與할 것임을 確認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東南亞의 다른 地域과 越南戰後復興을 大規模로 推進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總理大臣은 이 目的을 위하여 相當한

寄与를 하겠다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表明하였다.

14. 總理大臣은 大統領에게 「아폴로」 12号의 成功的인 달 着陸에 대하여 축하하고 宇宙人들이 무사히 地球에 歸還할 것을 祈願함을 表明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宇宙探査가 모든 國家間에 있어서 平和的인 科学的 事業計劃에 있어서의 協力을 增大하기 위하여 커다란 機會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에 合意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總理大臣은 美国과 日本이 今年 여름 宇宙協力에 관한 協定을 締結한 事實에 만족을 表明하였다.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이 特別한 計劃의 施行이 兩國에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음에 合意하였다.

15.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軍備管理의 促進과 軍備擴大競争의 抑制에 대한 展望을 討議하였다. 大統領은 最近 「헬싱키」에서 開催된 蘇聯과의 戰略武器의 制限에 대한 會談을 시작하는 美国 政府의 努力의 概要를 表明하였다. 總理大臣은 嚴格하고 効率的인 國際管理下에 全面的이며 完全한 軍縮의 成就를 위한 効率的인 軍縮措置는 日本의 強力하고도 傳統的인 關心事項을 指摘하였다.

라. 美蘇共同声明

1972年 5月 29日 「모스크바」

美合衆国 (이하 美国) 과 「소비에트」 社会主義共和国聯邦 (이하

蘇聯)의 相互合議에 따라 「리처드·닉슨」美国大統領과 그의 夫人은 1972年 5月 22日부터 5月 30日까지 公式訪問했다.

이 訪問에는 「윌리엄·로저스」國務長官, 「헨리·키신저」安保擔當補佐官 및 기타 美国官吏들이 수행했다. 蘇聯에 滞在하는 동안 「닉슨」大統領은 「모스크바」외에 「레닌그라드」와 「키예프」를 訪問했다.

「닉슨」大統領은 蘇聯共産党書記長 L.I. 「브레즈네프」, 蘇聯最高會議幹部會議長 N.V. 「포드고르니」, 蘇聯閣僚會議 議長 A.N. 「코시킨」과 美·蘇兩國關係의 根本問題들과 現下國際情勢에 關係會議했다.

이 一連의 會談에는 美国側에서 「윌리엄·로저스」國務長官, 「제이콥·빔」駐蘇大使, 「헨리·키신저」大統領安保擔當補佐官, 「피터 M. 블레니건」大統領補佐官, 「마틴·힐렌브란드」 「유럽」問題擔當國務次官補가 그리고 蘇聯側에서 A.A. 「그로미코」外相, N.S. 「파틀리체프」對外貿易相, V.V. 「쿠즈네초프」副外相, A.F. 「도브리닌」駐美大使, C.M. 「알렉산드로프」共産党中央委書記長補佐官, C.M. 「코르니엔코」外務省美国部長이 참석했다.

會談은 相互關心事가 되는 広範圍한 問題들을 다루었으며, 솔직하고 철저했다. 會談은 兩國間의 協力を 더욱 增進시킬 展望이 있는 分野와 함께 兩側의 立場이 相異한 分野를 더욱 명확히 糾明했다.

相互關係

美·蘇關係를 보다 安定되고 建設的인 基盤위에 올려 놓으려는 欲求를 眞摯히 삼고 世界平和維持 및 國際緊張緩和促進에 대한 責任을 留意하면서 兩國은 “美國과 蘇聯間的 相互關係에 대한 諸基本原則”이라는 表題의 文書를 채택하고 美國을 代表해서 「닉슨」大統領이, 蘇聯을 代表해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이 이에 署名했다.

兩側은 이 文書의 諸項目이 美·蘇間的 平和로운 關係 및 互惠의 協定을 發展시킬 새로운 可能性을 더 줄 것으로 確信한다.

美·蘇相互關係의 여러 分野를 고려한 兩側은 關係改善이 可能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데 合意했다. 兩側은 上記文書에서 規定된 諸項目에 따라 行動할 確固한 意思를 表明했다.

頂上會談에 앞서 進行되었던 協商들과 頂上會談自體의 進行過程에서 이룩된 進展의 成果로 主要協定들이 이룩되었다. 이는 共同關心事의 分野와 함께 平和와 國際協力の 大義에 關係된 分野에서의 相互協力을 強化할 것이다.

戰略武器制限

兩側은 核戰의 危險을 減消시킬 問題에 一次的인 關心을 두었다. 兩側은 戰略武器競争의 抑制가 이 目的을 위해 意義있고도 明確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兩側은 兩國間에 締結된 彈導誘導彈 邀擊網 (ABM) 制限協定과 戰略攻擊武器制限에 關係되는 一部措置에 관한 暫定協定에 커다란 重要性을 부여한다.

「 모스크바 」會談結果 締結된 이 協定들은 軍備競争을 抑制하고 終局的으로 終息시키기 위한 主要한 一步가 된다.

이들 協定은 核武器擴散禁止條約 (第 6 條) 에서 國家들에게 부과된 義務履行과 國際緊張緩和 및 國家間의 信賴強化에 기여하려는 兩側意向의 具體적인 表現이다. 兩側은 上記協定の 成就가 人類를 核戰爭勃發의 危險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實踐적인 措置임을 確信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다른 國民들의 重要한 利益은 물론 美國과 蘇聯國民들의 重要한 利益과 附合된다.

兩側은 戰略攻擊武器制限을 위한 協商을 積極적으로 繼續하며, 또한 善意의 精神下에서 서로의 合法的 利益을 尊重하고 同等한 安保의 原則을 遵守하여 이를 實踐할 作定이다.

兩側은 또한 1971年 9月 30日 「 워싱턴 」에서 調印된 美國과 蘇聯間의 核戰爭勃發危險을 줄이는 方途에 관한 協定이 美國과 蘇聯國民들뿐만 아니라 모든 人類의 利益에 貢獻한다고 確信한다.

商業 및 經濟關係

兩側은 美·蘇 두 나라간의 商業 및 다른 經濟的 關係를

發展시키고자 보다 有利한 條件을 이룩하기 위한 措施들에 合意했다. 雙方은 經濟關係를 增進시키기 위한 現實的 條件이 存在한다는데 意見을 모았다.

이러한 關係는 相互利益의 基礎와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國際的 先例에 따라 發展되어야 한다.

兩側은 이러한 目的이 美·蘇兩國間의 通商協定の 締結에 의하여 達成될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通商協定締結에 必要한 作業을 完了하기로 決定했다.

兩側은 相互間의 貿易을 增進시키기 위한 借款措施를 마련하는 것과 其他 財政 및 經濟的 問題의 解決을 위한 早期努力이 바람직하다는 데 合意했다. 武器貸與法에 관련된 두 나라 사이의 清算問題는 通商協定과 同時에 協商될 것에 合意했다.

두 나라 사이의 通商紐帶를 擴大하며, 이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또한 特定措置를 成案하기 위하여 兩側은 美·蘇合同經濟委員會를 創設기로 決定했다.

兩側은 서로 두 나라의 團體와 商社 사이의 效果的 實務關係의 樹立促進을 도울 것이며, 長期的 契約의 締結을 鼓舞할 것이다.

海上事故 防止問題

兩側은 海上 및 이에 관련된 諸問題에 관해서도 協商을 繼續

하기로 합의했다.

兩國은 이와같은協定이 兩國間의 通商擴大를 促進시키는 積極的인 措置가 될 것으로 믿는다.

兩國은 그들의 海軍艦艇과 航空機들 사이에 發生할 可能性있는 海上 및 空中事故를 防止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했다.

이 協定은 近距離에서 作戰中인 兩國海軍艦艇 및 航空機들이 遵守해야 할 節次를 規定함으로써 危險한 事故의 發生可能性을 줄이게 될 것이다.

科学·技術 協力

兩國은 原子力研究, 外界探險, 保健 및 기타 分野에서 進行中인 協助가 兩國에 똑같이 利益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全般的인 關係에도 積極 이바지한다는 事實을 認定했다.

또 相互利益과 共同目標를 위한 共同努力에 立脚한 兩國間의 科学技術協力增進이 兩國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尙차 兩國의 雙務關係를 改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合意했다.

이와같은 모든 目標를 위해 兩側은 科学技術分野의 協力協定에 調印했다. 科学技術協力에 관한 美·蘇共同委員會가 곧 設치되어 兩國의 協力計劃을 確定짓게 될 것이다.

宇宙協力

兩國은 平和的 外界探險에 있어 兩國이 맡은 役割에 留意하여

장차 이 分野에서의 兩國協力增進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外界飛行에 있어서의 人間의 安全을 圖謀하고 共同科學實驗計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兩側은 두 나라의 宇宙船과 宇宙停車場을 結合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準備를 갖추기로 合意했다. 兩國의 宇宙飛行士들이 서로의 宇宙船으로 換乘하게 될 最初의 美·蘇共同有人宇宙飛行 및 結合實驗은 1975년에 實施될 것이다. 이 飛行을 위한 計劃과 그 實現은 美航空宇宙局 (NASA) 과 蘇聯科學院이 相互協議에 따라 定해질 原則과 節次에 依拠 實行될 것이다.

保健分野의 協力

兩側은 共同의 敵인 疾病과 廢疾에 관한 知識을 나누고 이에 관한 共同對策을 成果있게 시작기로 하는 保健協力協定을 締結했다. 이 計劃의 첫 研究努力은 癌, 心臟疾患, 環境保健科學 등 全世界的으로 중요한 保健問題에 集中될 것이다.

그리고 이 協力は 繼續 擴大되어 相互關心을 갖는 다른 保健問題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兩側은 保健協力計劃을 전목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兩國政府가 保健分野國際機構事業에 繼續 積極 참여기로 合意했다.

環境問題協力

兩側은 人類의 環境保護 및 改善에 관한 協力計劃을 開始하는데 合意했다. 兩國은 共同研究 및 共同措置를 통해 그들 國家內와 全世界에서 進전한 環境保存에 기여할 것을 希望한다.

環境協力에 관한 새 協定下에 가까운 장래에 「모스크바」에서 具體的인 協力計劃에 관한 協議가 이루어질 것이다.

科学技術・教育 및 文化部門交流

兩側은 1972年 4月 11日 「모스크바」에서 調印된 1972~3年度 科学技術・教育・文化 및 기타 分野에서의 交流 및 協力에 관한 協定の 重要性을 유의했다. 이러한 分野에서의 兩國간의 交流繼續 및 拡大는 兩國간의 理解를 두터이 하고, 이 協定이 定한 広範한 테두리 안에서 兩側은 宇宙, 保健, 環境 및 科学技術에 관한 새 協定에 反映된 것같이 協力分野를 拡大하기로 合意했다.

蘇聯에서 広範圍한 英語教育計劃이 存在함을 認知한 美国은 美国에서 露語教育計劃을 勸奨할 意思를 밝혔다.

國際問題

「유럽」

國際情勢를 討議하는 過程에서 兩國은 「유럽」에서의 緊張緩和가 바람직한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注目했다.

두번에 걸쳐 世界大戰이 勃發했던 「유럽」에서의 情勢發展이 世界 平和에 미치는 重要性을 認識하고 또 적절한 協定下에 다른 強大國과 共有하고 있는 많은 責任과 公約을 念頭に 두면서, 美・蘇兩國은 緊張과 危機의 紛爭이 없는 平和스러운 「유럽」의 장래를 保障키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

兩側은 「유럽」에서의 모든 國家들의 領土保存이 尊重되어야 한다는 데 合意했다.

兩側은 또 지난 71年 9月 3日字 4大國 「베를린」協定을 美・蘇 두 나라를 포함하는 國家들간의 效果的 協力を 立証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兩側은 다른 措置들과 함께 이 協定이 가까운 장래에 履行됨으로써 「유럽」의 事態를 보다 效果的으로 改善시키고 國家間에 필요한 信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兩側은 1970年 8月 12日字 獨·蘇條約을 환영했다.

그들은 「유럽」國家 사이의信義와協力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의 이條約規定과 最近의 몇 가지協定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했다.

美國과 蘇聯은 領土保全, 國境線不侵, 內政不干渉, 主權平等, 獨立, 武力使用 및 威脅의 拋棄의 原則에 입각하여 「유럽」國家들 사이의 和解와 平和協力關係의 發展을 指向하고 있는 「유럽」大陸의 肯定的인 趨勢에 적절히 이바지할 用意가 있다.

兩側은 「유럽」안보協力에 관한 會議開催를 위한 多邊的 論議가 1971年 9月 3日字 「베를린」協定の 4大國 最終議定書가 調印된 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意見을 같이 한다.

兩國政府는 「유럽」에서의 安보와 協力の 特定問題를 具體적으로 다룸으로써 「유럽」緊張의 根本原因을 점차 除去하는 데 이바지하게끔 會議을 신중히 準備해야 한다는 데 合意한다.

이 會議은 특별한 理由가 없는 한 지체없이 合議하는 시기에 開催되어야 한다.

兩側은 「유럽」의 安定과 安全을 保障하는 目標는 무엇보다도 中部 「유럽」에 있어서의 相互軍縮에 의해 促進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問題에 관한 어떠한 合意도 어느 一方의 安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關係國家들은 特別會議에서 이 問題의 協商節次에 관한 적절한

協定을 가능한 한 早速히 이룩해야 한다.

中東問題

兩側은 이 問題에 대해 서로의 立場을 提示했다. 美国과 蘇聯은 「유엔」安保決議案 242 号에 따라 中東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지지하는 종래의 입장을 再闡明한다.

兩側은 「유엔」事務總長의 中東平和特使 「야링」大使의 任務와 關聯된 國家들로부터의 건설적인 協力の 重要性을 認識하고, 「야링」大使의 任務成功에 기여하려는 所望을 確認하는 同時에 中東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해 兩側이 맡은 役割을 다할 用意를 宣言한다.

美国과 蘇聯은 이같은 解決이 中東事態의 正常化展望을 더 높을 것이며, 또 특히 이 지역의 軍事的 緊張緩和을 招來할 此後의 措置를 고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차이나」

美国과 蘇聯은 繼續되는 越南戰과 全般的인 「인도차이나」情勢에 대해 各者의 見解를 제시했다.

美国側은 가능한 한 빨리 軍事的 紛爭을 終息시킬 必要性을 強調했으며 또한 越南의 政治的 장래는 外部 간섭없이 越南國民 스스로 決定하도록 남겨두어야 된다는 原則에 대한 美国公約을 再確認했다.

美国側은 前述한 目標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効果的으로 達成하는 길은 全美軍 포로의 석방, 國際監視下의 印支全域에 걸친 休戰, 이에 따른 4個月以內의 全駐越美軍撤収, 印支人民 自身에 의한 政治問題의 解決을 가능케 하는 協商을 통하는 것이라는 그 見解를 설명했다.

美国은 또한 모두에게 공정한 土台 위에서 印支戰을 해결키 위해 越盟側과 진지한 協商에 들어갈 用意가 있음을 거듭 確認했다.

한편 蘇聯側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人民의 自由와 獨立 社会發展을 위한 正當한 鬪爭에 대한 그의 連帶性을 強調했다.

蘇聯은 「베트남」問題를 위해 현실적이며 建設적인 바탕을 提示한 「베트남」民主共和国(DRV)과 南「베트남」共和国의 提案을 確固히 支持, 「인도차이나」人民들이 外部干涉 없이 그들의 運命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도록 DRV에 대한 美国의 北爆中止와 美軍 및 그 同盟軍의 南「베트남」에서의 完全하고도 明白한 撤収를 촉구했다.

軍縮問題

兩側은 武器制限 및 軍縮問題에 대한 各者의 立場을 表明했다.

美·蘇兩國은 最近 數年 동안에 두 나라의 共同 및 並行措置를 통해 軍備競争을 抑制하거나 가장 危險한 種類의 武器 一部를 禁

止하는 条約作成 및 締結을 強調했음에 注目한다.

兩側은 또한 世界の 大多數國家들이 이러한 条約을 환영하고 条約當事國으로 加入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雙方은 生物学武器 및 化学武器의 開發, 生産, 備蓄의 禁止와 파괴에 관한 協約을 軍縮을 위한 基本措施로 看做한다.

美·蘇 兩國은 英國과 더불어 最近 모든 國家에 의한 調印이 開放된 이 協約文의 寄託國家들이다.

美·蘇는 化学武器에 관한 國際協定을 이룩하도록 繼續 努力할 것이다.

美國과 蘇聯은 平等의 原則에 立脚, 第3國의 利益을 해침이 없이 兩國의 安利益을 고려할 必要에서 출발하여 軍備競爭을 縮小 또는 終結시킬 새로운 措施 作成을 目標로 한 協商에 積極參加할 것이다.

兩國의 窮極의 目的은 嚴格한 國際監視下에 核軍縮을 包含, 全面 完全軍縮을 이룩하는 데 있다.

世界軍縮會議은 적절한 時期에 이 過程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強化

美·蘇兩國은 「유엔」憲章을 遵守한다는 原則 밑에서 「유엔」의 効能을 強化하는 데 全力을 다할 것이다.

雙方은 「유엔」을 世界平和와 安保維持, 紛争抑制, 國際協助增進

등을 위한 機構로 看做한다. 따라서 國際平和를 위한 「유엔」의 努力을 支援하는 데 最善을 다할 것이다.

雙方은 「모스크바」協商에서 이루어진 諸協定과 諒解 그리고 諸協商의 內容과 性格은 결코 다른 어떤 나라도 해치는 것이 아님을 強調했다.

雙方은 그 關係國家들의 役割 및 特權, 現存하는 國際的 義務와 協定 그리고 「유엔」憲章의 原則과 目的을 認定하는 데서 出發한다.

雙方은 이번 頂上會議에서 肯定的인 結果들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이런 結果들은 두 나라 사이의 社會體制, 理念, 政策上의 原則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平和와 國際安保強化를 위해 두 나라 國民間의 互惠的 協力增進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雙方은 討議對象이 되었던 많은 問題에 關係 緊密한 接觸을 繼續하려는 意思를 表明했다.

美·蘇兩國은 相互關心事에 關係 最高位會談을 包含한 定期的인 接觸을 갖는 것이 有益하다는 데 合議했다.

「닉슨」大統領은 그가 蘇聯에서 받은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고 「브레즈네프」黨書記長과 「포드고르너」最高會議幹部會議長 및 「코시킨」首相이 相互便利한 時期에 美國을 訪問토록 초청했다.

이 초청은 受諾되었다.

마. 「닉슨」·佐藤(사또) 共同声明

1972年1月7日「센·클레멘트」

1. 佐藤(사또)總理大臣과 「닉슨」大統領은 1972年1月6日 및 7日의 兩日間 「센·클레멘트」에서 會談하고 日·美兩國간의 緊密하고 友好的인 關係를 反映한 広範圍의 成果있는 討議를 하였다. 이 討議는 國際情勢 全般, 特히 中共을 包含하는 「아시아」의 情勢 및 日·美兩國關係에 걸쳤다.

2.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流動하고 있는 現下 世界情勢가 緊張緩和로 向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永統的인 平和와 安定의 增進을 위하여 이와 같은 움직임을 助長할 한층의 努力이 必要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兩者는 또한 日·美協力關係의 維持가 「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不可欠의 要素임을 認定하였다.

이에 따라 兩者는 兩國政府가 저마다의 「아시아」政策에 關해서 今後에도 密接히 協議할 것을 確認하였다.

3.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過去 百年餘의 오랜 歲月에 걸친 日·美兩國간의 修好關係를 回想하면서 日·美關係가 兩國의 相互信賴依存 위에서 構築되어야 할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兩者는 또한 이와 關聯해서 日·美安保條約이 遂行해온 重要한 役割을 높이 評價하였다.

4.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1969年 11月 21日의 共同聲明에서 豫定된 冲繩(오끼나와) 返還과 關聯되는 諸問題에 對하여 討議하였다.

兩者는 1971年 6月 17日에 署名된 返還協定이 立法府의 支持를 얻은 것을 기뻐하고 今年 5月 15日을 期하여 冲繩(오끼나와)의 日本으로의 返還을 實施할 것을 決定하였다.

大統領은 冲繩(오끼나와)에 있어서의 核武器에 關한 美國政府의 確約이 完全히 履行되었다는 바의 確認을 返還時 行한다고 하는 美國政府의 意向을 明白히 하였다.

이에 對하여 總理大臣은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總理大臣은 大統領에 對하여 在冲繩(오끼나와) 美軍施設·區域 特히 人口密集地域 및 冲繩(오끼나와)의 産業開發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地域에 있는 美軍施設·區域이 復歸後 될 수 있는 대로 整理·縮小될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理由를 說明하였다.

大統領은 雙方에 受諾될 수 있는 施設·區域의 調整을 安保條約의 目的에 副應하면서 復歸後 行함에 있어서 이들 要素는 充分히 考慮할 수 있는 바의 것이라고 對答하였다.

5.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既往의 緊密한 日·蘇經濟關係의 增進이 日·美關係의 全般 및 世界經濟의 發展을 爲하여 重要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昨年 9月의 日·美貿易經濟合同委員會 以來 日·美間의 貿易條件 및 經濟關係의 改善에 對한 커다란 進展이 보여지고 있

다는 것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였다.

兩者는 그 위에 昨年 12 月の 國際通貨調整이 今後 世界經濟의 發展의 基礎가 될 것을 期待하고 今後에도 其他 諸國과 함께 通貨制度의 改善과 世界貿易의 擴大를 위하고 또한 發展途上國의 援助를 위하여 더욱 努力을 거듭할 決意를 表明하였다.

이와 關聯해서 兩者는 公的 援助와 民間資本의 流通을 容易하게 할 條件의 重要性을 確認하였다.

6.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함께 自由와 民主主義의 理念을 信奉하는 日·美兩國이 世界의 平和와 繁榮 및 國民의 福祉를 維持增進한다고 하는 共通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政治, 文化, 經濟, 科學, 技術等 모든 分野에서 相互 緊密하게 協力한다고 하는 基本的인 思考方式을 再確認하였다.

兩者는 兩國政府가 環境問題, 原子力의 平和利用 및 宇宙空間의 平和的 探査와 利用의 分野에 있어서의 協力을 擴大하고 나아가서는 兩國의 專門家가 이 點에 關한 具體的 措置를 檢討할 것에 意見이 一致하였다.

兩者는 또한 文化交流를 增大하기 위한 措置를 取할 것에 意見이 一致하고, 이에 關聯해서 大統領은 日本이 設立을 考慮하고 있는 文化交流計劃에 關한 說明에 對하여 歡迎의 뜻을 表하였다.

바. 「닉슨」·田中(다나카)共同声明

1972年9月1日 「호놀룰루」

1.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8月31日과 9月1日 兩日間에 여러 가지 共同関心事를 広範圍하게 議論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會同하였다.

이 會談은 美·日兩國間の 友誼의 긴 역사를 반영하는 和氣애애하고 相互信賴하는 분위기에서 進行되었다.

兩 지도자는 그들의 會談이 兩國間の 더욱 긴밀한 유대를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하나의 새로운 發端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는 希望을 피력했다.

2. 田中首相과 「닉슨」大統領은 現 國際情勢와 긴장완화 그리고 世界, 특히 「아시아」의 当面問題의 平和로운 解決의 전망을 檢討했다. 兩國間の 우의와 협조의 긴밀한 유대의 유지 및 強化는 발전하는 世界情勢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定이 여전히 重要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點이 강조되었다. 兩지도자들은 兩國間の 相互協助 및 安保條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兩國政府의 의도를 재확인했으며, 兩國政府가 이 條約의 圓만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긴밀한 相議를 通해 계속 協助하기로 合意했다.

3.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定의 漸高하는 徵兆를 論하면서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최근 韓半島에서 南北間的 對話

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아시아」國家들이 自立과 지역 協助를 위해 차츰 활발한 努力을 전개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그리고 兩지도자는 印支에 조속히 平和가 實現되기를 바라는 希望을 피력했다.

兩지도자는 「닉슨」大統領의 지난번의 中共 및 蘇聯 방문이 상당한 進展을 뜻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兩지도자는 不遠間に 있을 田中首相의 中共방문이 「아시아」의 긴장완화 傾向을 더욱 助長하게 되기를 바랐다.

4.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지난번 美·蘇兩國이 誘導彈 방위제한 問題에 관해 체결한 協定과 戰略 공격용 유도탄 制限暫定協定을 拳論했으며, 이와 같은 조치가 戰略 무기를 制限하여 世界平和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進展이라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했다.

兩지도자는 戰略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가일층의 조치의 必要를 相議하자는 데 合議했다.

5.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經濟, 通商 및 財政問題에 관해 광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兩지도자는 美·日兩國간의 經濟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兩지도자는 그들의 會談이 兩國간의 그리고 全世界的인 經濟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 兩國간의 보다 더 긴밀한 協助에 寄与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6.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國際通貨制度의 根本的인 改革이 絶대로 必要하다는 點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했다.

兩지도자는 그들이 代表하는 政府가 그러한 改革을 이룩하기 위해서 급속한 活動을 展開할 것을 다짐했다.

通商問題에 있어서 兩지도자는 兩國이, 1973年 중에 工業과 農業분야의 多邊的인 通商協商을 시작하여 이를 활발히 支援하기로 한 1972年 2월의 合意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兩지도자는 앞으로 있을 通商協商에서 關稅 및 非關稅장벽의 축소는 물론 多邊的인 非差別的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加일층의 通商확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必要를 지적했다.

7.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두 나라가 國際收支와 通商收支의 보다 나은 平衡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合意했다.

이 點에 관해서, 「닉슨」大統領은 美國이 通商 및 國際收支를 改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하였으며, 美國政府가 生産性 增大와 特히 日本에 對한 市場調査 改善을 通해서 輸出量을 확장시키도록 美國商社들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田中 首相은 日本政府 역시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을 促進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보다 적절한 기간내에 보다 적절한 규모로 均衡을 감소시키는 것이 日本政府의 意圖임을 지적했다.

兩지도자는 發展하는 經濟關係를 檢討하기 위해 앞으로 高位層 會談을 開催하는 것이 매우 有益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可能的限 1973年初에 通商, 經濟問題에 대한 美·日 共同委員會 會議를

開催할 것에 合意를 보았다.

8.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두 나라 国民 사이에 文化的 社会的 및 그밖의 背景에 對한 相互理解 改善 노력을 促進시킬 必要를 재확인했다.

兩지도자는 또한 새로운 改善된 文化·教育 交流計劃이 이러한 目的을 成就하기 위한 重要한 方便이라는 點에 合意했다.

이에 關連해서 「닉슨」大統領은 今年 10월에 발족할 日本財團의 成功적인 活動에 對한 그의 커다란 希望을 강조했다.

9.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世界의 平和와 번영 및 兩國 國民의 福祉를 유지하고 促進시키기 위한 共同 目標下에, 날로 多樣 해지는 여러 分野에 있어서의 兩國間의 漸增的인 協助氣運을 만족스럽게 지적했다.

그들은 마약 및 그밖의 위험한 약품의 不法去來를 단속하기 위한 兩國間에 이미 存在하는 긴밀한 協助關係를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데 同意했으며, 또한 「에너지」 및 鉍物資源의 개발과 보다 効果的인 사용에 關한, 그리고 環境保護 및 汚染統制의 긴박한 문제들에 對한 加一層의 雙務的 및 多邊的 協助의 必要性에 對해 合意했다.

그들은 지나치게 빠른 人口成長에 依해서 야기되는 問題들의 解決을 위해 「유엔」傘下 特別機構를 通하여 적절한 支援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11. 田中 首相과 「닉슨」大統領은 停止通信衛星 및 그밖에 科學衛星을 發射하려는 日本의 目標을 비롯하여 外界深査에 있어서의 協助를 商議했다.

「닉슨」大統領은 地球 大氣圈 調查計劃을 뒷받침하는 氣象衛星의 發射에 대한 日本의 積極的인 關心과 研究를 환영했다.

12. 日本首相과 美國大統領은 그들의 會談에 만족을 表示했으며, 계속 긴밀한 個人的 接觸을 維持하기로 合意했다.

사. 美日 共同聲明

1975年 8月9日「워싱턴」

美合衆國大統領과 日本首相은 美·日 兩國이 基本的 民主價値를 共有하고 相互 信任과 協力으로 結束해 왔음을 認定하면서 兩國이 보다 公開的이고 自由로운 國際社會 建設에 계속 協力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

보다 安定되고 平和로운 世界秩序를 위해 모든 國家들은 國際行動의 特定原則과 創造的인 國際對話의 樹立 그리고 이를 통한 理念과 傳統 혹은 開發段階의 差異點을 超越하는 것을 受諾할 必要가 있다.

이 原則은 모든 國家의 主權 尊重, 他國의 利益認定, 國際去來에

서 相互尊重態度, 國家間異見의 平和로운 解決策 講究를 위한 決意 및 世界到處에서의 社會正義와 經濟發展을 이룩하겠다는 確固한 다짐 등이 包含되어야 한다.

美·日兩國은 이같은 原則을 尊重하고 國家間的 對話를 鼓舞할 것을 誓約하며 많은 共同努力分野에서 協力を 擴張하고 強化할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同等하고 恆久的인 平和가 全世界平和에 緊要한 것임을 認定하면서 美·日兩國은 이같은 平和를 鞏固히 하기 위한 「아시아」地域 國家들의 努力을 支持할 것이다.

國際經濟·社會關係는 모든 國民의 繁榮과 個人 및 國家의 熱望과 活動을 增進해야 하며 開發途上國은 물론 開發國의 利害와 原料生産國과 함께 消費國의 利害가 모든 사람의 福祉를 向上하고 世界의 社會經濟正義를 實現하는 方向으로 作用되어야 한다.

科學·技術 및 貿易·通信에 의해 縮小되고 있는 世界에서 國家間的 相互依存은 모든 民族의 生活과 福祉에 影響을 주는 現實問題가 되었다.

國際經濟機構와 體制는 이 相互依存關係를 反映하고 經濟問題接近에 있어 對決보다는 協力を 增進하는 方向으로 作用해야 한다.

疾病과 饑餓의 苦痛은 대단히 深刻하며 國際經濟 및 社會秩序에 관한 障礙가 되고 있다.

開發國의 財政·教育·技術資源은 이같은 事態를 緩和시키기 위한 特別한 責任感을 開發國에 賦與하는 것이나 이같은 苦痛이 地上에

서 消滅될 날을 서두르기 위해 모든 國家들이 知識 支援 및 技
術을 漸次 效果的으로 均配해야 하며 美·日兩國은 이 努力에 있
어서 充分히 寄與할 것이다.

아. 美日 共同新聞發表

1975年 8月6日「워싱턴」

1. 「미끼」首相과 「포드」大統領은 8月5日 및 6日의 兩日間
에 「워싱턴」에서 會談하고 共通의 關心을 갖는 各種의 問題에
관하여 包括的인 檢討를 行하였다.

兩首腦의 討議에는 「미야자와」 外務大臣과 「키신저」 國務長官
도 參加하여 和氣 애애한 友好的인 雰圍氣 가운데서 行하여졌다.

兩者의 會談은 充實한 것이었으며, 美·日兩國의 힘차고도 幅넓은
今日의 友好關係를 反映하는 것이었다.

2.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포드」大統領의 日本訪問時에 있어서의
1974年 11月22日 共同聲明에 포함되어 있는 美·日兩國間의 關
係에 대한 基礎가 되는 基本的 諸原則과 共通의 諸目的을 再確認
하였다.

이를 再確認함에 있어서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美·日兩國이 基本
的인 價值觀과 理念을 共有하면서도 그 國民性이라든가 그 놓여지
고 있는 狀況을 달리하고 있으며 兩國은 共同으로 이러한 差異에

基礎하는 힘을 活用하고 成熟되고 和解的이며 補完의 關係를 構築해 왔다는 것에 留意하였다.

兩者는 美·日兩國이 世界의 平和와 繁榮이라는 共通의 目標을 向하여 建設的이며 創造的 協力을 하는 것만이 이러한 兩國에 대하여 基本的으로 重要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兩者는 兩國政府間에 있어서 털어놓고 率直한 對話가 行하여져 왔다는 것에 滿足의 뜻을 表하면서 이러한 協議를 維持 強化하는 것을 約束하였다.

이 目的을 위하여 外務大臣과 國務長官은 共通의 關心을 갖는 兩國間 및 世界一般에 걸친 問題에 대하여 年 2回 檢討를 行하도록 한다.

3.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印度支那에 있어서의 武力紛争의 終結後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諸情勢에 대하여 討議하였다.

大統領은 「아시아」가 世界의 平和와 進歩를 위하여 重要하다는 것을 認定하면서 美國이 同地域에 있어서의 積極的이며 建設的인 役割을 계속 行할 것과 同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條約上의 約束을 계속 遵守할 것을 再確認하였다.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많은 「아시아」諸국이 스스로의 政治的, 經濟的 및 社会的 基盤을 強化하는 努力을 하고 있는 것을 歡迎하였다.

兩者는 美·日兩國이 이러한 努力에 대하여 계속 援助와 協力を 할 用意가 있음을 言及하였다.

兩者는 韓國의 安定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의 維持에 緊要하며 또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의 維持는 日本을 包含하는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에 대하여 必要하다는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兩者는 이러한 平和를 維持하기 위하여 現行의 安全保障上의 諸協定이 갖는 重要性에 留意하였다.

동에 兩國은 緊張을 緩和시키고 나아가서는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南北間의 對話가 進陟될 것을 強力하게 希望하였다.

「유엔」에 있어서 韓國問題와 關聯하여 兩者는 모든 当事者가 現在의 休戰을 保持하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의 重要性을 認認하도록 한다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4.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日本國과 美合衆國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은 極東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크게 寄與해 오고 있는 동시에 「아시아」에 있어서 國際政治의 基本的 構造에 不可欠의 要素이며 同條約을 계속 維持한다는 것은 兩國의 長期的 利益에 寄與하는 바의 것이라는 確信을 表明하였다.

兩者는 美國의 核抑制力은 日本의 安全에 重要的 寄與를 하는 것임을 認識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大統領은 總理大臣에 대하여 核兵力이건 通常兵力이건간에 日本에의 武力攻撃이 있는 境遇 美國은 日本을 防衛한다고 하는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에 立脚한 誓約을 계속 遵守할

뜻을 確言하였다.

總理大臣은 日本은 同條約에 立脚한 義務를 계속 履行해 나갈
뜻을 말하였다.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同條約의 円滑하고도 効果적인 運營을 위하
여 더한층 密接한 協議를 取할 措置에 대하여 兩國의 關係当局者
가 安全保障協議委員會의 테두리 안에서 協議를 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5.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共通의 關心을 갖는 各種의 國際問題에
관하여 討議하였다.

大統領은 美国이 戰略武器制限에 관한 美国과 蘇聯間의 第2次協
定交渉의 早期妥結을 圖謀하도록 계속 努力할 것에 留意하였다.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現在 遂行되고 있는 諸努力을 통하여 中東
에 있어서의 平和的 解決을 向하여 早速한 進展을 보여주도록 強
力한 希望을 表明하였다.

6.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世界에 있어서 最近의 核拡散傾向을
憂慮하고 核拡散防止 및 適切한 保障措置의 發展을 위한 國際的
인 努力에 美·日兩國이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兩國은 核準備制限, 核武器非保有國의 安全保障 및 原子力의 平和의 分野에 있어서 모든 核武器 保有國이 積極的으로 貢獻하여야 할 것을 強調하였다.

總理大臣은 日本이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核武器擴散禁止條約을 批准하기 위한 所要의 節次를 促進할 意向을 表明했다.

7. 總理代臣과 大統領은 世界 各國間의 經濟的 相互依存關係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美·日兩國이 安定되고 均衡이 잡힌 世界經濟의 發展을 위한 責任을 共히 가지고 있다는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兩者는 兩國이 緊密한 協議를 통하여 世界經濟의 一般情勢, 國際金融, 貿易, 「에너지」 및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의 協力에 관한 諸問題를 모든 國家의 利益이 되도록 하는 形態로 解決하기 위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兩者는 兩國間의 貿易, 投資關係가 着實하게 互惠的인 形態로 擴大해 나가고 있는 것에 滿足의 뜻을 가지고 留意하였다.

8.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世界經濟를 위한 自由로우며 擴大的인 貿易이 重要하다는 것을 認定하여 開放的인 國際貿易制度의 必要性을 強調함과 同時에 美·日兩國은 現在「제네바」에 있어서 關稅貿易 一般協定の 테두리 안에서 進行되고 있는 多角的 貿易交涉 東京「라운드」에 있어서 계속하여 積極的이며 建設的인 役割을 遂行

할 것을 確認하였다.

9.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世界の 「에너지」情勢는 如前히 不安定한 要素가 남아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이제까지 推進되어 온 消費國間의 協力の 進展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였다.

兩者는 이 分野 및 「에너지」問題에 관한 各國의 努力的 進展에 대하여 美·日兩國의 協力を 維持 強化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으며 産油國과 消費國間의 調和있는 關係의 進展이 緊要하다는 데 留意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兩者는 産油國과 消費國間의 對話를 再開하기 위하여 現在 取하여지고 있는 措置를 歡迎하고 兩國은 이를 위한 協力を 보다 한층 強化하고 調整한다는 決意를 表明하였다.

10.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增大해 나가고 있는 世界の 食糧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適正한 供給과 配分을 確保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留意하고 發展途上國의 食糧生産力を 增強하기 위한 農業開發 援助의 重要性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大統領은 또한 國際적으로 調整된 特別穀物備蓄制度의 早期確立의 必要性에 留意하였다.

總理大臣은 輸出國과 輸入國間의 互惠的인 協力を 통하여 農産物 貿易이 着實하게 擴大할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兩國間의 互惠的인 農産物貿易을 維持 擴充할 것이 兩國의 利益이 된다는 것을 再確認하였다.

11.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發展途上國이 自國의 經濟發展을 革新 促進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自國民의 人間으로서의 願望을 充滿토록 하기 위하여 遂行하고 있는 努力을 도울 必要性에 留意하고 開發援助 一次產品貿易을 包含한 貿易의 分野에 있어서 美日兩國間 및 發展途上國間의 協力을 促進하는데 대한 重要性에 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2.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医学, 科学 및 技術의 分野에서의 兩國間의 現行 協力計劃이 과거 10年間에 이루어진 業績 및 美日科学技術協力委員會가 現在 進行하고 있는 作業을 높이 評價하였다.

兩者는 8月5日에 外務大臣과 國務長官에 의하여 兩國間의 環境保護協力을 위한 協定이 署名되었음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였다.

兩者는 또한 文化·教育面の 交流를 통한 相互理解의 增進이 美·日兩國民間의 友好關係의 強化에 있어서 基本的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음을 認識하였다.

이에 關聯하여 總理大臣은 日本이 國際交流基金을 통한 것을 비롯하여 日本研究의 促進등 지금까지 행해 온 事業에 附加하여 今後에도 前記의 交流를 擴大해 나가겠다는 意向을 表明하였다.

大統領은 總理大臣의 意向表明을 歡迎함과 동시에 日本과의 文化·教育面の 交流의 一層의 促進을 위해 보다 많은 資金을 돌리도록 계속 努力하겠다는 意向을 表明하였다.

13. 總理大臣은 美國民이 來年 獨立 200週年 紀念祭를 祝賀하는데 대하여 日本國民을 代表하여 마음으로부터의 祝意를 傳達하였다.

大統領은 이와 같은 祝意에 대하여 總理大臣에게 感謝하고 美國民의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日本 側發表文)

자. 「닉슨」. 周 共同声明

1972年2月28日「上海」

「닉슨」美国大統領은 中華人民共和國首相 周恩来的 招請을 받고 1972年2月21일부터 2月28일까지 中華人民共和國(以下 中共으로 略称)을 訪問하였다.

「닉슨」大統領은 大統領夫人, 「윌리엄. 로저스」國務長官, 大統領補佐官 「헨리. 키신저」博士 및 그밖의 美國官吏들을 帶同하였다.

「닉슨」大統領은 2月21일에 中國共產黨主席 毛沢東과 만났다.

두 指導者는 中共. 美國關係와 世界問題에 관해 眞摯하고 率直한 意見交換을 하였다.

이 訪問中, 「닉슨」大統領과 中共首相 周恩來는 美國과 中共間의 關係正常化와 그밖의 兩國關心事에 대해 広範하게 眞摯하고도 率直하게 論議하였다.

이以外에도 「윌리엄. 로저스」國務長官과 中共外相 嬉鵬飛도 同一한 情神下에 會談을 가졌다.

「닉슨」大統領과 그 一行은 北京을 訪問하고 文化的 要地와 農工業施設을 視察하였으며 또한 杭州와 上海를 訪問하여 中共 指導者들과 會談을 繼續하면서 關心있는 곳을 視察하였다.

美國과 中共指導者들은 多年間의 斷絶後에 만난 이 機會에 各種問題에 관한 그들의 見解를 서로 率直하게 開陳하는 것이 有益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重要한 變化와 激動이 일어나고 있는 國際情勢를 檢討하고 各者의 立場과 態度를 綿密하게 說明하였다.

美國은 다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아시아」의 平和와 世界의 平和는 緊張을 即刻적으로 緩和하고 紛爭의 根本原因을 除去하기 위한 兩國의 努力을 必要로 한다.

美國은 公正하고도 安全한 平和를 위해 努力한다.

公正하다 함은 그것이 自由와 進歩를 원하는 國民들과 國家들의 念願을 充足시키기 때문이며, 安全하다 함은 그것이 外部侵略의 危險을 除去함이기 때문이다.

美國은 世界 모든 國民들이 外部의 壓力이나 干涉을 받지 않고 個人的인 自由와 社会的 進歩를 누리는 것을 支持한다.

美國은 偶發事故 誤解로 인한 對決危險성을 줄일 수 있도록 理念이 다른 나라들의 意思疎通을 改善하는 것이 緊張緩和努力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國家들은 相互尊重으로 서로 대하고, 平和적으로 競爭할 用意를 갖고 実績을 最終判斷으로 삼아야 한다.

어느 나라도 絶對로 誤謬를 범하지 않는다고 主張하지 말 것이며 各國은 共同의 善을 위해 自身の 態度를 檢討할 準備가 되어 있어야 한다.

美國은 印支人民들이 外部干涉없이 그들의 運命을 決定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야 하며, 美國의 變함없는 첫째 目標은 協商을 통한 解決이며, 1972年 1月 27日 美國과 越南共和國이 提示한 8個項提案이

그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하나의 基礎가 되며, 또 協商을 통한 解決이 없을 경우 美國은 印支各國의 自決目的에 따라 그 地域으로부터 全美軍의 窮極的 撤收를 構想한다고 強調하였다.

美國은 大韓民國과의 緊密한 紐帶와 大韓民國에 대한 支持를 維持할 것이다.

美國은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意思疎通을 增進시키려는 努力을 支持할 것이다.

美國은 美, 日間の 友好的 關係를 가장 높이 評價하며, 또 現存하는 緊密한 紐帶를 繼續 發展시킬 것이다.

美國은 1971年 12月 21日 「유엔」 安保理事會 決議에 따라 印度와 「파키스탄」間的 休戰繼續과 모든 軍隊가 自國 領土內로 그리고 「잠무」 및 「캐시미르」의 休戰線안으로 撤收하는데 贊成한다.

美國은 南 「아시아」의 國民들이 平和롭게, 軍事的 威脅을 받지 않고, 또 그 地域이 強大國들의 角逐場이 되는일 없이 그들 自身の 未來를 形成할 權利를 支持한다.

中共은 다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壓迫이 있는 곳에는 抵抗이 있다.

國家들은 獨立을 원하며, 國民들은 自由를 원하며 人民들은 革命을 원한다. 이것은 拒逆할 수 없는 歷史的 趨勢다.

모든 國家들은 크든, 작든 平等해야 하며, 大國들은 小國들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中共은 결코 超強大國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 모든 種類의 主

導權과 힘의 政治에 反對한다.

中共側은 모든 被壓迫人民과 國民들의 自由와 解放을 위한 鬪爭을 確固히 支持하며 또 모든 國家들의 人民은 그들이 원하는 社會體制를 選擇할 權利와 그들 國家의 獨立, 主權, 領土保全을 지키고 外國의 侵略, 干涉, 支配 및 顛覆活動을 反對할 權利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모든 外國軍은 自國으로 撤收해야 한다.

中共側은 越南, 「라오스」 및 「크메르」人民들의 目標達成을 위한 努力을 確固히 支持하며, 또 越南臨時革命政府의 7個項提案과 이 提案中 關鍵이 되는 2個問題에 대한 今年 2月의 補充說明 및 印支 人民 頂上會談 共同宣言을 確固히 支持한다고 表明하였다.

中共은 北傀가 1971年 4月 12日에 提示한 韓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8個項方案과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의 解體를 要求하는 立場을 確固히 支持한다.

中共은 日本 軍國主義의 復活 및 對外膨脹을 反對하며, 獨立되고 民主적이고 平和롭고 中立的인 日本을 建設하려는 日本國民의 所望을 단호히 支持한다.

中共은 印支와 「파키스탄」이 印「파」問題에 관한 「유엔」決議案에 따라 그들의 모든 軍隊를 自國의 領土안으로, 「잠무」와 「캐시미르」休戰線 안으로 即刻撤收해야 한다고 強力히 主張하며, 또 「파키스탄」政府와 國民의 獨立과 主權을 保全하기 위한 鬪爭과 「잠무」 및 「캐시미르」人民의 自決權을 위한 鬪爭을 確固히

支持한다.

中共과 美國間에는 社会體制 및 外交政策에 있어서 本質적인 差異點이 있다.

그러나 兩國은 國家들이 모든 國家들의 主權 및 領土保全의 尊重, 다른 나라에 대한 不侵, 다른나라 內政 不干涉, 平等, 互惠 및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社会體制에 關係없이 그들간의 關係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合意하였다.

國際紛爭은 이 土台위에서 힘의 使用이나 威脅에 依存하는일 없이 解決되어야 한다.

美國과 中共은 이 原則들을 그들의 相互關係에 適用할 準備가 되어 있다.

兩國은 이러한 國際關係의 原則을 念頭に 두고 다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 中共과 美國간의 關係正常화를 向한 進展은 모든 國家들의 利益이 된다.

- 兩國은 國際적인 武力紛爭의 危險을 줄이기를 원한다.

- 兩國의 어느쪽도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 主導權을 追求해서는 안되며 또 兩國은 각각 그러한 主導權을 確立하려는 다른 어떤 國家 또는 國家集團의 努力에도 反對한다.

- 兩國의 어느쪽도 第三者를 代身하여 協商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들에 관하여 相對國과 協定 또는 諒解를 맺을 用意가 없다.

兩側은 어느 主要國家든지 다른 主要國家와 共謀하여 기타 國家

들에게 對抗하거나 혹은 主要國家들이 世界를 勢力圈들로 分割하는 것은 世界人民들의 利益에 違背된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兩側은 中國과 美國사이 에 오랫동안 繼續되어 온 重大한 紛爭을 總括했다.

中共側은 다음과 같이 그의 立場을 再確認했다.

台灣問題는 中共과 美國間의 關係正常化를 妨害하는 核心的인 問題이다.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이다.

台灣은 오래 전에 母國에 歸屬된 中國의 한 省이다.

台灣의 解放은 中國의 國內問題이며 다른 어떤 나라도 干涉할 權利가 없다.

모든 美軍과 軍事施設은 台灣으로부터 撤收되어야 한다.

中國政府는 「하나의 中國, 하나의 台灣」 「하나의 中國, 두개의 政府」, 「2個의 中國」 「獨立된 台灣」을 만들어내려는 어떠한 行動이나 「台灣의 地位는 앞으로 決定되어야 할 問題」라는 主張에 단호히 反對한다.

美國側은 다음과 같이 闡明했다.

美國은 台灣海峽의 어느쪽에 있든간에 모든 中國人들이 中國은 하나뿐이며 台灣을 中國의 一部라고 主張하고 있음을 認定한다.

美國政府는 그러한 立場에 異議가 없다.

美國은 中國人들 自身에 의한 台灣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대한 美國의 關心을 再確認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美國은 모든 美軍과 軍事施設을 台灣에서 撤收 시킨다는 窮極的인 目標를 確認한다.

한편, 美國은 이 地域의 緊張이 減少됨에 따라 台灣에 있는 그 軍事力과 軍事施設을 漸進的으로 減縮시킨다.

兩側은 두 國民사이의 理解를 增進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合意를 보았다. 이 目的을 위해 그들은 科学, 技術, 文化, 體育, 言論等 特定分野에 대해 論議했는데 이들 分野에서 國民 對 國民의 接觸과 交流는 相互間에 有益할 것이다. 兩側은 앞으로의 이러한 接觸과 交流의 進展을 促進시키기로 約束하였다. 兩側은 相互貿易이 相互間의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分野라고 보며 平等과 互惠에 立脚한 經濟關係가 兩國 國民들에게 利益이 된다는 데에 合意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漸進的인 交易의 發展을 促進시킨다는 데에 合意를 보았다.

兩側은 兩國家間의 關係正常化를 促進하고 共同關心事에 관하여 意見交換을 繼續하기 위한 具體的인 協議를 하기 위해, 美國 高位層代表를 隨時로 北京에 派遣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經路를 통해서 끊임없는 接觸을 갖기로 合意를 보았다.

兩側은 이번 訪問期間에 거둔 收穫이 兩國間의 關係를 위해서 새로운 展望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兩側은 두 나라 사이의 關係正常化가 中共과 美國 國民의 利益이 될뿐만 아니라, 또한 「아시아」와 世界의 緊張緩和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닉슨」大統領內外와 美國人一行은 中華人民共和國 政府와 國民이 보여준 정중한 歡待에 謝意를 表하였다.

차. 田中(다나카). 周 共同声明

1972年9月29日 北京

「다나카. 가쿠에이」 日本首相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首相 周恩
來의 초청으로 1972年9月29일부터 30일까지 中華人民共和國를 방
문했다.

이 방문에는 「오히라. 마사요시」日本首相, 「니카이도 스스무」官房
長官등 政府관리들이 수행했다.

周恩来 首相과 姬鵬飛 外相은 「다나카」首相 및 「오히라」外相과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日. 中關係正常화를 초점으로 兩國간
제반문제와 기타 兩側의 共同關心事에 관해 진지하고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두나라 정부의 共同声明을 발표하는데 合意
했다.

中共과 日本은 一衣帶水로 떨어진 隣國이며 兩國은 傳統的이고 友
好的인 오랜 歷史를 지녀왔다.

兩國人民들은 지금까지 兩國사이에 존재해 온 非正常的인 事態에
종지부를 찍기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다.

中共과 日本간의 戰爭狀態 終結과 關係正常화와 같은 兩國 國民의
희망은 兩國간의 關係史에 새로운 章을 열었다.

日本측은 戰爭을 통해 과거 中國人民들에게 끼친 큰 損失에 대
해 깊이 책임을 느끼고 깊이 自責했다.

日本측은 日本과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를 실현시키기 위해 中華人民共和國政府가 제시한 復交三原則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는 입장을 再確認한다.

中華人民共和國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中華人民共和國과 日本은 양국의 社會體制가 다르기는 하지만 平和友好關係를 수립해야 하고 또한 수립할 수 있다.

양국간의 關係正常화와 善隣友好關係의 발전은 兩國民의 利益이며 또한 「아시아」의 緊張緩和와 世界平和에 기여할 것이다.

1. 中華人民共和國과 日本간에 그동안 존재해 온 非正常的인 事態는 이 共同 聲明의 발표일로 終結됨을 천명한다.

2. 日本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政府를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인정한다.

3.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台灣이 中華人民共和國領土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日本政府는 中國政府의 이 같은 立場을 충분히 理解하고 존중하 「포츠담」宣言 제 8항에 따른 中國의 立場을 지지한다.

4. 中華人民共和國政府와 日本政府는 1972年 9月 29日부로 外交關係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兩國政府는 國際法과 慣例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수도에 大使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大使를 교환하기로 결정한다.

5.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中國과 日本兩國人民 사이의 友好에 입각하여 日本에 대한 中國의 戰爭賠償 要求를 포기함을 선언한다.

6. 中華人民共和國政府와 日本國政府는 主權, 領土的 統合, 相互不

可侵, 相互內政不干涉, 平等相互利益과 平和的 共存을 相互 존중하는 原則들에 입각하여 두나라간에 지속적인 平和友好關係를 수립할 것에 合意했다.

以上の 諸原則과 「유엔」憲章原則에 따라 두나라 政府는 相互關係에 있어 모든 紛爭을 힘의 行使나 위협에 호소하지 않고 平和的인 手段에 의해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7. 中國과 日本간의 關係正常化는 第三國의 利害에 反하는 것이 아니다.

兩國중 어느나라든 「아시아」太平洋지역에서 主導權을 잡으려 해서 는 안되며 또 다른 어떤 나라나 國家集團이 主導權을 장악하려는 노력에도 반대한다.

8. 中國政府와 日本政府는 양국간의 平和友好關係를 公高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平和友好條約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交渉을 벌이는데 합의한다.

9. 中華人民共和國政府와 日本政府는 兩國간의 關係를 보다 더 발전시키는 상호교류를 促進하기 위해 非政府間협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通商, 海運, 航空, 漁撈등에 관한 協定締結을 목표로 協商을 開始할 것을 합의했다.

周 恩 来

田中角榮(다나카. 가쿠에이)

카. 日蘇 共同声明

1972年1月27日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國聯邦 外務相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日本國政府의 招待로 1972年1月23日부터 同月 28日까지 日本國을 公式訪問하였다.

「그로미코」外相은 東京, 名古屋(나고야) 및 鳥羽(도바)를 訪問하였다.

「그로미코」外相은 日本國에 滯在中 夫人과 함께 天皇陛下 및 皇后陛下를 謁見하였다.

「그로미코」外相은 또한 佐藤(사토) 總理大臣과 會談하였다.

「그로미코」外相은 田中(다나카) 通産相, 赤城(아카기) 農林相 및 大石(오이시) 環境廳長官과 會見하였다.

「그로미코」外相은 第2次 日.蘇定期協議로서 福田(후쿠다) 外相과 數次에 걸쳐 會談하였다.

이 會談에는 日本側으로부터 新関(니이세끼) 駐蘇大使, 法眼(호겐) 外務審議官, 有田(아리타) 歐亜局長外 其他가 參加하고 蘇聯側에서는 「토로야노프스키」駐日大使, 「카뽏싸」外務省 第1極東部長, 「슈페치고」外務省 第2極東部長外 其他가 參加하였다.

率直하고 友好的 雰圍氣下에서 行해진 이들 會談에 있어서 日.蘇兩國間의 諸問題 및 兩國이 關心을 갖는 若干의 重要國際問題에 關한 討議가 行해졌다.

雙方은 近年 兩國間에 있어서 사람의 往來와 通商, 經濟, 科學, 文化 其他의 分野에 있어서의 交流가 한층 進展하고 더우기 最近에는 諸國際問題에 關한 協議도 緊密化되고 있음을 滿足의 뜻을 가지고 指摘하고 互惠平等과 內政不干涉의 原則에 基礎하여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關係를 今後 더욱더 發展해 나갈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一致된 見解를 表明하였다.

雙方은 이와같은 日·蘇兩國間的 友好協力關係의 增進이 「아시아」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의 強化에 貢獻하는 바가 크다는 確信을 表明하였다.

雙方은 既存의 招待에 基礎한 日·蘇兩國首腦의 相互訪問을 實現하도록 努力하기로 하였다.

雙方은 日·蘇關係를 더욱 恒久的으로 安定된 基礎위에서 發展시키기 위하여 日·蘇平和條約을 締結하는 意義를 認定하고 平和條約締結에 關한 交渉을 今年中 雙方에 있어서 適切한 時期에 行할 것에 合意하였다.

雙方은 2國間的 貿易經濟關係의 發展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였다.

또한 雙方은 日·蘇經濟合同委員會의 活動을 높이 評價함과 同時에 上記 委員會를 通하여 몇가지의 經濟開發「프로젝트」가 合意되고 實施되고 있다는 것에 滿足의 뜻을 表하고 長期的 展望에 立脚하여 兩國間的 經濟協力을 推進하기 위해서 한층 努力할 것에 合意하였다.

日·蘇兩國間的 文化交流를 한층 促進할 것을 希望하여 兩國의 外務相은 1月27日 日·蘇兩國政府間的 文化交流에 關한 書翰을 交換

하였다.

그위에 雙方은 科學·技術의 分野에 있어서 兩國의 交流擴大가 有益하다고 認定하여 兩國間의 科學, 技術協力에 關한 條約締結會談을 할 用意가 있음을 表明하였다.

雙方은 漁業의 分野에 있어서 兩國間의 끊임없는 協력이 有益하다는 것을 認定하여 앞으로 開始될 日·蘇間의 漁業關係交渉이 成功裡에 行해진다는 것은 兩國의 利益에 合致된다고 하는 見解를 表明하였다.

雙方은 平和強化의 立場에 立脚하여 廣範圍하게 國際問題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였다.

雙方은 如前히 不幸한 武力紛爭이 繼續되고 있는 印支情勢에 憂慮를 表明하고 同地域에 있어서의 恒久的 平和의 確立時에는 自己의 將來를 決定하는 印支 諸國民의 權利를 基礎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見解를 表明하였다.

雙方은 近東에 있어서의 情勢에 對하여 憂慮의 感을 表明함과 同時에 1967年 11月 22日의 「유엔」安全保障理事會決議를 基礎로, 上記 決議에 立脚한 「야링」特使의 活動을 通하여 同地域에 있어서의 恒久的 平和의 確立에 努力할 뜻을 말하였다.

雙方은 「유엔」의 活動을 重視하여 그 機能이 強化되도록 協力할 것에 同意하였다.

雙方은 核軍縮을 包含하는 軍縮問題에 對한 自己 政府의 立場을 說明하고 效果的인 國際管理下에 核武器, 通常武器를 包含한 全面

完全軍縮을 實現할 것의 重要性을 認定하였다.

兩國外相은 兩國間의 諸問題 및 兩國이 關心을 가지는 國際問題에 關한 定期的 意見交換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認定하여 今後 繼續해서 兩國外相間의 定期的 協議를 相互 적어도 年1回 行할 것에 合意하였다.

· 타. 日. 蘇 共同声明

1975年 1月 18日 「모스크바」

「미야자와 기이찌」日本國 外務大臣은 蘇聯邦政府의 招待에 의하여 1975年 1月 15日부터 17日까지 「소비에트」聯邦을 公式訪問하였다.

「미야자와 기이찌」外務大臣은 「N.V. 포드고르니」蘇聯邦 共產黨 中央委員會 政治局員 겸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議 議長과 會見하였다.

「미야자와 기이찌」外務大臣과 「A.A.그로미코」蘇聯邦 共產黨 中央委員會 政治局員 겸 外務大臣間에 있어서 1973年 10月에 「모스크바」에서 達成된 合意에 立脚하여 日. 蘇平和條約의 締結에 關한 交渉이 계속되고 또한 日. 蘇間의 諸問題 및 雙方이 關心을 갖는 약간의 國際問題에 關하여서도 有益한 意見의 交換이 行하여졌다.

雙方은 日. 蘇關係가 近年에 順調로이 進展되어 왔다는 것에 滿足の 뜻을 表明하고 특히 1973年 10月에 「다나카. 가쿠에이」日本國 總理大臣의 蘇聯邦 訪問이래로 兩國間의 交流가 各種 分野에

있어서 더한층 進展되었음을 指摘하였다.

雙方은 또한 日本國과 蘇聯邦間的 貿易, 經濟協力の 發展에 대하여 滿足의 뜻을 表明하였다.

平和條約 締結交渉에 있어서 雙方은 1973年 10月 10日附 日·蘇 共同声明의 當該部分에 表明되고 있는 合意에 立脚하는 諸問題를 討議하였다.

雙方은 兩國關係를 恒久的인 安定된 基礎위에서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平和條約을 早期에 締結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雙方은 이 問題에 대하여 계속 交渉을 할 것에 合意하였다.

雙方은 兩國의 最高首腦者間에 끊임없는 對話를 維持하는 것이 兩國關係의 더한층의 發展에 크게 貢獻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미야자와 기이찌」日本國 外務大臣은 日本國政府의 이름으로 日本國을 公式訪問하도록 「A.A. 그로미코」蘇聯邦 外務大臣에 대한 招待를 確認하였다.

「A.A. 그로미코」蘇聯邦外務大臣은 招待에 대하여 感謝의 뜻을 表明하였다. 1975年에 訪問을 實現한다는데 대한 合意가 이루어졌다.

訪問의 正確한 日程은 合意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한다.

雙方은 「미야자와 기이찌」外務大臣의 蘇聯邦訪問時에 行하여진 會談 및 交渉이 有益한 것이며, 友好的이고 率直한 雰囲気下에서 行하여졌다는 것을 滿足하게 이를 指摘하였다.

雙方은 次後의 會談 및 交渉이 日本國과 「소비에트」聯邦間的 善隣關係를 더한층 發展을 促進시킬 것이라는 確信을 表明하였다.

4. 美国의 对亞政策 관련 声明

가. 「닉슨 - 독트린」

— 「닉슨」大統領의 对議會 報告書 中에서 拔萃 —

1970年 2月 18日

協同關係를 통한 平和

지난 11月 3日의 演說에서 내가 말했듯이 우리美国 사람들은 성미가 급한 사람들로서 자기일은 자기가 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을 가르쳐주느니보다 차라리 自己가 그 일을 해버리고 싶어한다. 이러한 美国 사람들의 特性은 우리의 外交政策에도 그대로 反映되었다.

그리하여 戰後時代에 있어서의 美国外交政策은 1947年 「트루만·독트린」과 「마샬」計劃이 宣布되고 侵略의 威脅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 經濟的, 軍事的 援助를 주기로 提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우리의 外交政策은 美国의 힘과 美国이 主動이 된 全世界에 걸친 同盟組織의 뒷받침을 통해서 民主主義와 繁榮이 이룩된다면 安定과 平和는 保存할 수 있을 것이라는 概念에 立脚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戰後時代의 過渡的 段階의 時期에 있어서 그러한 美国外交政策의 뒷받침을 받은 政治的 및 經濟的 再建을 위한 偉대한 努力은 특히 「유럽」에서 美国의 領導力과 想像力의 勝利로써 그 實을 보았다. 2次大戰이 끝난 후 20년동안 우리의 外交政策은 이와

같은 理想에 의해서 引導되었고, 그러한 努力에서 얻은 成功에서 鼓舞을 얻었다. 美國의 그러한 外交政策은, 美國은 가장 富裕하고 가장 安定된 나라로서, 그의 引導나 資源 없이는 安全과 進歩는 期待할 수 없다는 事實을 前提하는 것이다. 美國外交政策에 있어서의 이러한 基本的인 觀念은 1960年代에도 그대로 踏襲되었다. 모든 計劃은 美國이 提案해서 스스로 그들을 執行했다. 戰略도 우리 스스로 짜가지고 우리의 盟邦들에게 提案했었다. 또한 어떠한 危機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를 發見하고 그에 対処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마셜」計劃 以來 世界는 劇的인 變化를 겪었다. 우리는 오늘날 過去보다 한층 더 強力해진 盟邦들을 相對해야 하며 独立的이고 發展하는 新生國들을 다루어야 하며, 여전히 敵對的이지만 分裂된 共產主義社會를 相對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다. 過去에는 우리自身이 介入하지 않으면 解決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局地的인 紛爭을,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獨自的으로 対処할 能力과 責任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平和에 대한 우리의 貢獻과 成功 与否는 다른 나라들의 問題에 우리가 얼마나 持久的인 힘을 지녔느냐에 依存하게 되었다. 실로 이러한 새로운 姿勢야말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의 뜻을 다하도록 鼓舞하는 同時에 美國國民의 眞情한 支持를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괌」島에서 내가 發表한 「닉슨·독트린」의 核心이다. 「닉슨·독트린」의 中心的인 命題는 美國은 계속해서 盟邦들과 反邦들의 防衛와 發展에 參與할 것이지만 결코 스스로 모든 計劃

을 꾸미거거나 行動方案을 짜거나 모든 決定을 스스로 執行하거나, 世界의 自由主義國家들의 防衛를 專擔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도우려 나섬으로써 實際的인 變化가 일어나고 우리 利益에 도움이 되는 境遇에만 도움을 提供할 것이다. 美國은 平和롭게 살자면 결코 孤立속에서는 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餘他世界에서 後退할 意思는 없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問題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의 責任을 가장 效果的으로 保護함으로써 平和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海外友邦들이 그들自身の 防衛와 發展에 더욱 責任있는 參與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追求하는 目標을 위한 한층 더 效果的인 共同의 努力이 될 것이다. 世界平和라는 大義는 우리에게 우리의 公約을 계속 지키도록 要求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公約을 繼續시켜 나갈 것이다. 「유엔」에서 내가 말했듯이, “우리의 友邦을 拋棄하거나 우리의 盟邦들을 저버리는 것이 平和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美國이 만약 그의 公約을 長期的으로 維持하자면 그가 擔當하는 口實은 한층 더 均衡을 이루고 한층 더 現實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年頭教書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責任을 다하라고 要求하는 것은 責任으로부터의 後退가 아니고 責任의 分擔을 뜻하는 것”이라고 指摘한 바 있다.

그것은 美國이 이 세계에서 맡고 있는 絶對不可欠한 責任에서

後退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맡은 責任을 完遂하는 唯一한 길이다. 더욱이 根本的인 問題를 公約이라는 觀点에서 그와 같이 散漫하게 提起한다는 것은 誤解를 일으키기 쉽다. 우리의 目標은 무엇보다도 먼저 健全한 對外政策을 가지고 長期的으로 우리의 利益을 伸張해 나가자는 데 있다.

따라서 對外政策이 우리의 利益에 대한 現實的인 評價에 입각하면 입각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의 世界的인 구실을 더욱 効果的으로 擔當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對外的으로 介入하고 있기 때문에 公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公約의 基準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利益이 돼야지 그 反對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公約을 함에 있어서 우리 自身과 다른 나라들의 國家的 利益을 仔細히 評價하고 그러한 國家的 利益에 具體的으로 어떠한 威脅이 있는가를 評價하고, 堪當할 수 있는 危險과 代價의 限度内에서 그러한 威脅에 對處할 수 있는 우리의 能力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評價를 가하게 될 것이다. 過去 1年동안 우리는 全世界 自由國家들과의 關係를 以上과 같은 概念 아래에서 다루어 왔다.

첫째로, 「유럽」에 있어서 우리의 政策은 持續性있는 平和의 3大原則, 즉 協同體制의 構築, 우리의 共同的 利益이 威脅을 받았을 때 그를 지키기 위한 必要한 힘의 繼續的인 維持, 그리고 敵對的인 나라들과의 協商用意라는 세가지 基本原則을 網羅하고 있다.

우리 西半球에서 우리는 모든 当事者들의 意見을 참작하고 그 중 어느 하나도 支配的인 發言權을 갖지 않는 새로운 發展을 위한 行動計劃을 가지고, 우리의 姉妹共和國들과의 特殊한 關係를 強化해 나갈 것이다.

- 「닉슨·독트린」이 闡明한 「아시아」에 있어서, 우리의 日本과의 紐帶強化에서 볼 수 있듯이, 協同體制의 概念은 특별한 뜻을 지닌다. 「아시아」國家들이 相互間에 協力하고 地域的 機構를 發展시켜 나감에 따라 우리의 「아시아」國家들과의 協力관계는 더욱 增進될 것이다.

越南에서 우리는 모든 紛爭 当事者들과 美國民 모두가 支持할 수 있는 正當한 解決案을 模索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越南國民이 스스로 防衛를 擔當할 수 있도록 그들과 緊密한 協力에 努力하고 있다. 越南이 앞으로 더욱 強力해짐에 따라 相對方도 公正한 平和를 위해 協商하는 것이 그네들의 利益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나는 希望한다.

中東에서 「아랍」·「이스라엘」紛爭 当事者들이 모든 계류중인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들을 協商을 통해 解決할 수 있는 可能한 테두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繼續努力해 나갈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함께 이 地域內에서의 解決에는 모든 当事者들의 犠牲과 自制가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우리 美國市民들과 歴史的인 紐帶를 지닌 「아프리카」는 新生國家들과의 우리의 協同體制에 있어서 항상 뜻깊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人民은, 人種主義에 終止符를 찍고 새로운 나라들을 建設하고 外勢의 干涉을 排除하고 協同的인 經濟發展을 이룩한다는 그들의 正當한 熱望을 達成함에 있어서 主役으로서의 口實을 擔當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偉大한 潛在能力을 開發함에 있어서 우리로서의 努力도 다 할 것이다.

날로 相互依存度가 깊어가고 있는 世界經濟에 비추어 美國은 그의 外交政策에서 國家間의 한층 더 자유로운 資本 및 物資의 流通을 強調할 것이다. 우리는 國際貿易의 繼統的인 膨脹을 지탱하는 金融構造의 安定을 保障하는데 도움이 될 一種의 國際通貨로서 特別引出權을 創設함에 있어서의 協調的 努力에 參與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經濟發展을 위한 거창한 努力에는 모든 나라의 協力이 動員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經濟的 援助計劃의 具體的인 目標들을 조심스럽게 檢討하는 同時에 그들 目標에 가장 效果的으로 到達할 수 있는 길을 研究中에 있다.

人口, 通信 및 知識의 膨脹과 함께 科學 및 技術 分野에 있어서의 前例없는 發達은 새로운 形態의 國際的 協調를 要求하고 있다. 國際的 協同體制의 象徴으로서의 「유엔」은 그 創設 25周年을 紀念함에 있어서 우리의 繼統的인 支持를 받게 될 것이다.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

“우리가「아시아」를 위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또 무엇이든 우리가 提供할 수 있는 協調를 도움으로 스스로의 運命을 追求할 수 있는 自由國家들의 共同體—各其 저마다의 傳統을 維持하되 相互協調를 통해서 發展하는 獨立된 「아시아」國家들의 共同體이다. 그러한 妥協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公約과 基本的인 利害에 따라 責任있는 役割을 遂行할 用意를 갖는다.” (1969年7月28日泰國「방콕」에서의 大統領 聲明에서)

단 1世紀동안에 세번에 걸쳐 美國人들은 太平洋을 건너 「아시아」에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아 왔다. 戰後에 있어 이처럼 우리의 精力을 消耗케 한 地域은 世界에 달리 없다. 世界2次大戰 이후 어느 大陸도 이처럼 急速하게 그리고 複雜多岐하게 變化한 데는 없다. 平和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이처럼 큰 값을 갚게 하거나 큰 犧牲을 치르게 한 곳도 없었다.

1970年代의 美國의 「아시아」政策은 그러한 犧牲에서 얻은 教訓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美國이 「아시아」問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局外者의 理解나 影響力이 미치지 않는 變轉하는 狀況 속에서 벌어지는 危機와 戰爭이 되풀이 되는 순환에 우리가 運命처럼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아시아」에 대한 現行政府政策의 背後에 있는 構想을 밝혀 주는 것이 된다.

첫째로 우리는 繼續「아시아」에 関与할 것이다. 우리는 太平洋 國家이다. 「아시아」에 平和가 없는 한 우리의 平和도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 왔다.

둘째로 紛糾와 混亂을 알리는 「헤드라인」들의 뒤에는 이 地域만큼 것처럼 多樣스럽게 갈린 活力있고 才質있는 여러 國民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때문에 協同의 사업을 위해 이처럼 큰 潜在性을 지닌 데가 없다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第2次大戰 이후의 建設的인 民族主義와 經濟的 發展은 「아시아」의 新生國들을 内部的으로 強化시켜 주었다. 성장하는 「아시아」 主體意識과 「아시아」의 協調를 志向한 具體的인 行動은 이 地域에서 國際關係의 새롭고 健全한 方式을 造成케 하고 있다. 우리의 「아시아」友邦들, 특히 日本은 이 地域의 平和的인 發展을 위한 보다 큰 責任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苦難의 過去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將來는 約束에 충족만해 있다. 그 約束은 일부 美國의 參與로써 길러져 있다.

셋째로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利害關係와 그로부터 緣由된 公約을 維持하게 될 것이지만 한편 그 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介入의 性格을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있다. 美國이 한때 이처럼 큰 代價를 치르고

깊어져야 했던 責任은 이제 分擔할 수 있게 되었다. 美國은 「아시아」의 諸國民이 變化의 힘을 平和的인 發展으로 利用하도록 돕고 또 그러한 過程을 轉移시켜 「아시아」를 다시 爭鬪속으로 처넣으려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를 防衛할 수 있게 支援해 주는 데 効果的일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의 우리 友邦들은 그 大陸에서 우리가 맡는 役割에 관한 우리의 構想을 理解하고 歡迎해 와다. 副統領과 國務長官 그리고 本人이 「아시아」訪問中에 會談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새 「아시아」의 軍事的인 挑戰과 經濟的인 機會들에 대처하기 위해 協同할 수 있는 가장 効果的인 方法이라는 데 同意했다. 우리의 새로운 協調關係는 두개의 挑戰받은 주로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즉 軍事的 威脅과 開發의 大課業이다.

防 衛

우리의 重要的 利益과 우리 友邦들은 그것의 變化에 便乖하여 美國에 대한 敵對意識을 그들 政策의 基本的인 原則의 하나로 公言하고 있는 國家들에게서 아직도 威脅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들 國家들이 언제까지나 늘 敵對的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可能하게 되면 關係改善을 위해 努力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盟邦들에 대한 威脅도 過少評價하지 않으며 우리의 現在의 政策을 將來에 관한 試驗되지 않은 假定에도 가벼이 바탕을 두는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여름 「아시아」巡訪여행의 始初에 本人은 「팜」에서 우리들 共同의 利益防衛를 위한 協同政策을 뒷받침하는 原則들을 說明했다. 11月3日의 演說에서 本人은 그 政策의 基本的인 要素들을 略述했다.

美國은 그의 모든 條約上의 公約을 지킬 것이다.

우리와 同盟을 맺은 國家이거나 그의 既存의 우리 安保와 지역 全體의 安保에 絶對 必要한 나라의 自由를 어떤 核武装 國家가 威脅할 境遇에는 우리가 그 防牌를 提供한다.

그밖의 다른 形態의 侵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要求가 있을 때에 適切한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提供한다.

그러나 우리는 直接危脅을 받은 國家가 그의 防衛를 위한 人力을 提供하는 第1次的인 責任을 負擔하기를 期待한다.

이 政策은 우리가 우리 盟邦들이 그들 自身の 힘을 發展시키도록 도울 것을 要求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收支決算을 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돕는데 너무 未洽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公約에 대한 그들의 信賴를 浸蝕시킨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自衛를 擔當하는 데 必要한 意志를 喪失하거나 發展의 展望에 失望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反面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돕는다면 그리고 現地 國軍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美軍이 맡아 하게 된다면 우리는 獨立보다도 依存을 助長시키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의 防衛를 위한 「아시아」國家들의 보다 責任있는

役割을 規定함에 있어 「닉슨·독트린」은 共同資源의 보다 效果的인 使用을 뜻할뿐 아니라 長期間에 걸쳐 持續될 수 있는 美國 政策을 意味한다.

經濟的, 政治的 協同體制

우리가 얻고자 하는 協同體制는 防衛에만 關係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窮極的인 目標은 훨씬 더 넓은 關心의 領域, 即 政治, 軍事와 아울러 經濟的 領域에 걸쳐 골고루 緊密한 協調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우리 友邦들과의 그러한 緊密한 協調에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에 대한 우리들의 相互公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目標은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특별히 緊密한 協調이어야 한다. 여기서도 또한 우리의 가장 效果的인 寄与는 「아시아」의 테두리에서 「아시아」의 「이니시어티브」를 支援해 주는 것일 것이다.

우리의 協同體制는 「아시아」自體의 豊富한 人的, 物的 資源이라는 確固한 基礎 위에 놓일 것이다.

함께 일함으로써 「아시아」의 國民들은 서로간에 広範圍에 걸친 「에너지」와 才能을 提供한다. 그들이 나누는 惠沢과 그 땅과 生産品들은 흔히 紛爭을 촉발시켜 온 充足되지 못한 欲求들을

克服해 줄 수 있다. 이미 大韓民國과 中華民國, 「타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지난 10年間に 그들 國民總生産을 倍加할 수 있었다.

韓國의 年成長率 15「퍼센트」는 世界最高의 것이며 이미 經濟援助의 被援助이 아닌 中華民國은 27個國에 대해서 그 自身の 技術援助 計劃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國家들간에서 協調를 이룩할 수 있는 潛在性은 強하며 그 進展은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多數國 機構들이 農業 및 技術上의 熟練을 나누고 있다.

越南戰이 끝나게 되면 再建이 地域的인 關聯에서 實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콩」江의 水力利用을 위한

地域的인 努力과의 繼統的인 協調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會

員國으로 되어있는 「아시아」開發銀行의 成功的인 「아시아」의

「이니셔티브」와 地域主義의 潛在性을 例証하고 있다.

그것은 그 銀行總裁와 10名中 7名의 理事와 資本의 60「퍼

센트」를 「아시아」에서 提供하겠끔 規定하도록 定하고 있는

「아시아」의 機關이다. 그리하여 「아시아」에 대해 우리가

갖는 希望은 그들 相互間的 利益을 위해 그들 스스로의 條件

에 따라 結束하여 國際社會의 나머지 部分과의 새로운 關係를

創設하고 있는 強力한 國家들로 이룩된 大陸에 대한 希望이다.

世界의 大工業 國家의 하나로서의 日本은 새로운 「아시아」의

開發에 있어 遂行할 獨特하고 必須的인 役割을 갖고 있다.

지난 해에 日本에 대한 우리의 政策은 우리가 모든 「아시아」
國家들과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創造的 協同體制의 構想을 實
証한 것이다.

大統領에 就任하면서 부터 日本은 우리 對日關係의 將來에 관한
核心的인 問題, 即 「오끼나와」의 地位라는 問題에 直面했다.

우리가 우리 基地를 運營하는 條件에 대한 아무런 調整도 없이
「오끼나와」에 대한 美國統治를 繼續하느냐 아니면 長期的인 眼
目으로 日本과의 關係를 強化하느냐의 두 가지 중 우리가 어느
쪽을 더 重要한 것으로 보았는가? 우리는 日本과 우리의 協調
가 다른 「아시아」國家들이 平和 속에 發展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努力이 緊要한 것이기 때문에 後者の 行動方向을 취했다.
우리와 日本의 提携관계가 「아시아」에 있어서의 「닉슨 독트린」
의 成功에 대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때문에 本人은 지난 11月
佐 日本首相이 「워싱턴」을 訪問했을 때 1972년에 「오끼나와」
를 返還하기 위한 協定을 그대로 推進하기로 그와 合意했으며
그에 따라 「오끼나와」를 返還한 뒤에도 우리 基地를 日本에
있는 基地들과 마찬가지로 地位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었다.
그것은 本人이 大統領으로서 취한 가장 重要한 決定 중의 하나
였다. 佐藤首相은 日本의 經濟成長에 步調를 맞추어 「아시아」
에 대한 援助計劃을 擴張하고 改善하겠다는 日本政府의 意向을
밝혔다. 그는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的 必要에 대한 關心이 國際
平和와 安定의 發展을 위해 必須的이라는 데 本人과 同意했다.

그는 貿易과 資本에 대한 制限의 緩和와 撤廢를 促進시킬 意圖
를 피력했다. 그는 또한 日本이 越南戰後 東南亞에서 安定과
再建을 實現시키도록 돕기 위해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를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佐藤首相은 우리가 東部 「아시아」
에 대한 우리의 防衛責任을 完全히 遂行하는 것이 日本의 利益
에 合致된다는 것을 確認했다. 우리는 그로써 1970年代의 美·
日協調를 위한 基礎를 마련했다. 다른 地域에서도 또한 우리는
「아시아」의 將來를 위해 鼓舞的인 事態들을 보아 왔다. 事實
上 東南亞의 半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는
經濟的 安定的 成就를 目的으로 한 數個國의 努力에 參與했으며
그것은 이미 繁榮되고 平和로운 國家를 建設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 美國은 南部「아시아」의 發展을 위한 協調에도 비슷한
長期的인 關心을 두고 있다. 印度와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世界人類의 5分の 1의 人口는 「아시아」의 將來에 影響을 미
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國家建設이 歴史的으로 亞大陸을 分
斷시켜 온 遠心的인 世력을 克服하게 된다면, 그들의 經濟的인
成長이 國民의 慾求를 充足시키겠끔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兩國
간의 더 以上の 값진 敵對關係를 回避할 수 있다면 印度와
「파키스탄」은 그들의 엄청난 精力을 安定된 平和의 構築에 이
바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창한 假定들
이다. 우리는 亞大陸이 그것들을 克服하는 것을 도울 용의가
있다. 그들 나라의 平和에 대한 潛在的인 寄與는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우리로서도 그러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의 다른 地域과 마찬가지로 印度와 「파키스탄」도 지난 10年間に 重要的 變化를 이룩했다. 그들은 수많은 分野에 걸쳐 着實한 經濟的 發展을 成就했으며, 「인더스」開發計劃에서 相互協調를 위한 希望的인 先例를 세웠다. 그러나 역시 같은 期間에 두 나라는 그들 關係에서 繼續되는 緊張에서 오는 負擔을 느껴왔으며 1965년에는 그들의 오랜 혹독한 紛爭이 다시 잠시의 戰爭으로 터져나왔었다. 그들은 東西方과의 國際關係를 再整備했으며 저마다 確固하게 獨立性を 維持했다.

앞으로 10年間に 있어 印度와 「파키스탄」과 그들의 友邦들은 實質적으로 그런記錄 속에 담긴 建設的인 要素들에 依存하여 무엇 보다도 그 地域에서의 더 이상의 消耗的이고 危險스러운 紛爭을 피하도록 함께 努力할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南部「아시아」를 訪問하는 동안 本人은 「아시아」에 대한 우리 經濟援助의 方法과 目的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說明했다. 다음의 말은 「파키스탄」에서 한 말이지만 印度에 대해서나 「아시아」全體에 대해서나 우리의 目標를 說明한 것이 된다. 本人은 「아시아」인이 「아시아」의 將來를 形成해야 한다는 나의 政府의 信念을 傳達하고자 한다. 例컨대 經濟援助의 경우 國家生活의 全體的인 「패턴」에 關係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適用된다. 그것은 各國民의 獨特한 抱負를 支援해 주어야 한다. 그의 目的은 依存이 아니고 自立을 勸奨하려는 것이다.

将来를 위한 問題들

自立을 助成해 주는 것이 「아시아」에 대한 美国介入의 새로운 目的이고 方向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進路의 入口에 있는데 不過하다. 우리가 가고자 원하는 데가 어디인가에 관한 우리의 構想이 아무리 明確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政策이든 앞으로 여러해에 걸쳐 우리가 「아시아」에서 直面할 어렵고 特殊한 問題들에 대해 손쉬운 解答을 줄 수 있다는 幻想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아시아」政策의 成功은 우리 「아시아」友邦들과의 協同體制의 힘에 依存할 뿐만 아니라 中共 및 蘇聯에 대한 우리의 關係에도 달려 있다. 우리는 「아시아」關係에 관한 우리 自身의 処方을 強制할 意思는 없다. 우리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에 관한 우리의 構想을 「닉슨·독트린」에서 說明했다. 우리는 다른 強大國들도 같은 精神으로 行動하고 支配權을 얻고자 하지 않기를 希望한다. 우리와 우리 盟邦들이 「아시아」에 대한 強大國 支配를 防止하고자 하는 데 關心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世界平和가 그 地域의 強大國紛爭 — 우리가 介入되든지 안되든지간에 — 으로 危殆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中·蘇紛爭에 대한 우리 態度的 特徵을 이루는 것이다. 「아시아」의 地域的 協調는 그 始初에 있다. 우리는 그 노력에 대한 「아시아」의 志向을 제쳐 놓음이 없이 그의 勢力을 維持하

도록 도우려고 할 때 微妙한 決定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日本과의 健全한 關係는 太平洋地域에서 平和와 安保와 向上되는 生活水準을 保障하기 위한 우리의 共同努力에 緊要한 것이다. 그러나 1969년에 그 깊이를 더 한 바 있는 協調的인 關係를 延長시키기를 苦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日本에게 그의 國民들의 深刻한 關心事와 一致되지 않은 責任을 도맡도록 要求하지 않을 것이다.

南部「아시아」에서는 印度 및 「파키스탄」과의 우리의 良好한 關係가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具體的인 「딜레마」를 덮어두게 해서는 안된다. 例를 들어 어떻게 우리는 그들의 限定된 資源을 軍備競争에서 浪費하는 데 대한 우리의 深刻한 憂慮를 雙方에게 다 같이 切實히 느끼게 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自衛에 대한 正當한 關心을 認定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問題들은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現行政府에 여러 가지 다른 角度로 맞아 들이게 될 것이다. 1969년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적은 아무도 無視하거나 過少許價되지 않았다는 것을 分明히 하는데 있었다. 앞으로의 諒業은 - 「아시아」인들이나 美國人들이나 - 만약 恒久的인 平和가 「아시아」에 到來할 것이 라면 그들 문제의 解決이 要求하는 想像力과 現實主義와 大膽性을 갖고 그 모든 問題와 맞서는 것이다.

一般目的軍

나는 一般 兵力의 目的을 檢討하면서 먼저 健全한 防衛政策의 基本的인 세 가지 前提를 強調해야만 하겠다는 結論을 내렸다.

첫째 戰略兵力은 어떤 代價를 치르고서라도 모든 全面戰威脅을 沮止해야 하고 一般 兵力은 局地的인 事態와 特殊한 利益에 보다 敏感하게 連関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非共產世界核力の 9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核防衛의 1次的인 責任을 지고 있는 하지만 一般兵力의 計劃을 세우기 위해서는 戰略兵力에 대한 막중한 支出과 友邦의 人力이 우리자신을 越等히 능가하고 있다는 事實을 考慮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는 美軍이 全世界의 盟邦 또는 潛在的인 盟邦들의 당연한 모든 威脅에 全的으로 對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破壞, 顛覆活動, 「게릴라」戰, 民族解放戰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叛亂을 다루는 最善의 方法은 經濟開發과 社會改革으로 事前에 叛亂기운을 霧散시켜 버리거나 威脅받는 現地 政府의 警察措置나 準軍事的, 또는 軍事的措置로 事態를 휘어잡는 데 있다는 것이 經驗을 통해 立證되었다. 우리는 經濟援助와 軍事援助로써 現地の 努力을 補強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叛亂이 外部侵略形態로 변모했거나 노골적인 在來式 攻擧形態로 나타날 때에는 美國一般兵力이 直接的인 戰鬪任務를 맡게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기에 앞서 우리의 利益과 公約을 저울질해 볼 것이며 盟邦들의 努力을 計

算에 넣을 것이다. 美国은 絶對的으로 重要한 空中 및 海上通信
網뿐만 아니라 海外 特定地域의 防禦에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 때문이다.

○우리 盟邦體들의 政治的 및 經濟的 重要性.

○大戰으로 拡大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어 世界平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戰鬥行爲를 防止 내지는 封鎖하려는 우리의 熱望.

○威脅받고 있는 地域과 그 地域通信網의 戰略的 價值.

내가 就任한 날부터 軍事的 姿勢의 檢討가 着手되었는데 그
對象에는 一般兵力에 대한 徹底한 再檢討가 包含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차례로 우리의 利害關係에 대한 잠정적인 威脅, 우리
의 援助를 받는 盟邦과 받지 않는 盟邦의 能力 및 各種 戰略과
国内 急先務와의 關係 등이 檢討되었다. 國家安保會議는 一般兵力
에 관한 다섯 가지 相異한 戰略을 檢討하고, 이와함께 支援을
받을 수 있는 国内計劃에 戰略을 하나씩 결부시켜 보았다. 그
리하여 처음으로 國家安保와 国内的 急先務들이 關聯性 있게 檢討
되었다. 여기에서 事實上 두 가지 戰略이 廢棄된 셈인데 그
理由는 우리의 安保에 꼭 必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重要한 国内計劃을 萎縮시키것끔 되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1960年代의 特徵을 이룬 理論의 一大修
正을 意味하는 戰略을 決定했다. 1960年代에 있어서 우리의
傳統的인 姿勢의 바탕은 소위 "2 $\frac{1}{2}$ 戰爭" 原則이었다. 이 原則은
美軍의 規模가 3個月 동안 NATO의 前方을 在來式으로 防衛하고

中共의 全面的인 攻撃으로부터 韓國이나 東南亞를 防衛하며 小規模的인 不意의 事態에 対処할 수 있을 程度로 維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一時에 이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美軍規模는 確保되지 않았다. 우리는 理論과 實際能力의 調和를 이루기 위해 가장 適切히 表現하여 “ $2\frac{1}{2}$ 戰爭” 戰略이라고 칭할 수 있는 原理를 採択했다. 이 새 戰略은 우리가 平和時에 「유럽」, 「아시아」중 어느 한 大陸에서 共產側의 一大攻撃에 対処하고 「아시아」에서 中共以外的 다른 威脅에 対処하여 盟邦들을 支援하여 다른 地域에서 不意의 事態 등을 한꺼번에 處理하기에 充分할 程度의 一般兵力을 維持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戰略은 다음과 같은 점을 考慮해서 採択된 것이다.

우리의 戰略 및 現地核軍의 核力으로 「유럽」의 NATO에 대한 蘇聯의 全面攻撃이나 「아시아」의 同盟國들에 對한 中共의 攻撃을 沮止할 수 있다. 蘇聯과 中共이 우리의 同盟國들에 對해 合同兩面 攻撃을 해올 展望은 희박하다. 그 理由는 첫째로 核戰爭의 危險性과 둘째로 蘇 中共의 協調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떻든 蘇 中共合同攻撃이 있을 때 우리는 美軍의 非核兵力이 주로 이에 對處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유럽」의 NATO와 같은 11個地區에서 在來式 威脅을 막는데 必要한 이상의 兵力을 維持함으로써 豫想外의 威脅에 對한 安全을 確保하

려 한다. 우리 쪽의 弱化가 強化보다도 오히려 挑発을 刺戟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相對方에게 危險한 冒險을 하도록 부채질해 주고 軍事的 冒險이 成功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幻想을 안겨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採択한 戰略의 必要性에 副應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에 海軍 및 空軍과 함께 必要한 程度의 地上軍의 支援戰略空軍을 維持할 것이다. 同時에 우리는 美國에 駐屯하는 豫備軍을 全面 補強하는 한편 適正規模의 現役軍을 補強할 것이다. 이러한 兵力規模는 國防長官의 計劃 및 豫算說明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밝혀질 것이다.

나. 新太平洋 독트린

1975年 12月 7日 「하와이」

本國에 돌아오니 기쁩니다. 本人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알래스카」, 中共, 그리고 우리의 友邦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7日間에 걸쳐서 巡訪했습니다. 이제 美國의 50번째 州인 「하와이」州에 돌아와서 기쁩니다.

오늘 아침 本人은 34年前 日曜日 아침에 죽은 美國人의 祠堂에서 지난날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本人은 그곳을 떠나면서 眞珠灣과 2次大戰에서 생겨난 理想에 献身하겠다는, 힘을 가지고 平和를 追求하는 美國의 兩黨政策에 献身하겠다는, 그리고 모든 「아시아」國民과의 相互依存과 協助의 새로운 未來를 열기 위해

獻身하겠다는 새로운 精神을 갖게 되었습니다.

本人은 모든 國家와 더불어 平和를 追求하고, 또 누구에게도 敵愾心을 갖지 않는 平和에 대한 太平洋 「독트린」에 贊同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眞珠灣의 敎訓을 想起하는 方法은 過去의 힘을 保存하여 未來를 建設하는 것입니다.

太平洋의 新生國 및 既成國과 힘을 합쳐서 가장 넓은 이 大洋의 기슭에 가장 偉大한 文化를 創造합니다.

本人이 이곳 東西文化「센터」를 訪問한 것은 다른 意味가 있습니다. 이「센터」는 「아시아」와 그곳 國民들, 그리고 그 多樣하고 豊富한 文化에 대한 美國의 積極的인 關心의 觸媒입니다. 이곳의 여러분은 「아시아」가 우리를 보다 잘 理解하게 되리라는 우리의 希望을 增進시켜 줍니다.

우리는 昨年에 近 5萬4千名의 「아시아」人을 맞았으며, 反對로 數千名의 美國學生이 「아시아」國家에 갔습니다. 本人은 여러분이 教育分野에서 國際的 提携에 寄與한 것을 讚揚합니다. 여러분의 努力은 理解와 自由, 그리고 平和의 특트인 世界에 대한 美國의 「비전」을 나타냅니다.

太平洋 十字路인 「하와이」에서 우리의 過去와 未來가 합쳐집니다.

本人은 昨年에 日本을 訪問했을 때에, 그리고 最近 日本天皇과 皇后를 美國으로 맞았을 때에 感動을 받았습니다. 本人이 받은 多情한 歡迎, 또 日天皇内外분에게 美國이 배풀어 준 歡迎은

우리 兩國間의 漸增的인 友誼와 提携關係를 證明해 줍니다.

이것은 人間의 가장 좋은 點——恐怖로부터 信賴로, 悲劇的 過去로 부터 希望찬 未來로 發展할 수 있는 人間의 能力에 대한 讚辭입니다.

이것은 人間의 發展에서 이룩할 수 있는 일의 본보기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의 關係改善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努力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太平洋地域國家인 美國은 「아시아」에 絶對的인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緊張緩和와 敵對行爲防止 및 平和維持에서 主導的 役割을 擔當할 責任이 있습니다.

世界安定과 우리의 安保는 우리의 對 「아시아」公約에 달려 있습니다.

34年前인 1941年 오늘 우리는 軍事的으로 아무 準備도 없었으며, 우리의 太平洋地域 通商量은 얼마 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管轄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西歐에만 熱中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本能的으로 孤立主義的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超越했읍니다. 그리하여 이제 世界最強國이 되었읍니다.

우리의 對「아시아」通商은 增加一路에 있습니다. 우리는 率先해서 「필리핀」에 獨立을 賦與하였읍니다. 이제 우리는 太平洋 信託統治領과의 새로운 關係를 案出中에 있습니다.

美国政治權力の 中心은 西쪽으로 移動했습니다. 太平洋地域에 대한 우리의 理解와 關心은 增加되었습니다. 우리는 孤立主義國家의 行動의 自由를 世界大國의 責任과 바꾸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3個國 巡訪으로부터 돌아와서 本人은 世界의 이 地域에 대한 利害關係를 더욱 絶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世界強大國의 安保關心이 「아시아」에서 交叉됩니다. 美国, 蘇聯, 中共, 日本은 太平洋國家입니다.

西歐도 「아시아」와 歴史的 經濟的 紐帶를 가지고 있습니다. 太平洋의 平衡은 美国을 비롯한 다른 太平洋國家에 대해서 必須的입니다.

新太平洋「독트린」의 첫째 前提인, 즉 美国의 힘이 太平洋에서 어떤 安定된 힘의 均衡에도 基礎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安保에 대한 關心을 갖는 것 以上으로 나아가서 行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安保가 없으면 平和도 發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시아」友邦과 盟邦의 主權과 獨立의 保存은 여전히 美国政策의 단연 으뜸가는 目標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힘만으로는 安保를 다짐하기에 不足하다는 事實을 認定합니다. 顛覆行爲나 侵略을 막는 데는 國民의 支持를 받는 合法性和 社会正義가 絶對로 重要한 要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太平洋 全域에서 伸縮性있고 均衡잡힌 位置를 維持하는 것이 우리 自身과 그리고 그 獨立이 우리의 繼統的인 支援如何에 달려 있는 國家들의 義

務라고 생각합니다.

新太平洋「독트린」의 두번째 基本前提인, 즉 日本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戰略의 支柱라는 것입니다. 対日關係만큼 本人이 注意를 기울이고 있는 關係는 없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文化 및 國民과 關係를 가지려는 美國의 努力은 歷史에서 対日關係에서만 成功을 거둔 일도 없었습니다.

美·日關係는 모든 日本人에게서 矜持의 源泉이라 할 수 있습니다. 美·日兩國關係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最近의 訪問 交換의 基本的인 政治的「파트너십」을 象徵합니다.

우리는 日本 및 其他 先進工業民主國家의 經濟政策을 調節하기 위한 보다 좋은 手段을 發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달에 日本, 「유럽」의 友邦 및 開發途上國代表들과 더불어 南北經濟關係의 보다 效率的이고 公平한 「패턴」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新太平洋 「독트린」의 세번째 前提는 中共과의 關係正常化, 人類의 近 4分の 1을 代表하는 이 큰 나라와의 새로운 紐帶強化입니다. 이것은 美國外交政策의 最近의 또 하나의 成果입니다.

이것은 25年동안의 敵對的 關係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本人은 近 4年前에 시작된 對話를 쌓아 올리기 위해 中共을 訪問했습니다.

毛沢東 主席, 鄧小平 副首相등 中共指導者들과의 広範한 交歓으로 相互間的인 見解와 政策에 대한 理解가 增進되었습니다.

豫期했던 바와 같이 展望의 差異가 있었습니다.

우리 社会, 哲学 및 世界에서의 서로 다른 立場으로 해서 우리는 各自의 国利에 대해서 相異한 認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共同의 広場을 發見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重要한 関心과 合意의 分野를 같이 나누고 있음을 再確認했습니다. 「아시아」国家들은 主權과 領土保全이 相互尊重되고, 国民들이 外勢侵略의 威脅을 받지 않고, 他国の 国内問題에 대한 干涉이 없고, 平等, 互惠, 共存의 原則이 平和로운 國際秩序의 發展을 틀잡는 世界에서 自由롭게 發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들도 主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主張합니다.

우리는 「아시아」나 世界 어느 곳에서나 어떤 形態의 霸權에도 똑같이 反對합니다.

本人은 上海 「코뮤니케」의 土臺에서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를 完成하겠다는 美國의 決意를 再確認했습니다.

雙方은 우리의 論議가 意義있고 有用하며 建設的이었다고 認定했습니다.

우리의 關係는 비단 우리 兩國国民뿐 아니라 이 地域, 나아가서는 全體世界의 모든 国民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太平洋政策의 네번째 原則은 東南亞의 安定과 安全에 대해 우리가 繼續 큰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本人은 中共을 떠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訪問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人口가 1億4千萬이나 되는 우리의 重要한 새로운 友邦의 하나이며 이 地域의 主要國家입니다.

「필리핀」共和國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盟邦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友誼는 「아시아」에 대한 美國의 長期的 關心을 證明해 줍니다.

本人은 「자카르타」와 「마닐라」에서 3日間을 보냈으며, 時間이 있었더라면 泰國,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의 벗들도 訪問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東南亞國家聯合(ASEAN)을 構成하고 있는 이들 5個國과 더불어 重要한 政治的, 經濟的 利害關係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美國國民은 이 ASEAN機構에 關係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會員國家들은 모두 美國의 友邦입니다. 그들의 總人口는 美國人口와 비슷하며, 그들은 開發途上國이지만 絶對로 重要한 國民, 豊富한 自然資源, 잘 經營되는 農業등 여러가지 資產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指導者, 스스로 發展하고 自己들의 問題는 解決하겠다는 決意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國家들은 하나하나가 제각기 그 彈力성과 外交에 依存함으로써 獨立을 守護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번 訪問에서 우리 友邦이 이 地域의 問題에 繼續 緊密하게 關与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濠州와 「뉴질랜드」등 南西太平洋의 옛 友邦 및 盟邦
과도 緊密하고 所重한 紐帶를 繼續 維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太平洋政策의 다섯번째 要素인, 즉 「아시아」의 平和는
政治的 未決紛爭의 解決如何에 달려 있다는 우리의 信念입니다.
韓國에서는 緊張이 持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大韓民國과 緊密
한 紐帶關係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軍隊의
韓國駐屯이 証明하는 바와 같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保障을 繼
續 公約하고 있습니다.

지난 本 高潮된 緊張에 対応하여 우리는 大韓民國에 대한 支
持를 再確認했었습니다. 오늘날 美國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
한 建設的인 方途를 考慮할 用意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大韓民國 自體의 未來를 論議함에 있어서 大韓民國을 除外하려
드는 어떠한 試圖도 이를 繼續 拒否할 것입니다.

印支에서는 傷虜가 아물려면 時間이 必要합니다. 印支半島의
새로운 두 政權에 대한 우리의 政策은 그들의 우리에게 대한 行
動에 의해서 決定될 것입니다. 우리는 好意的 「제스처」 특히
戰死했거나 失蹤된 美國人의 遺骸를 돌려 보내거나, 그들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提供하는 일에 対応할 만한 措置를 취할 用意
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 대해서 自制하는 態度를 보이고,
國際問題에 대해서 建設的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는 過去보다
는 未來를 바라볼 것입니다.

새 太平洋政策의 여섯번째 要點은 「아시아」의 平和는 이 地

域의 모든 國民의 與望을 反映하는 經濟援助機構를 必要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太平洋經濟는 最近 다른 어느 地域보다 더 빠른 成長을 이룩했습니다. 우리의 東部「아시아」와의 交易量은 「유럽」共同體와의 交易量을 凌駕합니다. 美國의 일자리, 通貨流通 및 原料는 太平洋地域과의 經濟的 紐帶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이 地域과의 우리의 通商量은 30%以上으로 增加하여 昨年에는 460億「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經濟는 開發途上國과 先進國間的 協助가 增加됨에 따라 차츰 相互依存하고 있습니다.

ASEAN 5個國과의 우리의 關係는 차츰 成熟했고, 雙方이 더욱 謙虛하고, 現實的인 期待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依支하려 드는 者에 대한 寄贈者로서 그들에게 接近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宥持는 國民들은 우리에게 “無條件”의 援助를 期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通商機會와 그리고 科學과 技術을 移讓받기 위한 보다 公平한 措置를 바라고 있습니다.

本人이 訪問한 모든「아시아」國家의 指導者들이 本人에게 表明한 한가지 共通된 「테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美國이 굳건하고 責任性있는 「리더쉽」을 繼續 發揮해 줄 것을 主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未來와 우리와의 關係에서 自立을 追求하고 있습니다.

盟邦과 友邦에 대한 우리의 軍事援助는 대단치 않은 責任이지만 그 政治的 意義는 거기에 所要되는 적은 額數보다 훨씬 큼니다. 우리는 그들의 自立을, 우리와의 關係를, 그들 相互間的 團結을, 그리고 그들의 地域安保를 強化해 줌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國家的 利益에 寄与하게 됩니다.

本人은 本人이 만난 모든 指導者들에게 美國은 太平洋國家임을 強調했습니다.

本人은 大統領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美國의 積極的인 關心과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의 美國의 存在를 繼續할 것임을 約束하는 바입니다.

「아시아」는 새로운 時代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強大國間의 均衡, 이 地域에서의 우리 盟邦과의 強力한 紐帶, 敵對勢力間의 緊張緩和, 弱小國의 自立과 地域的 團結, 그리고 經濟的 紐帶와 文化的 交流의 擴張에 土臺를 둔 새로운 安定構造에 寄与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平和의 要素들은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最近 數年동안 그리고 最近 數日 동안의 우리의 外交政策은 그 要素들의 成長을 勸獎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繼續 굳건한 姿勢를 維持해 간다면 後世의 史家들은 오늘날 돌이켜보고, 1970年代는 平和로운 協助와 發展의 時代의 始初라고 一太平洋에 接한 모든 國家의 共同社會가 成長하기 시작하던 時期라고 認定하게 될 것입니다.

太平洋와 交叉路만 이곳 「하와이」에서 우리는 보다 広範한 人間社會에 대한 希望을 그려 봅니다. 우리는 世界 모든 人種이 살고 있는 우리의 特有한 共和國의 希望찬 未來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참다운 意味에서 이 나라만큼 自由로운 多人種社會는 아니었습니다.

「하와이」는 美國의 훌륭한 陳列窓이며, 太平洋國家로서의 美國의 運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美國의 太平洋交通은 이 「하와이」州에서 생긴 것입니다. 本人은 「알로아」라는 魔術的 魅力을 온 世界에 내뿜는, 美國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 섬인 「하와이」를 訪問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곳 「하와이」로부터, 우리 美國의 모든 州로부터, 人間의 兄弟愛를 북돋우기 위한 새로운 交流의 精神이 世界 東과 西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나아가게 합시다.

5. 韓美年例 安保協議會議 共同聲明書

가. 1次 共同聲明

(第1次 年例 韓·美 國防閣僚會議)

1968年 5月 28日

美合衆國, 워싱턴

第1次 年例 韓·美 國防閣僚會談은 지난 1968年 4月 17日 및 18日 兩日間 「호놀룰루」에서 開催된 朴正熙 大統領과 「린든·비존슨」 大統領間의 會談에서 決定된 바에 따라 1968年 5月 27日 과 28日 兩日間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다.

崔榮喜 國防長官은 「클리포드」 國防長官, 「넛츠」 次官 및 其他 國防省 高位官吏들과 會同하여 가장 友好的이며 協調的인 雰囲気 속에서 大韓民國에서의 軍事情勢를 檢討하고 越南을 包含한 東亞細亞에서의 相互關心事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였다.

同 會談에서 主議題로 北傀가 恣行하고 있는 不法的이며 侵略的인 行爲가 平和에 對한 深刻한 威脅이 되고 있음이 檢討되었다. 大韓民國에 對한 增大된 軍事的 威脅을 重大한 關心事로 注目하였으며, 北傀의 最近 挑發行爲가 이 地域의 平和와 安全에 深刻한 威脅이 되고 있는 同時에 이러한 行爲가 繼續되는 경우, 또 다시 戰爭을 惹起케 할 것이라는 點에 意見을 같이 하였다. 韓·美 兩國은 이러한 深刻한 威脅에 對한 防衛를 爲하여 兩國 防衛力

을 한층 增加시키고져 이미 取하여 졌거나 現在 取해지고 있는 諸般 非常措置를 檢討하였다.

그러한 非常措置에 關한 討議의 對象으로서 이미 취해진 防衛 施設의 強化 및 大韓民國 國軍 現代化等의 措置에 있어서 能力의 改善과 繼續 強化시키기 爲한 追加的인 方案을 包含하여 檢討하였다.

會談에서 檢討된 그의 議題中에는 韓國에 있어서 對間諜作戰 強化, 浸透 및 間諜行爲에 對處하기 爲한 機構 및 編成이 包含 되어 있다.

또한 가장 適合한 大韓民國의 國內治安을 加一層 確保하기 爲하여 새로 編成된 鄉土予備軍의 役割과 支援問題도 討議하였다. 崔長官은 大韓民國의 防衛를 爲하여 美國이 취하고 있는 積極的인 支援努力에 對한 韓國의 感謝한 뜻을 表明하였다.

越南事態도 檢討되었으며, 越南共和國을 侵略으로 부터 防衛하고 越南國民이 自身の 將來를 決定할 수 있는 權利를 保障하도록 大韓民國과 美國이 援助를 繼續한다는 決意를 再確認하였다.

大韓民國과 美國은 尙存하는 威脅과 防衛態勢와 이러한 威脅에 對處하기 爲한 韓·美 兩國의 努力을 檢討하기 爲하여 1969年 서울에서 次期 韓·美 閣僚會談을 開催하는데 合意하였다.

崔長官은 今番 會談을 成功裡에 終結시키는데 있어 「클리포드」 長官, 「넛츠」次官 및 補佐官들의 鄭重한 待遇와 能熟한 業務處理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나. 2次 共同声明

(第2次 年例 韓·美 国防閣僚會議)

1969年6月4日
大韓民國, 서울

1968年4月 大韓民國 大統領과 美合衆國 大統領의 頂上會談 決定 및 1968年5月28日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던 第1次 韓·美 国防閣僚級 會談의 合意된 바에 따라 第2次 年例 韓·美 国防閣僚級 會談이 1969年6月3日과 4日 兩日間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美國 政府代表 「패카드」 國防次官은 6月2日 朴正熙 大統領, 丁一權 國務總理 및 崔圭夏 外務部長官을 札訪하였다.

任忠植 國防部長官과 「패카드」 次官은 6月3日과 4日에 會談하였으며, 이 會談에는 兩國 國防 및 軍事高位層이 同席하였다.

兩國代表는 韓國內의 軍事情勢와 重要한 防衛問題 및 越南問題等에 關하여 有益한 意見을 交換하였다.

兩國代表는 北傀軍의 增強 및 現代化를 통한 北傀의 好戰的인 態度로 因하여 惹起된 大韓民國 및 東亞細亞의 平和와 安全保障의 威脅에 對하여 長時間 討議하였다.

兩國代表는 公海上空의 美 EC-121機 擊墜 및 繼續的인 北傀의 大韓民國 非武裝地帶와 海岸線을 통한 武裝共匪의 大量浸透 行動에 對하여 분노의 뜻을 表明하였다.

兩 國防部長官은 蔚珍 및 三陟 事件을 包含한 現在와 過去의 浸透事件에 對하여 詳細히 說明하고 이와 같은 威脅에 對処하기

為하여 計劃된 大韓民國의 對間諜作戰 計劃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그리고 任長官과 「패카드」次官은 郷土予備軍에 對한 追加的인 小火器 供給은 必須的이라고 結論 지었다.

兩國代表는 北傀의 侵略的 行爲를 勘案하여 共同으로 繼續 警戒하여야 하며, 北傀의 大韓民國에 對한 侵略은 그 代價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事實을 明確히 誇示하므로서 兩國은 將次 北傀를 沮止하는데 必要한 防衛에 積極的인 対応措置를 취할 것에 合意하였다.

任 國防部長官과 「패카드」國防次官은 韓國 및 駐韓美軍의 諸般 能力에 對하여 檢討하였다. 兩國 代表는 韓國軍의 現代化를 為하여지고 있는 特別措置의 結果 韓國軍의 防衛能力이 最近에 向上되었음을 認識하였다.

兩國代表는 既히 計劃된 裝備의 導入, 追加的인 裝備의 補充 등을 包含한 軍事援助 計劃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論議하였다.

兩國代表는 韓國內에서 M-16 小銃 및 彈藥生産을 為하여 工場을 設置할 것에 關한 具體的인 問題를 討議하기 為하여 美國 防省 代表를 今月中에 派韓키로 決定한데 對하여 討議하였다.

兩國代表는 越南共和國에 對한 侵略을 沮止하기 為하여 越南共和國을 繼續 支援하려는 兩國政府의 굳은 決意를 表明하였다.

또한 將來의 自由 亞細亞 防衛에 關係된 問題에 對하여 檢討하였다.

任忠植 國防部長官 및 「패카드」次官은 次期 國防閣僚會談을 1970年 「워싱턴」에서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다.

「패카드」 国防次官은 會談과 關聯해서 韓國軍 및 駐韓美軍의 基地와 防衛施設 및 部隊를 訪問하였으며, 全般 會談을 成功裡에 終結시키는데 寄與한 任忠植 国防長官 및 李同鎬 國防部次官의 鄭重한 禮儀와 款待, 그리고 能熟한 業務處理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다. 3次 共同声明

(第3次 年例 韓·美 国防關係會議)

1970年 7月 22日
美合衆国「호놀룰루」

1. 1968年 4월에 있었던 大韓民国과 美合衆国 大統領의 決定 및 1969年 6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2次 国防關係會議의 合議에 따라 1970年 7月 21日부터 22日까지 「호놀룰루」에서 第3次 韓·美 国防關係會談이 開催되었다.
2. 丁來赫 國防部長官과 「페카드」 國防次官은 韓·美 兩國民이 韓國과 越南에서 自由를 爲하여 함께 싸워오는 동안 相互 尊敬과 友誼를 存続케한 事實에 留念하는 한편, 韓半島의 安全保障 實態를 檢討하고 또한 東亞細亞의 安全에 關聯된 問題에 關하여도 意見을 交換하였다.
3. 丁 國防長官과 「페카드」 次官은 韓·美 兩국이 戰爭과 平和時를 莫論하고 試驗되고 立証된 協力關係를 가진 참으로 強力한 盟邦임을 確認하였다.
4. 兩國代表는 北傀의 繼續되는 侵略行爲에 對하여 憂慮를 表明했다.
兩國代表는 大韓民國을 防衛하는 軍事力이 北傀의 再侵을 抑制하기 爲하여 警戒態勢에 있어야 하고, 또한 強力하여야 한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5. 兩側代表는 大韓民國에 對한 北傀의 深刻한 威脅에 直面하고 있는 오늘날 大韓民國의 防衛能力을 增強하고 現代化하기 爲한 相當한 水準의 美國 軍事援助가 維持되어야 한다는데 合意하였다.
6. 兩側代表는 大韓民國에 追加的인 防衛産業을 發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이 問題가 繼續的인 協議의 對象이 되어야 함을 認定하였다.
7. 「패카드」次官은 丁長官에 對하여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侵攻이 發生할 경우에는 相互 防衛條約에 依拠하여 即刻的이며 效果的인 援助를 提供할 美合衆國의 用意과 決意를 確約하였다. 그는 온 世界가 特히 北傀와 中共이 이 條約上의 公約을 認識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8. 兩側代表는 太平洋地域의 他美軍基地로 부터 一部 美空軍機를 大韓民國內의 基地로 移動시키는 計劃을 發展시키기로 合意하였다. 이에 追加하여 兩側代表는 可及的 單時日內에 相當數의 S-2 型 海軍哨戒艇을 美國이 大韓民國에 提供한다는데 合意하였다.
9. 兩側代表는 越南共和國의 情勢를 檢討하고 越南共和國이 共產侵略에 對抗하는데 必要한 그들의 援助를 繼續한다는 兩國政府의 決意를 再確認하였다.

10. 次期 年例 国防閣僚會談은 1971 年에 서울에서 開催한다는데
合意 하였다.

11. 丁 国防長官은 「패카드」次官, 「팩케인」提督 및 補佐官들의
鄭重한 禮儀 및 款待, 그리고 今般 會談의 成功에 크게
寄与한 훌륭한 準備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라. 4次 共同声明

(第 4 次 韓 · 美 年 例 安 保 協 議 會 議)

1971年 7 月 31 日

大韓民國, 서울

1. 1971年 2 月 6 日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 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1971年 7 月 12 日 부터 13 日 까지 大韓民國 서울에서 韓 · 美 年 例 安 保 協 議 會 議가 開 催 되 었 다.

이 會 議 에 는 丁 來 赫 國 防 部 長 官 「멜빈 · 알 · 레어드」 國 防 長 官 및 其 他 兩 國 政 府 의 外 務, 國 防 高 位 官 吏 들 이 參 席 하 였 다.

美 國 代 表 團 長 「레어드」 國 防 長 官 은 朴 正 熙 大 統 領 閣 下, 金 鍾 泌 國 務 總 理, 金 溶 植 外 務 部 長 官 을 禮 訪 하 였 다.

2. 丁 來 赫 國 防 部 長 官 과 「멜빈 · 알 · 레어드」 國 防 長 官 은 韓 半 島 에 있 어 서 의 安 保 情 勢 를 檢 討 하 고 또 한 大 韓 民 國 에 對 한 軍 事 的 威 脅 의 性 格 을 評 價 하 였 다.

過 去 의 國 防 閣 僚 會 談 에 서 相 互 合 意 되 었 던 問 題 인 大 韓 民 國 의 防 衛 에 必 須 的 인 諸 措 置 의 履 行 에 對 하 여 恪 別 한 注 意 가 기 울 어 졌 다.

兩 國 代 表 團 은 大 韓 民 國 을 防 衛 하 는 軍 事 力 이 北 傀 의 再 侵 을 抑 止 하 기 為 하 여 警 戒 態 勢 에 있 어 야 하 고 또 한 強 力 하 여 야 한 다 는 데 意 見 을 같 이 하 였 다.

3. 「레어드」 長 官 은 充 分 한 힘 과 共 同 協 力 關 係 가 「닉슨 독트린」 의 兩 大 支 柱 임 을 強 調 하 였 다.

丁長官과 「레어드」長官은 韓·美 兩國國民이 大韓民國과 越南에서 自由의 共同利益을 爲하여 夢치는 한편, 多年間 相互 尊敬과 協力에 立脚한 強力한 友好關係를 이룩하였음에 留意하였다.

그들은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維持하기 爲하여 共同協力關係를 持續할 것을 다짐하였다.

4. 兩側代表는 大韓民國 軍의 現代化 計劃의 進陟狀況에 滿足을 表明하였으며, 丁長官은 韓國의 防衛所要에 對한 美國의 強力한 支援에 對하여 깊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兩側代表는 大韓民國의 自主國防能力의 強化가 繼續되어야 하며 現代化 計劃의 順調로운 履行이 繼續되어야 한다는데 意見을 같이 하였다.

또한 「레어드」長官은 充分하고 實質的인 軍事援助의 必要性을 認定하였다.

防空體制 向上의 必要性和 關聯하여 그는 相當數의 F-5A 航空機의 導入計劃을 促進하는데 合意하였다. 그는 또한 海上浸透에 對한 韓國의 防衛能力 強化를 爲한 檢討가 繼續될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韓國의 防衛發展能力의 開發을 檢討하기 爲하여 共同協議를 繼續할 것에 合意하였다.

丁長官은 韓國의 彈藥生産 施設 擴張에 對한 支援을 要請하였고, 「레어드」長官은 이를 考慮하겠다고 言明하였다.

5. 兩側 代表團은 相互 安保計劃을 爲하여 適切한 予備軍 計劃의 重要性을 認定하였다.
6. 「레이드」長官은 丁長官에 對하여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경우, 相互 防衛條約에 依拠하여 迅速하고도 效果的인 援助를 提供한다는 美國의 用意와 決意를 再確認 하였다.
7. 次期 年例 安保協議會議은 1972年 美國政府의 主權下에 美國에서 開催한다는데 合意하였다.
8. 「레이드」長官은 丁國防長官과 그의 補佐官들이 베푼 好意와 歡迎, 그리고 今般 會議을 成功的으로 이끈 훌륭한 準備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였다.

마. 5次 共同声明

(第5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72年6月27日
美合衆国 [코로라도]

1. 1971年 2月6日 大韓民国 政府와 美合衆国 政府間的 合意와 1971年 서울에서 開催된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에서 合意된 바에 따라 1972年 6月26日 兩日間に 걸쳐 [코로라도, 스프링스]에서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가 開催되었다.

劉載興 國防部長官과 멜빈·알·레이드 國防長官 그리고 兩國政府의 外務·國防高位官吏들이 이 會議에 參席하였다. [코로라도, 스프링스]에서의 會議에 앞서 劉載興 國防部長官은 레이드 長官의 招請으로 美國의 防衛産業施設을 視察하였다.

2. 劉載興 國防部長官과 [멜빈·알·레이드] 國防長官은 特別히 兩國의 安全保障에 影響을 미치는 諸般問題를 包含한 亞細亞 太平洋地域에 關한 全般的인 事項을 廣範圍하게 檢討하였다.

그들은 大韓民国에 對한 直接的인 軍事的 威脅의 性格을 分析하였고, 그러한 威脅에 對하여 防衛할 全般的 能力을 評價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劉長官은 昨年度 會議以後 北傀가 各種 攻擊用 武器의 導入과 非武装地帶를 要塞化하므로써 그들의 軍事力을 增強하여 온 事實과 實際的인 底意를 隱蔽하기 爲하여 偽裝된 平和攻勢를 展開하고 있음을 詳細히 說明하였다.

3. 劉長官과 「레어드」長官은 北傀의 軍事力이 繼續해서 大韓民國에 對하여 深刻한 威脅이 되고 있음에 留意하였다.

兩國代表들은 大韓民國을 防衛하는 軍事力이 韓半島에서의 效果的인 戰爭抑制力이 될 수 있도록 充分한 水準의 兵力과 警戒態勢가 維持되어야 한다는데 意見을 같이 하였다.

4. 劉長官과 「레어드」長官은 兩國間에 強力한 友好關係를 再確認 하였으며, 韓國과 그리고 韓國軍이, 越盟 共產侵略을 沮止하기 爲하여 勇敢하게 싸워온 越南에서도 이러한 協議關係가 自由를 增進하여 왔음에 留意하여 相互 尊敬과 協同의 紐帶關係를 維持하고 더욱 發展시키도록 決意하였다.

그들은 兩國이 韓半島의 安全保障과 亞細亞의 平和와 發展을 爲하여 共同努力을 繼續하기로 合意하였다.

5. 「레어드」長官은 「닉슨」大統領의 北京과 「모스크바」訪問에 關하여 言及하였으며, 이 두 訪問이 亞細亞와 全世界의 平和와 展望에 貢獻하게 되리라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大韓民國이 提唱한 赤十字會談의 進展에 留意하였고, 또한 「레어드」長官은 韓半島에서의 平和에 對한 障礙物을 除去하기 爲하여 朴大統領에 提示한 여러 建設的인 提案에 言及하였다.

兩國代表들은 韓·美 兩國이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摸索하고 있음에 留意하고, 北傀가 武力에 依해 韓國을 統一하겠다는 如何한 策動도 拋棄하므로써 그 誠意를 行動으로 表

示하라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6. 劉長官과 「레이드」長官은 1971年 2月6日字 共同声明에서 兩國政府間에 合意된 韓國軍 現代化 5個年 計劃의 成就에 對한 進陟事項을 檢討하였다. 兩國代表는 現代化 計劃의 順調로운 履行이 韓國의 安全保障을 爲해 緊要하며, 「닉슨 독트린」에 表示된 힘과 協同의 概念에 合致된다는데 意見을 같이 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레이드」長官은 韓國의 防空을 爲한 援助를 包含한 適切하고 相當한 水準의 軍事援助가 必要함을 認定 하였다.

7. 劉長官과 「레이드」長官은 韓國 海軍의 戰鬪力 增強과 海上으로 부터의 北傀 間諜의 浸透防止를 爲하여 3隻의 PG哨戒艇 購買를 爲한 外國 軍事販賣借款 資金を 提供하는 諒解 覚書에 署名하였다.

8. 劉長官은 大韓民國의 自主國防을 爲해서 防衛産業을 育成하고 予備軍을 維持하려는 韓國政府와 國民의 努力을 說明하였다.

「레이드」長官은 韓國政府가 防衛面에 있어서 自主國防을 成就 하려는 努力에 對하여 美國政府의 強力한 關心을 表明하였다.

劉長官과 「레이드」長官은 其他 防衛産業에 對해서도 提供될 援助를 考慮할 것에 同意하였다.

劉長官은 韓國의 國防科學研究所가 囑望裡에 開院되었음에 滿足하였으며, 「레어드」長官은 美國에 이 分野에 있어서 適切한 援助를 提供할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9. 「레어드」長官은 劉長官에게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경우에 相互 防衛條約에 依拠하여 迅速하고도 效果的인 援助를 提供한다는 美國의 同意와 決意를 再確認하였다.

10. 次期 年例 安保協議會는 大韓民國政府가 1973年 韓國에서 主權하기로 合意하였다.

11. 劉長官은 「레어드」長官과 美國代表들이 베푼 好誼와 款待, 그리고 이번 會議을 成功的으로 이끈 美 空軍士官學校의 훌륭한 準備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바. 6次 共同声明

(第6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73年 9月 13日
大韓民國, 서울

1. 1971年 2月 6日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兩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그리고 1972年 6月 27日 「콜로라도」州 「콜로라도, 스프링즈」 美 空軍士官學校에서 開催된 年例 安保協議 會議에서 合意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과 美 合衆國間의 年例 安保協議會議가 1973年 9月 12日과 13日 兩日間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劉載興 國防部長官, 「윌리엄·피·클레멘츠」 國防次官, 그리고 兩 國政府의 外務 및 國防高位官吏들이 이 會議에 參席하였다. 「클레멘츠」 次官은 朴正熙 大統領 閣下와 金鍾泌 國務總理를 禮訪하였고 劉長官 招請으로 大韓民國內의 防衛施設을 視察하고 古蹟地를 巡訪하였다.

2. 劉長官과 「클레멘츠」 次官은 亞細亞 및 太平洋地域의 情勢全般과 兩國의 安全保障에 影響을 미치는 特定問題를 檢討 協議하였다.

또한 兩 代表는 特히 지난번 會議 以來 北韓의 增強된 能力에 비추어 大韓民國이 直面하고 있는 威脅의 性格과 範圍를 分析하였고, 그러한 威脅에 대한 防衛能力과 態勢를 評價하였다. 兩代表는 이 問題를 銳意檢討하는 것을 繼續한다는 데 合意하였다.

3. 兩側 代表團은 大韓民國의 防衛能力維持가 緊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兩側 代表團은 大韓民國을 防衛하는 聯合軍이 韓半島에서의 敵對行為의 再發을 防止할 수 있도록 適正한 水準과 規模로, 그리고 充分한 準備態勢下에 維持되어야 한다고 結論지었다. 이와 같이 關聯하여 「클레멘츠」次官은 美合衆國 政府가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現水準의 美合衆國 軍隊를 減縮할 計劃이 없다고 말하였다.

4. 兩側 代表團은 兩國이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追求할 것을 強調하였고, 이와 關聯하여 北韓이 1972年 7月4日字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真正으로 意圖하고 있다는 것을 具體적으로 立証하라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클레멘츠」次官과 劉長官은 또한 6月23日에 大韓民國이 취한 여러 가지 外交政策의 「이니셔티브」와 같은 建設的 措置들이 亞細亞에 있어서의 恒久的 平和와 安定에 寄與할 것이라는 希望을 表明하면서 이러한 措置들에 留意하였다.

5. 「클레멘츠」次官은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경우 1954年에 締結된 相互 防衛條約에 따라 迅速하고도 效果的인 援助를 提供하겠다는 美合衆國의 繼續적인 對備의 決意를 劉長官에게 再次 保障하였다.

劉長官과 「클레멘츠」次官은 兩國間에 存在하는 굳은 紐帶를 再確認 하였고 相互尊重과 協力精神으로 이 紐帶를 더욱 強化 시키기로 決意하였다. 兩代表는 兩國이 大韓民國과 亜細亞, 太平洋地域의 安全保障에 影響을 미치는 諸般問題에 關하여 緊密한 協議를 繼續할 것에 合意하였다.

6. 劉長官과 「클레멘츠」次官은 1971年 2月6日字 共同聲明에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兩政府間에 合意된 大韓民國軍 現代化 計劃 進展 狀況을 檢討하였다.

兩代表는 現代化計劃의 順調로운 履行이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全保障의 維持에 緊要하며, 또한 「닉슨 독트린」에서 表示한 바 있는 美合衆國의 힘과 協同의 政策에 合致된다는 것에 留意하였다.

7. 劉長官은 大韓民國이 自体防衛를 爲한 人的 및 物的 所要의 더욱 많은 部分을 負擔키 爲하여 이룩한 커다란 進展과 防衛産業 開發努力을 說明하였다.

「클레멘츠」次官은 그러한 努力을 歡迎하고, 大韓民國이 自体의 防衛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産業基盤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美國의 産業技術과 韓國의 産業을 結付活用하는 共同努力의 必要性을 考慮할 것을 勸告하였다.

그는 研究開發을 包含한 이 分野에 適切한 援助를 提供토

특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8. 兩代表는 次期 年例 安保協議會議을 美合衆國 政府主催로 美合衆國에서 開催키로 合意하였다.

9. 「클레멘츠」次官은 大韓民國 關係當局이 그와 그의 代表團에게 베푼 好意와 款待에 對하여 劉長官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사. 7次 共同声明

(第7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74年9月24日

美合衆國「호노루루」

1. 1971年 2月6日字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兩政府間의 合意와 1973年 9月13日 大韓民國 서울에서 開催된 年例安保 協議會議에서 合意한 바에 따라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年例 安保協議會議가 1974年 9月23日과 24日에 美合衆國「호노루루」에서 開催되었다.

徐鐘喆 國防長官, 「윌리엄·피·클레멘츠」 國防次官 및 兩國政府의 外務, 國防高位官吏들이 會議에 參席하였다.

이 會議에 앞서 徐長官은 「워싱턴」에서 「슐레징거」 國防長官 및 産業施設을 視察하였다.

2. 徐長官과 「클레멘츠」 次官은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의 情勢 全般과 特히 兩國의 安全保障에 影響을 미치는 問題들을 檢討하였으며, 大韓民國에 對한 軍事的 威脅의 性格과 範圍를 共同으로 分析, 評價하고 그러한 威脅에 對處할 防衛能力과 態勢에 關하여 具體적으로 協議하였다.

徐長官과 「클레멘츠」 次官은 北傀의 軍事力이 繼續하여 大韓民國에 對한 重大한 威脅이 되고 있음에 留意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徐長官은 陸, 海, 空軍 最新裝備의 繼續的

導入을 포함한 北傀의 增強된 軍事力을 指摘하고 또한 지난번 會議以來 北傀가 休戰協定을 違反하여 恣行한 武力挑發에 關하여 詳細히 說明하였다.

「클레멘츠」次官은 徐長官의 狀況說明에 注目하고 現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기 爲하여 繼續적인 警戒가 必要하다는데 同感을 表明하였다.

3. 兩側代表團은 韓半島에서의 敵對行爲의 再發防止 및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爲하여 大韓民國의 防衛力을 維持하고, 韓國을 防衛하는 聯合軍이 充分한 準備態勢下에 있도록 하는 것이 緊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클레멘츠」次官은 美合衆國 政府가 現 規模의 駐韓美軍을 減縮할 計劃이 없음을 再確認하였다.

4. 兩側 代表團은 特히 1973年 6月 23日 朴正熙 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1974年 8月 15日 朴大統領의 演說에서 提示된 平和統一 3原則 및 1974年 1月 18日 字의 南北間 不可侵協定 締結提議를 包含하여,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爲하여 大韓民國이 取한 여러가지 政策的 「이니시아티브」에 留意하였다.

兩側代表團은 이러한 建設的 措置들이 韓國의 平和的 統一과 「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 寄與할 것을 바라고, 이러한 提議들을 受諾함으로써 韓國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겠다는 意圖를

事實할 것을 北傀에게 再次 促求하였다.

5. 「클레멘츠」次官은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撃이 있을 境遇, 1954 年の 相互 防衛條約에 따라 迅速하고도 效果的인 援助를 提供 하겠다는 美合衆國의 繼統的인 對備와 決意를 徐長官에게 再次 保障하였다.

徐長官과 「클레멘츠」次官은 兩國間에 存在하는 傳統的인 紐帶를 再確認하고 相互尊重과 協力精神에 立脚하여 이 紐帶를 더욱 強化하기로 決議하였다.

兩代表는 兩國이 大韓民國과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全에 影響을 미치는 問題에 關하여 緊密한 協議를 繼統할 것에 合意 하였다.

6. 徐長官과 「클레멘츠」次官은 1971年 2月6日字 共同聲明에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政府間에 合意된 大韓民國軍 現代化 計劃의 履行에 있어서의 進展狀況을 檢討하였다.

兩代表는 現代化 計劃의 順調롭고 迅速한 履行이 大韓民國의 安全保障과 韓半島의 平和를 爲하여 必須的이라는 데 留意하였다.

「클레멘츠」次官은 大韓民國이 防衛負擔의 漸次 많은 部分을 負擔하고자 하는 能力과 用意를 가지고 있는데 對하여 讚揚의 뜻을 表하였다. 또한 同 次官은 大韓民國이 現代化 計劃 所要를 包含한 充分한 水準의 軍援을 必要로 하고 있음을

美国이 繼續 認定하고 있다고 再闡明하였으며, 美国이 그러한 必要를 充足시키도록 努力할 것임을 徐長官에게 保障하였다.

7. 徐長官은 美国政府가 大韓民國의 防衛産業 開發을 爲하여 特別 全般的 政策, 技術 및 側面에서 積極的인 支援과 援助를 하여준데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였으며, 繼續하여 必要한 支援과 援助를 하여줄 것을 「클레멘츠」次官에게 要請하였다.

「클레멘츠」次官은 大韓民國 政府가 自体防衛能力을 發展시킴에 있어 이룩한 進展을 讚揚하고, 防衛産業에 對한 合作投資에 繼續 重點을 둘것을 勸告하였으며, 美合衆國이 이러한 諸 分野에 있어서의 大韓民國의 努力에 對하여 適切한 支援과 援助를 提供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8. 兩側代表는 次期 安保協議會議을 大韓民國政府 主催로 1975년에 大韓民國에서 開催기로 合意하였다.

9. 徐長官은 그와 大韓民國 代表團에게 베푼 好意와 款待, 그리고 이 會議을 成功的으로 이끈 훌륭한 準備에 對하여 「클레멘츠」次官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였다.

아. 8次 共同声明

(第8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75年 8月 27日
大韓民國, 서울

1. 1971年 2月 6日 字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兩國政府間의 合意와 1974年 9月 23日 및 24日에 「하와이」洲 「호놀룰루」에서 開催된 年例安保協議會議에서 合意한 바에 따라 大韓民國과 美合衆國과 間의 年例安保協議會議가 1975年 8月 26日 및 27日에 大韓民國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2. 徐鐘喆 國防部長官·웨임스 알·슐렛신저 國防長官 그리고 兩國政府의 高位 外務 및 國防官吏들이 이 會議에 參席하였다.

韓國 訪問中 「슐렛신저」 國防長官은 朴正熙 大統領 閣下와 國務總理를 禮訪하였다.

3. 徐長官과 「슐렛신저」長官은 韓半島의 安保情勢와 더불어 印度支那事態 以後의 아시아 太平洋地域 情勢 全般에 關하여 広範圍하게 檢討하였다.

大韓民國의 安全이 東北「아시아」에서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緊要함에 留意하면서 兩側 代表團은 大韓民國이 直面하고 있는 軍事的 威脅의 性格과 範圍를 共同으로 分析 評價하고 그러한 威脅에 対処할 韓·美聯合軍의 防衛能力과 準備態勢에 關하여 具體적으로 討議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솔렛신저」長官은 美国政府가 現水準의 駐韓美軍을 減縮할 計劃이 없음을 再確認 하였다.

4. 徐長官은 繼統的인 軍事力 增強 및 奇襲南侵을 爲한 非武装地帶內의 地下坑道 굴착등을 包含하여 1953 年의 休戰協定을 違反한 北傀의 武力挑發行爲에 關하여 詳細히 說明하였다.

「솔렛신저」長官은 그러한 說明에 注目하고 北傀의 威脅과 攪亂行爲에 對處하기 爲하여 間斷없는 警戒態勢의 維持가 必要하다는데 同意 하였다.

5. 徐長官과 「솔렛신저」長官은 北傀의 軍事力이 繼統하여 大韓民國의 安全에 對한 重大한 威脅이 되고 있으며 韓半島에서 防止하고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大韓民國의 防衛能力을 維持하고 韓國을 防衛하는 韓·美 聯合軍이 充分한 準備態勢下에 있도록 하는 것이 緊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徐長官과 「솔렛신저」長官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諸般計劃에 關하여 緊密한 協議를 繼統하는 것이 必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6. 兩側 代表團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定着시키기 爲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取한 여러 가지 重要한 政策的 「이니시아티브」에 留意하였다.

兩側 代表團은 特히 1973 年 6 月 23 日字 朴正熙 大統領閣下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特別聲明, 1974 年 1 月

18日字 南北間 不可侵協定 締結 提案 및 1974年 8月 15日 朴大統領 閣下의 演說에서 闡明된 平和統一 三原則에 留意하였다.

7. 또한 兩側 代表團은 유엔會員국들이 「이니시아티브」를 取하여 休戰協定維持를 爲해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는 條件으로 유엔軍司令部 解体에 關한 決議案을 1975年 6月 27日에 提出한데 留意하였다.

兩側 代表團은 他 当事者들이 이같은 建設的인 提案에 肯定的으로 呼應하도록 希望하였다.

나아가서 兩側 代表團은 北傀에 對하여 朴大統領 閣下께서 1975年 7月 4日字 談話를 通하여 再次 밝힌 바와 같이 南北 對話를 早速히 正常化 시키는데 同意 하므로서 韓國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用意在 있음을 行動으로 實証할 것을 保求하였다.

8. 「슐렛신저」長官은 「포드」大統領과 그밖의 美國政府 高位官吏들이 最近에 闡明한 大韓民國 防衛에 對한 美國의 公約을 確固 不動하게 再確認하였다.

특히 「슐렛신저」長官은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境過, 1954年의 相互 防衛條約에 따라 即刻的이고 效果的인 援助를 大韓民國에 提供하겠다는 美國政府의 對備와 決意를 徐長官에게 保障하였다.

9. 徐長官과 「슐렛신저」長官은 1971年 2月 6日字 共同聲明에서 大韓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間에 合意된 韓國軍 現代化 計劃 履行에 있어 重要한 進展事項을 細密하게 檢討하였다.

「술렛신저」長官은 現代化計劃 殘量事業의 迅速한 早期完遂를 爲하여 美國은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는 것을 徐長官에게 保障하였으며 徐長官은 現代化計劃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提供된 實質的인 支援에 對하여 謝意를 表明하였다.

10. 徐長官은 大韓民國의 自主國防을 指向하는 繼統的인 事業計劃을 說明하였으며, 「술렛신저」長官은 이 計劃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大韓民國의 自助努力을 讚揚하였다.

「술렛신저」長官은 나아가 美國은 大韓民國이 自主國防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도록 繼統 支援할 것을 再闡明하였다.

11. 徐長官은 大韓民國의 防衛産業 育成을 爲한 美國政府 및 企業體들의 關心과 支援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 自主國防能力을 開發하기 爲하여 韓國政府가 傾注하고 있는 努力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술렛신저」長官은 徐長官에게, 美國이 이 部門에 있어 兩國間의 共同協力을 增進하고 適切한 支援과 援助를 繼統 提供할 것이라고 保障하였다.

12. 兩側 代表團은 次期 年例安保協議會議을 1976年에 美國政府 主催로 美合衆國에서 開催키로 合意하였다.

13. 「술렛신저」長官은 大韓民國 關係當局이 그와 美國 代表團에게 베푼 好意 및 款待와 이 會議을 成功的으로 遂行케 하는데 寄與한 훌륭한 準備에 對하여 衷心으로 謝意를 表明하였다.

자. 9次 共同声明

(第9次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

1976年 5月 27日
美合衆国 「호노루루」

1. 大韓民国 政府와 美合衆国 政府間的 1971. 2. 6日字 合意와 75. 8. 26日 및 27日에 大韓民国 서울에서 開催된 年例安保協議會議에서 合意한바에 따라 大韓民国과 美合衆国 政府間的 第9次 年例安保 協議會議가 76. 5. 26日 및 27日에 美合衆国 「하와이」洲 「호노루루」에서 開催되었다.
「도널드 에이취 럽스펠드」美国防長官, 徐鍾喆 大韓民国 国防長官 「조지애스 브라운」美合參議長, 盧載鉉 大韓民国 合參議長 그리고 兩國政府의 高位 外務 및 国防官吏들이 이 會議에 參席하였다.
2. 徐長官과 「럼스펠드」長官은 兩國에 影響을 미치는 安保問題를 包含한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에 特히 關聯되는 広範圍한 國際 安保 情勢를 檢討하였다.
兩長官은 大韓民国의 安全이 東北亞細亞와 太平洋地域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緊要하다는 것을 留意하면서 西海島嶼를 包含하여 大韓民国이 直面하고 있는 軍事的 威脅의 性格과 範圍를 共同으로 分析評價하였다.
3. 徐長官과 「럼스펠드」長官은 北傀의 威脅에 對処할 韓·美 聯合 軍의 防衛能力과 準備態勢에 關하여 討議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림스펠드」長官은 美合衆国 政府가 現水準의 駐韓 美軍을 減縮할 計劃이 없음을 確認하였다.

4. 徐長官과 「림스펠드」長官은 北傀가 最新 高性能 裝備의 導入과 自體軍需産業의 發展을 通하여 攻擊能力을 增加시키기 爲한 軍事力을 繼續 增強하고 있음에 留意하였다.

徐長官은 非武裝地帶内の 地下坑道 構築을 包含하는 北傀의 休戰協定 違反事項을 具體적으로 指摘하였다.

徐長官과 「림스펠드」長官은 西海島嶼를 包含하는 大韓民國의 安保에 對한 北傀의 軍事的 威脅이 繼續 深刻하다는데 合意 하였다.

따라서 兩側 代表團은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을 防止하고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에 充分한 大韓民國의 防衛能力을 維持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結論지었다. 兩長官은 이와 關聯한 緊密한 協議를 繼續하기로 合意하였다.

5. 「림스펠드」長官은 「포드」大統領閣下의 1975.12.7 日字의 太平洋 宣言을 留念하면서 大韓民國 防衛를 爲한 美國의 公約을 明白히 再確認하였다.

특히 「림스펠드」長官은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境遇 1954年의 相互防衛條約에 따라 即刻的이고도 效果的인 支援을 提供하겠다는 美合衆國의 對備와 決意를 徐長官에게 保障하였다.

6. 徐長官과 「림스펠드」長官은 1971.2.6 日字 共同聲明에서 大韓

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間의 合意된 韓國軍 現代化 計劃의 主要 進展狀況을 綿密히 檢討하였다.

럼스펠드 長官은 美國이 現代化 計劃의 殘餘部分을 1977 年에 完了하도록 最善을 다할 것임을 徐長官에게 保障하였다.

徐長官은 現代化 計劃의 完結을 위한 美國의 繼續的인 支援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였다.

7. 徐長官은 大韓民國이 自體의 資源으로 推進할 繼續的인 韓國軍의 現代化를 위한 戰力增強 5 個年 計劃을 「럼스펠드」 長官에게 說明하였다.

「럼스펠드」 長官은 大韓民國의 戰力增強 計劃이 大韓民國의 自主國防의 目標達成에 重要한 里程碑라고 指摘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長官은 美國이 自主國防을 達成하기 爲해 大韓民國의 努力을 繼續 支援할 것을 다짐하였다.

8. 徐長官은 防衛産業과 關聯 國防科學技術의 發展을 包含하는 加一層의 自主國防을 위한 韓國의 繼續的인 計劃에 關하여 說明하였다.

徐長官은 이 分野에서 美國이 韓國의 努力을 積極 支援하여 줄 것을 希望하였다.

「럼스펠드」 長官은 加一層의 自主國防을 達成코자 하는 韓國側 計劃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韓國이 傾注하고 있는 이러한 自助努力을 높이 評價하였다.

또한 同長官은 美國이 韓·美 兩國間의 共同防衛 協力を 增進

하고 이 分野에서 適切한 支援과 援助를 繼續 提供해 줄 것
임을 確約하였다.

9. 徐長官 과 「림스펠드」長官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
着시키기 爲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取한 重要한 政策的 措置에
留意하였다.

兩長官은 特히 朴正熙 大統領閣下의 1973年 6月 23日字 平和
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特別聲明, 1974年 1月 18日字 南北間
不可侵協定 締結 提案 및 1974年 8月 15日의 演說에서 闡
明된 平和統一 3原則에 留意하였다.

兩代表는 또한 休戰協定 維持方案과 더욱 基本的인 協定の 交
渉을 위한 보다 큰 規模의 會議開催 可能性을 包含하는 韓半
島의 緊張緩和를 爲한 諸般措置를 檢討하게 될 유엔總會에서
提議한 措置에 留意하였다.

兩側 代表團은 이러한 建設的 提案에 對하여 他方 當事者가
肯定的인 反應을 보일 것을 繼續 希望하고 있음을 表明하였다.

10. 兩長官은 次期 年例安保 協議會議를 大韓民國 政府 主權로
1977年에 大韓民國에서 開催키로 合意하였다.

10. 徐長官은 그와 大韓民國 代表團에게 베푼 好意 및 款待와 이
會議를 成功的으로 이끌게 한 훌륭한 諸般準備에 對하여 「림스
펠드」長官에게 깊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차. 10次 共同声明

(第10次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

1977. 7. 27.
大韓民國, 서울

1. 大韓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간의 1971年 2月 6日字 合意와 1976年 7月 25日 및 26日의 美合衆國 「하와이」州 「호놀룰루」市에서 개최된 年例安保協議會議에서 合意한 바에 따라 大韓民國과 美合衆國간의 第10차 年例安保協議會議가 1977年 7月 25日 및 26日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徐鍾喆 大韓民國 國防部長官, 「해롤드·브라운」 美國 國防長官, 盧載鉉 大韓民國 合參議長, 「조지·에스·브라운」 美合參議長 그리고 兩國 政府의 高位 外交 및 國防 관리들이 이會議에 참석하였다. 韓國 訪問中 브라운 國防長官은 朴正熙 大統領閣下와 催圭夏 國務總理를 예방하였다.
2.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아시아 및 太平洋 지역의 전반적인 推移에 관하여 토의하고 東北亞 細亞의 安保情勢를 慎重히 검토하였다. 兩代表團은 西海 5島를 포함하여 大韓民國에 대한 軍事的 威脅을 共同으로 분석하고 이 威脅에 對한 韓·美 양국의 聯合防衛能力을 慎重히 재검토하였다. 徐장官과 「브라운」장官은 近年에 北僞가 現代化된 武器를 더욱 確保하고 軍需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軍事力을 增強하여 왔음에 留意하였으며 北僞의 威脅이 繼續 深刻하다는데 同意하였다.

3. 徐長官은 계속적인 美國의 軍事支援의 重要性和 美國의 對韓安保公約에 留意하면서 大韓民國의 防衛태세를 설명하였다. 양대표단은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을 抑制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의 防衛力을 萬般의 準備態勢로 維持·強化하는것이 緊要하다고 결론지었다.

4. 「브라운」長官은 美地上 戰鬪兵力의 철수計劃이 美國의 對韓安保公約의 如何한 變化도 의미하지 않으며, 1954년에 체결된 韓·美 相互防衛 條約은 繼續, 全적으로 有効하고 또한 同條約에 따라 武力攻撃時 大韓民國의 防衛를 돕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効果적인 支援을 제공하겠다는 美國의 決意는 繼續 確固不動하다는 「카터」大統領의 保障을 전달하였다.

「브라운」長官은 北俾나 다른 어느나라도 美國의 이公約이 계속 강력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갖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카터」大統領이 강조한 사실에 留意하였다.

5. 브라운 長官은 4~5년간에 걸친 美地上 戰鬪兵力의 慎重하고도 段階的인 철수가 韓國軍을 강화하고 現代化하기 위한 조치들을 隨伴한다면 韓半島의 軍事的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駐韓美地上 戰鬪兵力의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諸般 補完措置가 철수에 先行하여, 또는 이와 竝行하여 이행될 것이라고 合意하였다.

「브라운」長官은 美國의 空·海軍·情報·軍需 및 기타 支援을

大韓民國에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고, 徐長官에게 철수는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施行될 것임을 保障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또한 韓國에 駐屯할 美合衆國의 戰術空軍力, 이지역의 餘他 美陸·海·空軍과 더불어 美國의 이러한 決意를 明白하게 立証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6. 徐長官과「브라운」長官은 韓國으로 부터의 美地上軍 철수방법 및 撤軍을 補完하기 위한 諸般措置에 관하여 兩國 政府간에 緊密하고 솔직한 協議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協議의 結果를 검토하였다.

「브라운」長官은 1978 년말까지의 6천명이 철수할 것이고 殘餘 地上戰鬪 兵力의 철수는 慎重히, 段階的으로 시행될 것이며, 美第 2 師團의 本部와 2 個旅團은 철수 最終段階까지 韓國에 잔류할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브라운」長官은 大韓民國에 殘留하는 美合衆國 空軍이 增強될 것이며 美海軍이 계속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美合衆國의 情報·通信및 其他 支援部隊도 大韓民國에 殘留할 것이다.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韓國의 力量 발전과 韓半島에 對한 軍事的 균형및 이 地域의 平和와 安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韓國政府와 계속 協議함으로써 北傀의 侵略에 對한 抑制力을 계속 強化시킬 것을 合意하였다.

7. 徐長官과「브라운」長官은 合同軍事 實務委員會의 協의를 포함하여

今番 安保協議 會議前에 이루어진 協議내용을 재검토하고 大韓民國의 安全을 계속 保障하기 위한 補完措置에 관하여 討議하였다. 「브라운」長官은 美議會와의 協議와 承認을 거쳐 大韓民國의 軍事力을 더욱 強化토록 지원하기 위한 美國政府의 意思를 다음과 같이 表明하였다.

①현재 駐韓美軍이 保有하는 적절한 裝備를 大韓民國에 無償으로 移讓함.

②大韓民國의 防衛能力을 增強시키기 위하여 對外軍事販賣借款을 추가로 제공함.

③전반적인 韓國軍 戰力增強을 위해 支援을 계속함.

「브라운」長官은 또한 美合衆國政府가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할것이라고 言明하였다.

①美合衆國政府의 對外武器 移讓政策 範圍內에서 大韓民國이 北傀의 侵略을 確實히 沮止할수 있도록 적절한 武器를 優先的으로 제공함.

②美合衆國政府의 武器移讓政策의 範圍內에서 大韓民國의 防衛産業分野에서의 自給計劃과 관련, 國防科學技術을 支援하기 위하여 特別한 努力을 경주함.

③大韓民國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侵略에도 対処하기 위한 韓·美聯合軍의 準備態勢를 유지하기 위하여 韓國軍과의 合同軍事 訓練을 계속하고 擴大함.

8.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韓·美양국간의 傳統的인 友好관계및

兩國간의 오랜 協力の 歷史와 아울러 緊密한 紐帶關係를 더욱 擴大할 것을 所望하면서 美地上 戰鬪兵力 第1障의 撤収完了 前에 韓國防衛의 作戰効率化를 위해 韓·美聯合司令部를 설치하기로 合意하였다.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이미 韓·美兩側 參謀障에 의해 시작된 聯合司令部的 構成에 관한 計劃과 研究는 계속하기로 合意하였다. 兩代表團은 聯合司令部設置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韓·美共同公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點에 留意하였다.

9.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關係當事國들로 하여금 休戰체제를 維持토록 마련한 唯一한 現行 法的措置인 休戰協定을 施行하기 위한 効果적인 代案이 없는한 유엔軍司令部는 平和維持機構로서 계속 그 機能을 수행할 것이라는것을 再確認하였다.

10. 徐長官과 「브라운」長官은 大韓民國의 防衛力에 自信을 表明하면서 이러한 計劃과 補完措置의 成功的인 完了는 美合衆國의 空軍·海軍·軍需및 기타 必要한 支援과 美國의 確固한 對韓防衛公約과 아울러, 北俾에 대하여 어떠한 武力攻撃도 成功할 수 없으며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協力만이 韓國문제에 대한 唯一, 可能한 方途임을 分明히 한다는데 合意하였다.

이점에 있어 兩代表團은 大韓民國이 提議한 不可侵協定 提議를 포함하여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하여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이 취한 重要한 政策的 措置에 留意하였다.

兩代表團은 또한 北傀가 1973년에 중단한 南北對話 再開에
응함으로써 韓國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
일것을 促求하였다.

美國代表團은 韓半島에 關한 4者會談提議에 留意하고, 美國
은 韓國의 참여없이 北傀와 韓半島의 將來에 關하여 어떠
한 交涉도 하지않을것을 再確認하였다.

11. 兩代表團은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의 重要性和 成果에 留意
하면서 次期 年例安保協議會議를 美合衆國政府주최로 1978년에
美合衆國에서 개최하기로 合意하였다.

12. 「브라운」長官은 大韓民國 黨국이 同장官과 美合衆國代表團에게
베푼 호의및 환대와 이會議를 成功的으로 이끌게한 훌륭한
諸般준비에 대하여 徐長官에게 깊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